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이용자 유의사항

1. 본 요약보고서는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20005호)의 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2. 본 요약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요약보고서에 등장하는 수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것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일부 성, 연령, 지역별 통계량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상대표준오차(RSE)가 클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주의 바랍니다.

5. 복수응답은 한 개 이상(우선수위 또는
복수 선택)을 응답한 결과치를 집계한
것입니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보고서('19.3월 발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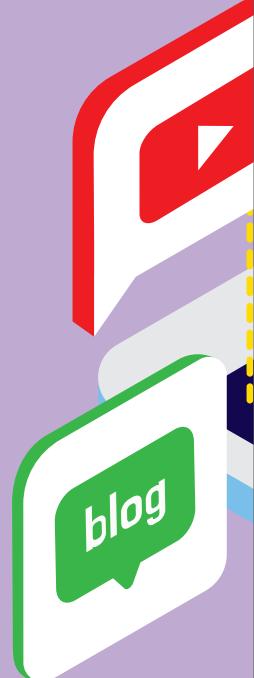


인터넷 이용자, 어떤활동을 할까?

여가 활동



정보획득 활동



소비·금융 활동

인터넷쇼핑

62.0%

인터넷뱅킹

63.7%

인터넷 쇼핑 · 인터넷뱅킹(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대상)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만 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를 대상으로 산출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메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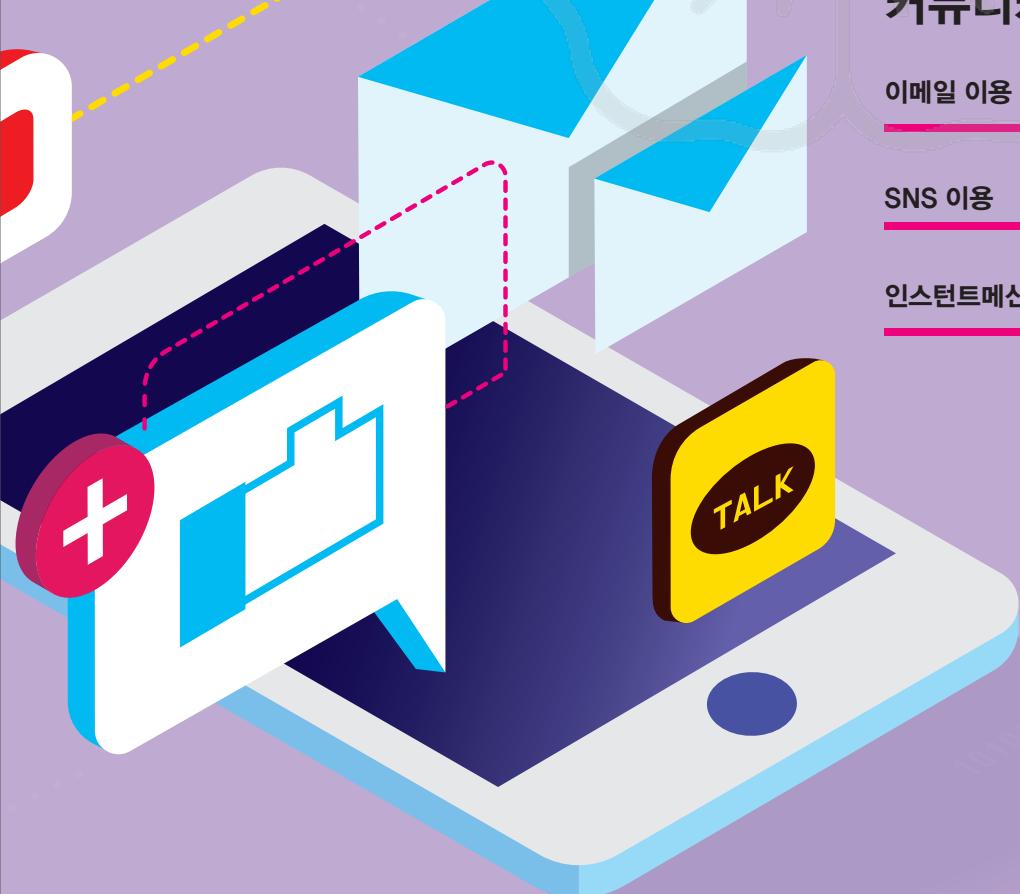
62.1%

SNS 이용

65.2%

인스턴트메신저 이용

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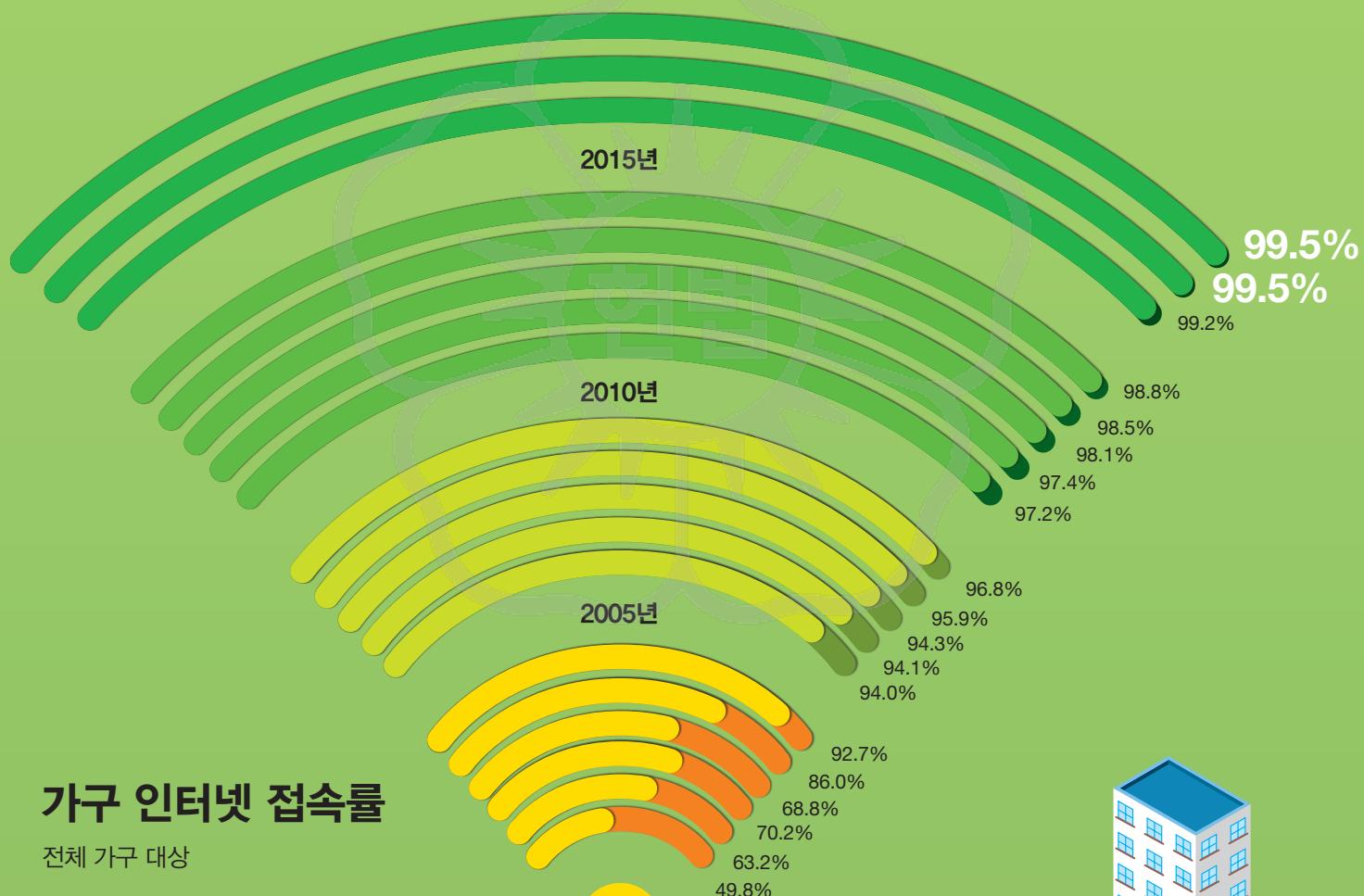


인터넷, 우리 집은 어떻게 이용할까?



2018년

우리나라 1,975만 가구 중 1,965만 가구 인터넷 접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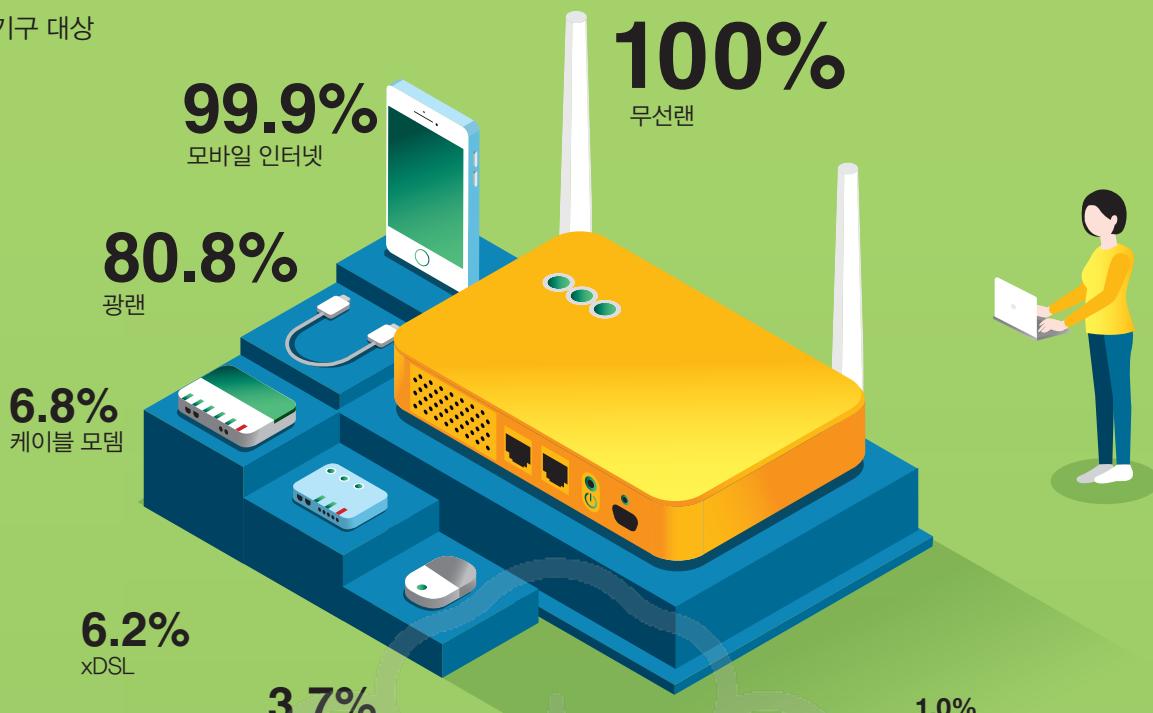
가구 인터넷 접속률

전체 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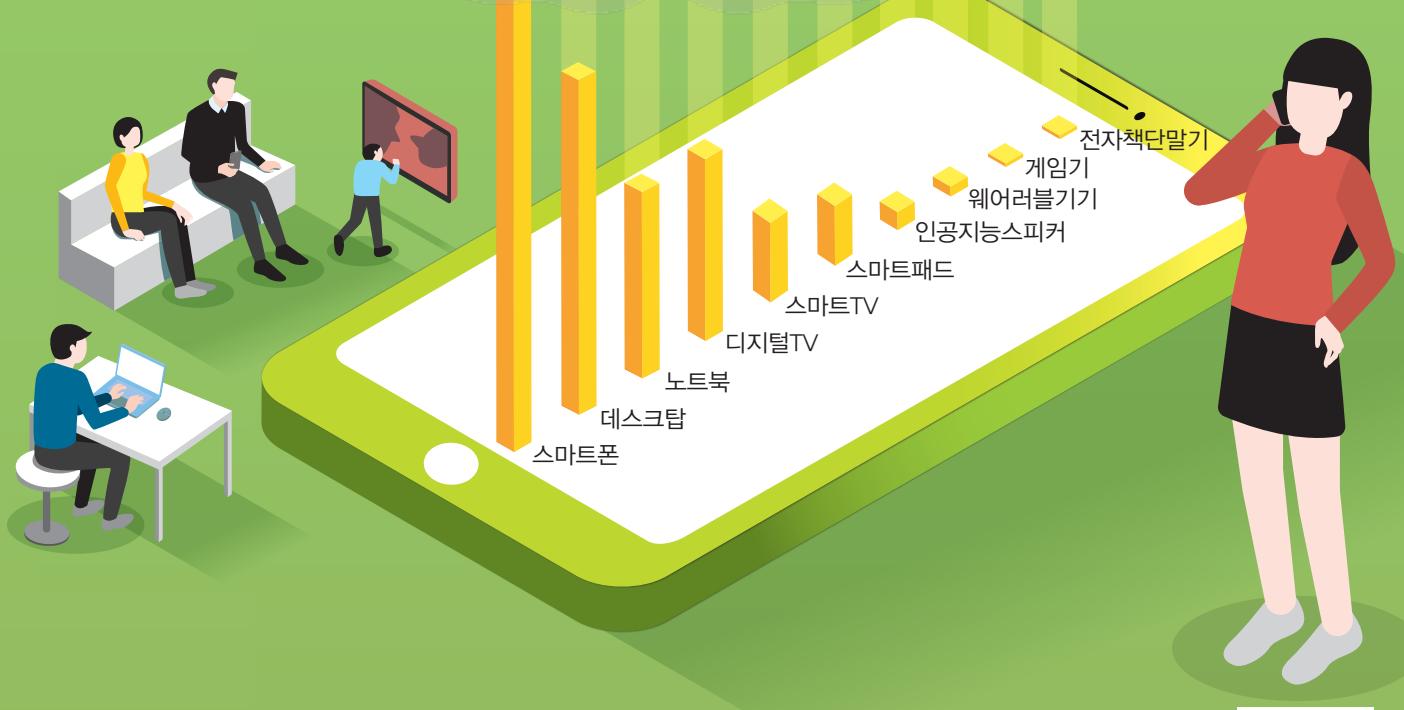
인터넷 접속방법

인터넷 접속기구 대상



인터넷 접속기기

전체 가구 대상





인터넷, 우리는 얼마나 이용할까?

46,124,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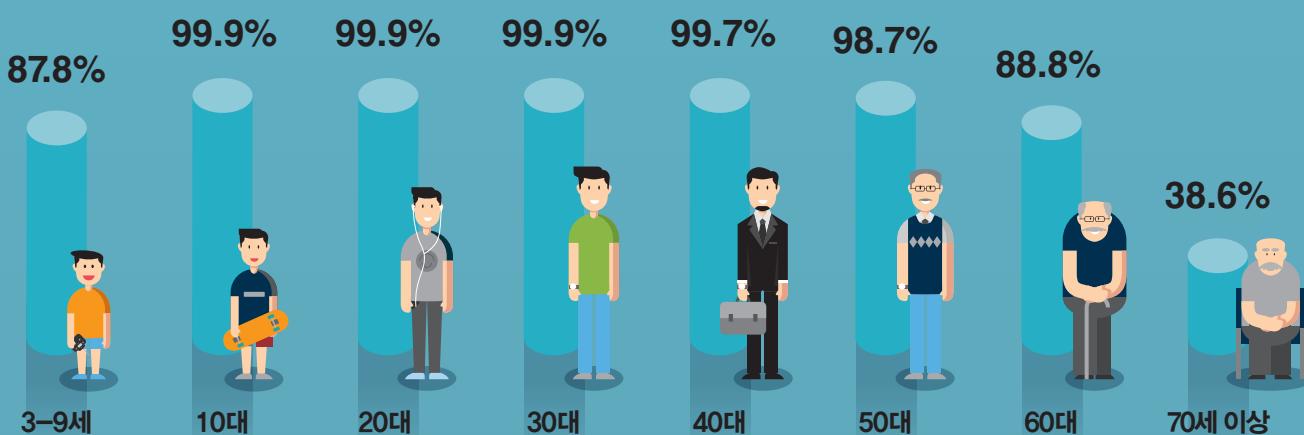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이용률

만3세 이상 국민 5,039만명 중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성별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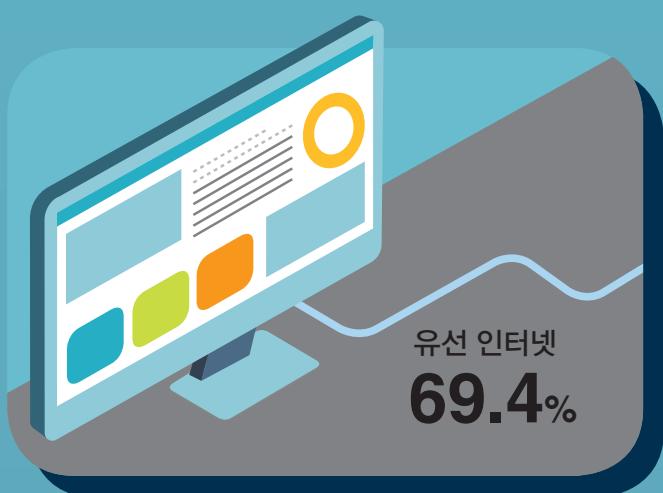
93.9%
89.1%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접속방법



인터넷, 모바일 중심으로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첫 등장한 후,
가구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점유율이
데스크탑보다 높아짐

가구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전체 가구 대상

56.3%

94.9%

2018



데스크탑

2010

모바일 기기
(스마트 폰/스마트 패드 등)

81.4%

4.9%

2018년 기기별 인터넷 활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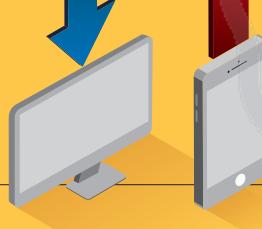


인터넷 쇼핑 이용기기

만 12세 이상 인터넷 쇼핑 이용자 대상

96.4%

2018 62.4%



2013 86.2%
데스크탑
43.2%
스마트 폰



SNS 이용기기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 대상

99.2%

2018

30.9%



인터넷뱅킹 이용기기

만 12세 이상 인터넷 뱅킹 이용자 대상

92.5%

2018

49.3%



2013

71.7%
데스크탑
65.4%
스마트 폰





Contents

기본분석

04

조사개요

05

인터넷 '접속'

10

인터넷 '기반'

11

인터넷 '휴대'

14

인터넷 '소통'

19

인터넷 '생활'

심층분석

26

인터넷 '나 혼자 즐긴다'

28

인터넷 '나이 제한은 없다'

30

인터넷 '나는 집에서 쇼핑한다'

32

인터넷 '언제 어디서나 이용한다'

1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가구 및 만3세 이상 인구
조사대상	전국 25,000 가구 및 가구 내 만3세 이상 가구원
유효표본	25,000가구 및 가구 내 만3세 이상 가구원 59,970명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8. 7. 30. – 9. 30.
기준시점	2018. 9. 1.
표본추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추정	사후증화(다단계층화집락추출 추정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의 2018년 추계가구· 가구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2018년 추계인구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 인터넷 접속률±0.09%p (95% 신뢰수준)· 가구원 : 인터넷 이용률±0.22%p (95% 신뢰수준)
표본 설계	
목표 가구 할당	: 25,000 가구를 17개 시도에 시도별 가구수(2018년 추계가구)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할당 후, 각 시도내 동/읍면부 가구수(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비례할당
가구 추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의 일반가구 조사구를 추출틀로 사용, 3,000개 조사구를 지역별 17개 집락*에 집락별 조사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할당 후 계통추출, 추출된 각 조사구 내 8~9개 가구를 계통추출
<small>* 지역 내 집락 구분 방법 :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가구방수,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등의 조사구 특성치를 활용한 K-평균 집락분석</small>	

2

인터넷 ‘접속’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접속가구 수

국내 가구 99.5%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

우리나라 전체 가구(19,752천 가구) 중 가구 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19,649천 가구)의 비율은 99.5%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전체 가구 수의 증가로 인터넷 이용 가능 가구 수는 약 222천 가구 증가



그림 1)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접속가구 수 추이(% 천 가구) – 국내 전체 가구

가구 인터넷 접속방법

인터넷 접속 시 ‘무선랜’(100.0%), ‘모바일 인터넷’(99.9%), ‘광랜’(80.8%) 이용

인터넷 접속가구 중 가구 내 ‘무선랜’ 이용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은 100.0%로 나타났고, ‘모바일 인터넷’은 99.9%, ‘광랜’ 80.8%, ‘케이블 모뎀’ 6.8%, ‘xDSL’ 6.2%, ‘이동형 무선인터넷 공유기’ 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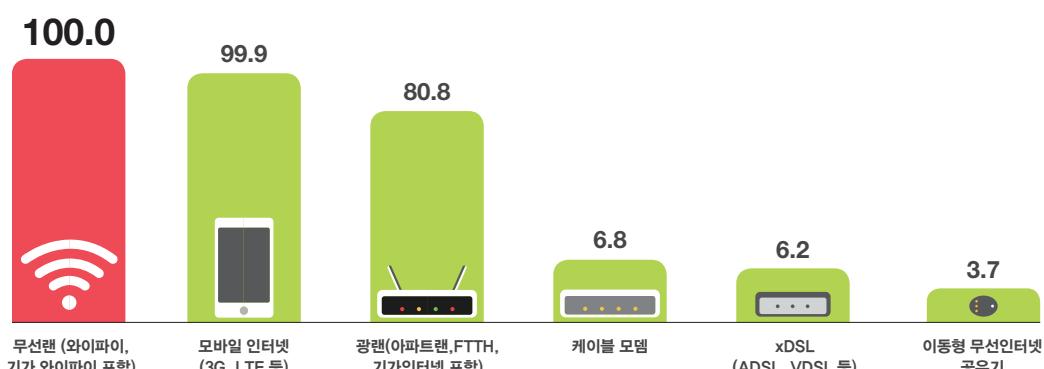


그림 2) 가구 인터넷 접속방법(복수응답, %) – 인터넷 접속가구

개인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만3세 이상 인구의 91.5%가 ‘인터넷이용자’

만 3세 이상 인구(50,393천명) 중 인터넷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1.5%(46,125천명)로, 전년 대비 1.2%p(842천명) 증가



그림 3)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추이(%, 천명) – 만3세 이상 인구

성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남자’(93.9%)의 인터넷 이용률이 ‘여자’(89.1%)보다 다소 높음

만 3세 이상 ‘남자’의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93.9%(23,708천명)로 ‘여자’ 대비 4.8%p(1,291천명)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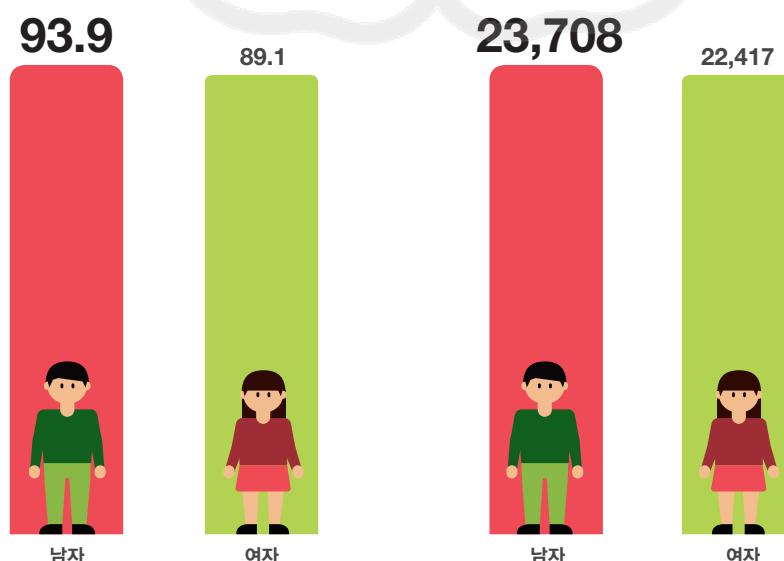


그림 4) 성별 인터넷 이용률(%)

그림 5) 성별 인터넷이용자 수(천명)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40대' 인터넷이용자 수가 가장 많음(8,484천명)

'10대'(99.9%), '20대'(99.9%), '30대'(99.9%), '40대'(99.7%), '50대'(98.7%) 대부분이 인터넷이용자로 나타났으며, '3~9세'(전년 대비 3.9%p 증가)와 '60대'(전년 대비 6.3%p 증가) '70세 이상'(전년 대비 6.8%p 증가)의 인터넷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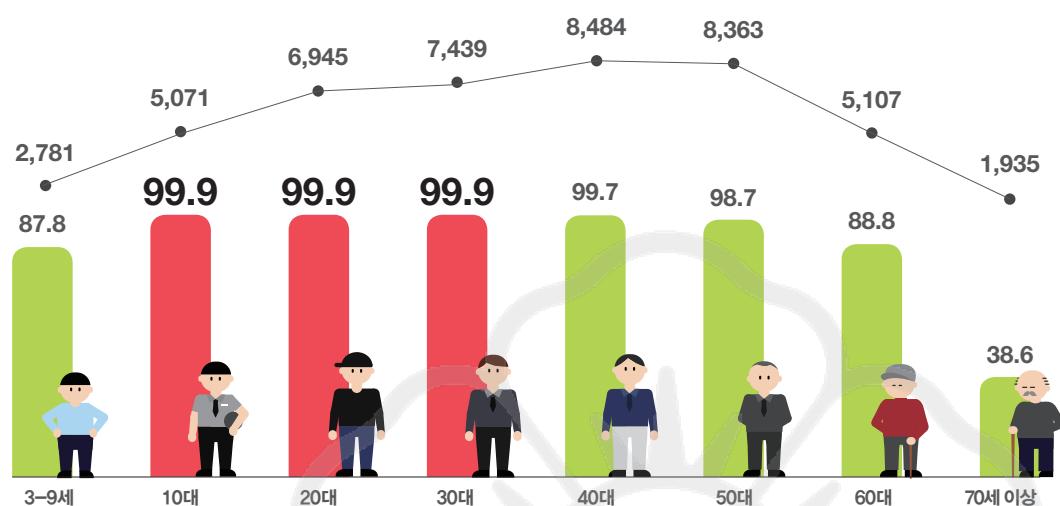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천명) – 만3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그림 7) 전체 인구 및 인터넷이용자의 연령별 구성비 비교(%) – 만3세 이상 인구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5.5%),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3.7%)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세종'(95.5%), '울산'(95.2%), '대구'(94.9%), '광주'(94.5%), '대전'(9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인 지역으로는 '강원'(83.7%), '전남'(85.3%), '제주'(88.9%)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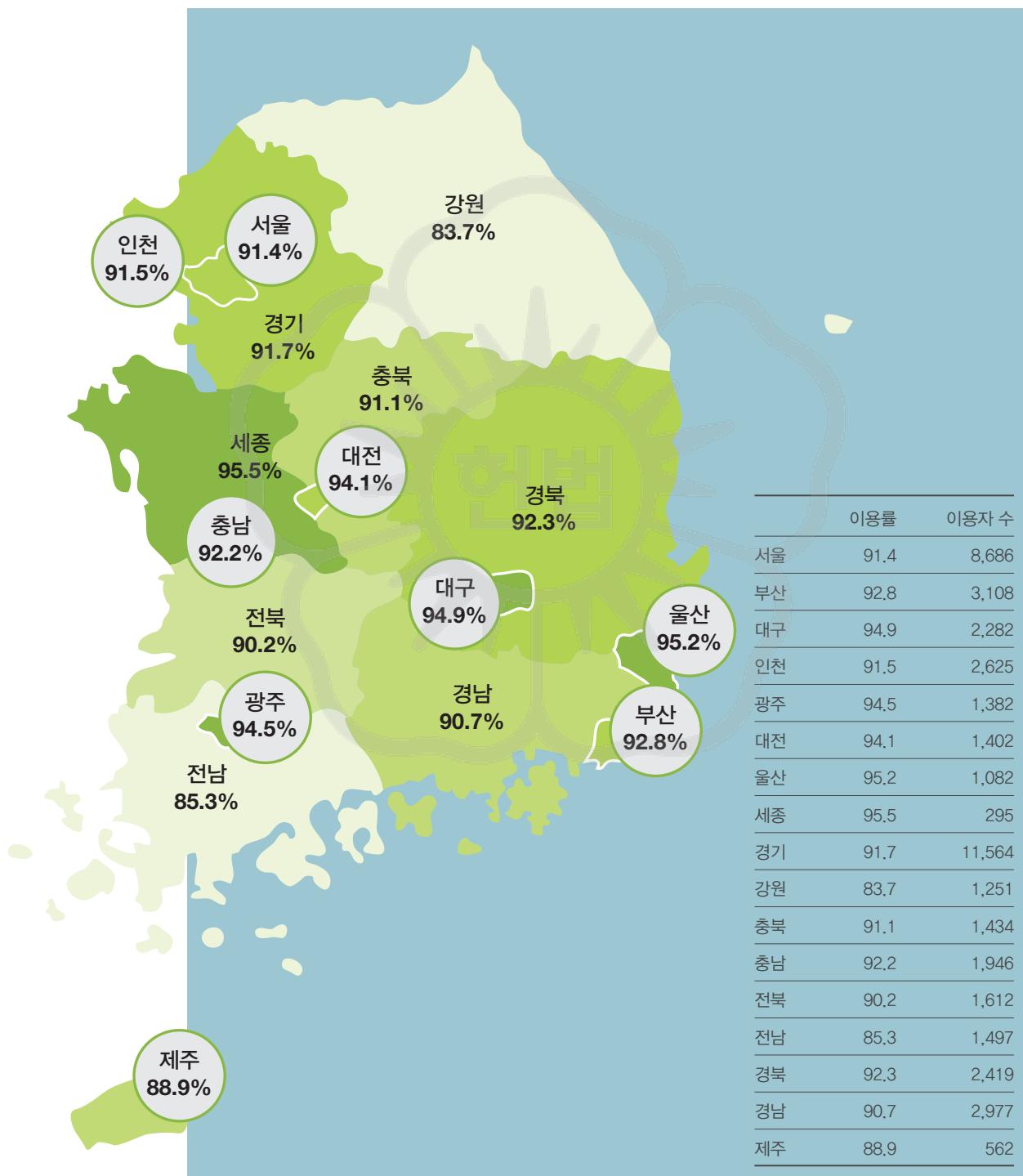


그림 8) 지역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 천명) – 만3세 이상 인구

인터넷 이용빈도 및 시간

인터넷이용자의 95.3%는 하루에 1회 이상 이용, 주 평균 이용시간은 16시간 30분

만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95.3%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주 평균 16시간 30분을 이용함. 59.4%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14~21시간 미만 24.9%, 21~35시간 미만 25.8%, 35시간 이상 8.7%)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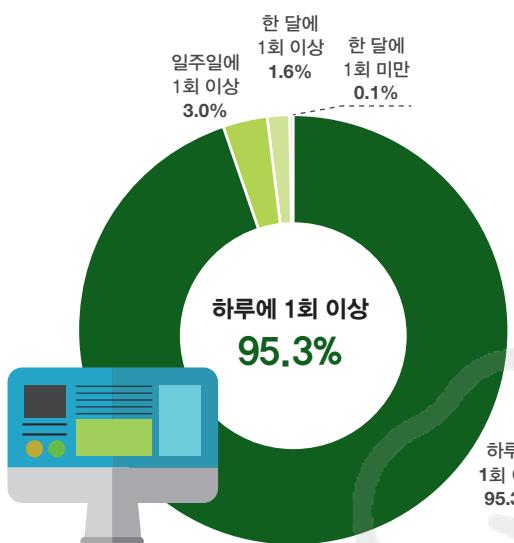


그림 9) 인터넷 이용빈도(%) – 만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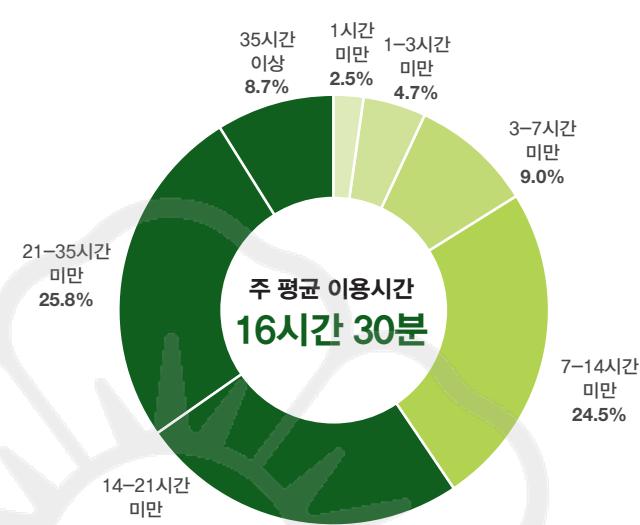


그림 10)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만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인터넷 이용목적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커뮤니케이션'(94.8%), '자료 및 정보획득'(93.7%), '여가활동'(92.5%)

만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는 주로 '커뮤니케이션'(94.8%), '자료 및 정보획득'(93.7%), '여가활동'(92.5%)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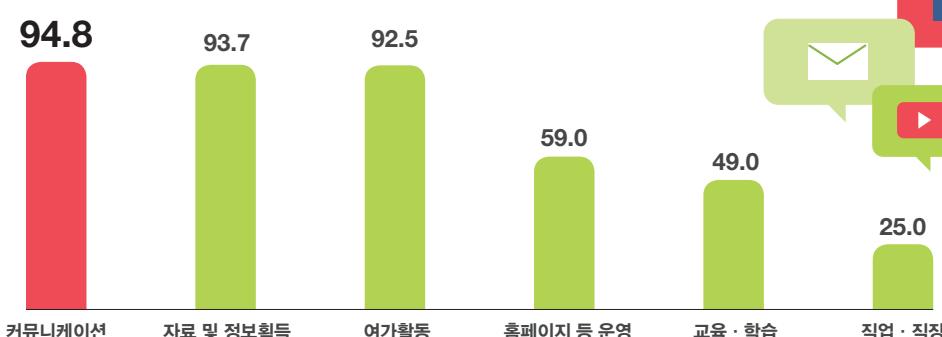


그림 11)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 – 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3

인터넷 ‘기반’

가구 정보통신기기 현황

대부분의 가구(94.9%)가 스마트기기 보유

국내 전체 가구 중 94.9%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94.8%, ‘스마트패드’ 13.9%, ‘웨어러블기기’ 7.7%)를 보유하였고, PC는 ‘데스크탑’이 56.3%, ‘노트북’ 3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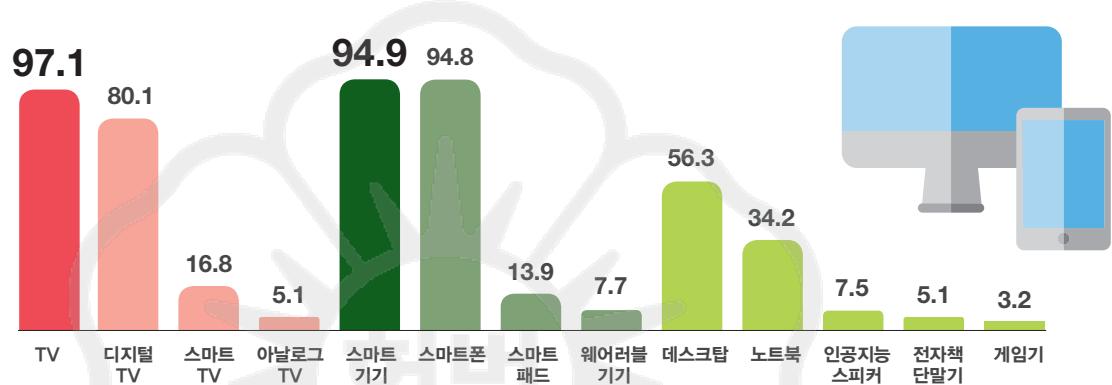


그림 12) 가구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복수응답, %) – 국내 전체 가구

개인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현황

만6세 이상 인구의 91.0%가 ‘스마트폰’ 보유

만6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은 91.0%이며, ‘노트북컴퓨터’는 26.6%, ‘일반이동전화’ 8.2%, ‘스마트패드’ 8.1%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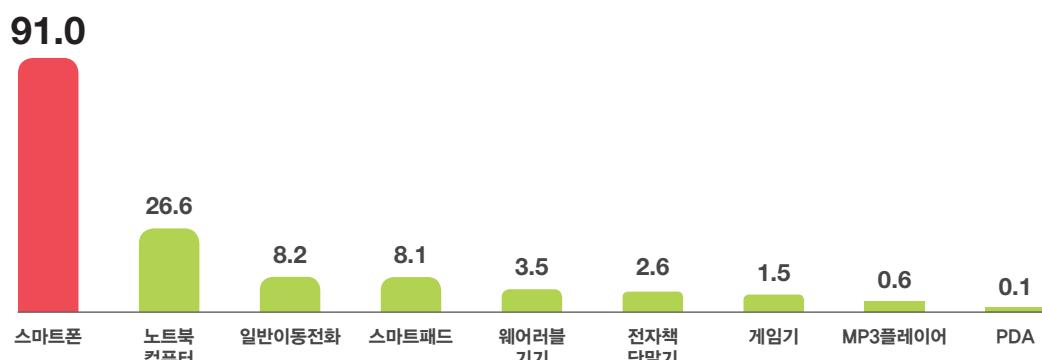


그림 13) 개인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인구

4

인터넷 ‘휴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만3세 이상 인구의 90.4%가 모바일 인터넷이용자

만3세 이상 인구 중 모바일 인터넷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일반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0.4%로, ‘남자’(92.8%)가 ‘여자’(88.0%) 대비 4.8%p 높고, ‘20대’(99.9%), ‘30대’(99.9%), ‘40대’(99.7%)의 이용률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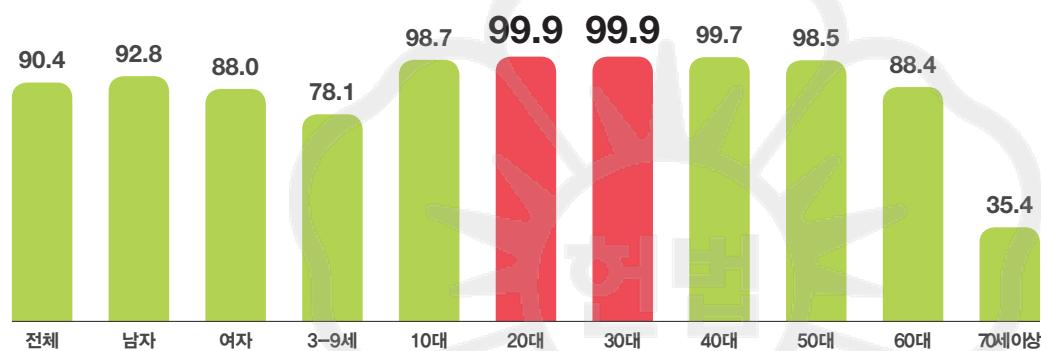


그림 14)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 만3세 이상 인구



스마트폰 이용률

만3세 이상 인구의 89.6%가 스마트폰 이용자

만3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이용자(최근 1개월 내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89.6%로, ‘남자’(92.0%)가 ‘여자’(87.2%) 대비 4.8%p 높고, ‘20대’(99.9%), ‘30대’(99.9%), ‘40대’(99.5%)의 이용률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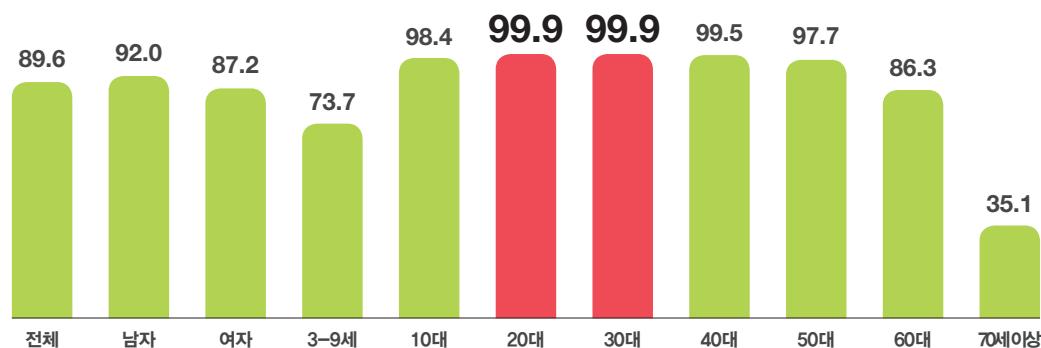


그림 15) 스마트폰 이용률(%) – 만3세 이상 인구

스마트폰 이용빈도 및 시간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시간 47분, 95.7%는 하루에 1회 이상 이용

만3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중 95.7%가 하루에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주 평균 10시간 47분을 이용함. 36.3%가 주 평균 14시간 이상(14~21시간 미만 23.6%, 21~35시간 미만 11.0%, 35시간 이상 1.7%)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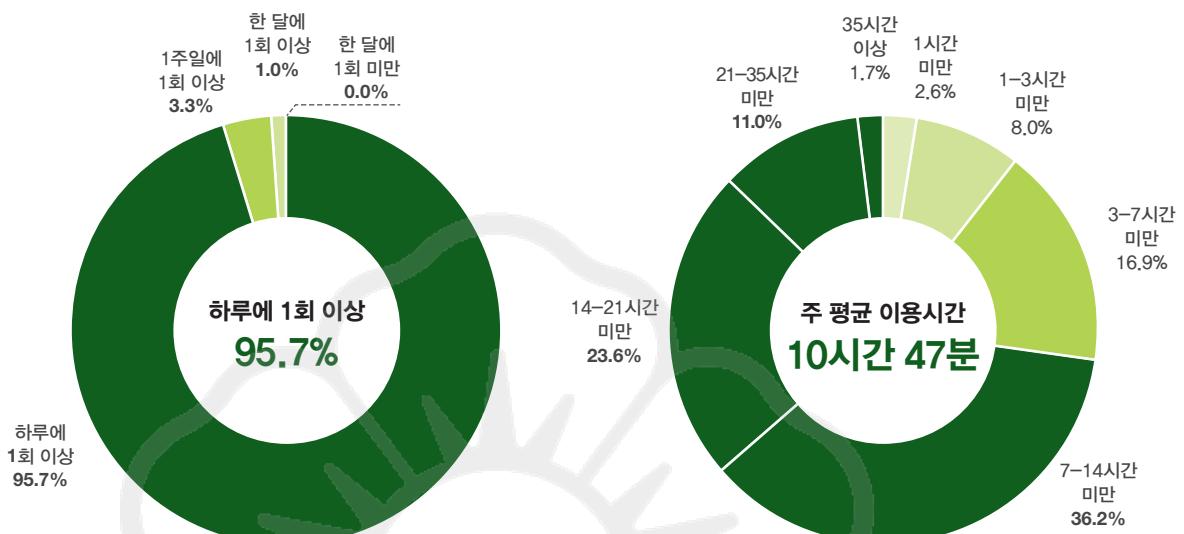


그림 16) 스마트폰 이용빈도(%)
– 만3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그림 17)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만3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웨어러블기기 종류별 보유현황

웨어러블기기 보유자는 주로 '시계형'(73.1%) 보유

만6세 이상 웨어러블기기 보유자 중 '시계형' 웨어러블기기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73.1%, '밴드형'은 21.4%, '영·유아 및 노약자 기기' 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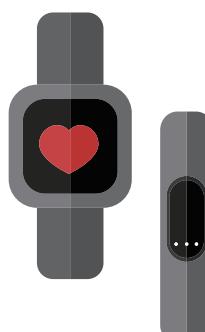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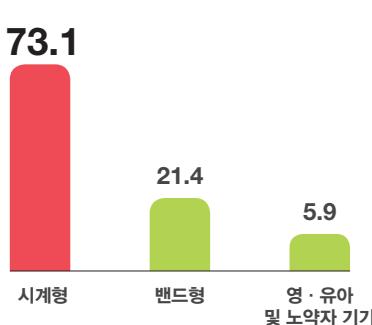


그림 18) 웨어러블기기 종류별 보유현황(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웨어러블기기 보유자

웨어러블기기 이용기능

웨어러블기기의 주 이용기능은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문자, 전화 등 송·수신'(81.5%)

웨어러블기기 보유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문자, 전화 등 송·수신'(81.5%)이고,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53.7%), '이동거리, 경로 기록 기능'(42.8%)을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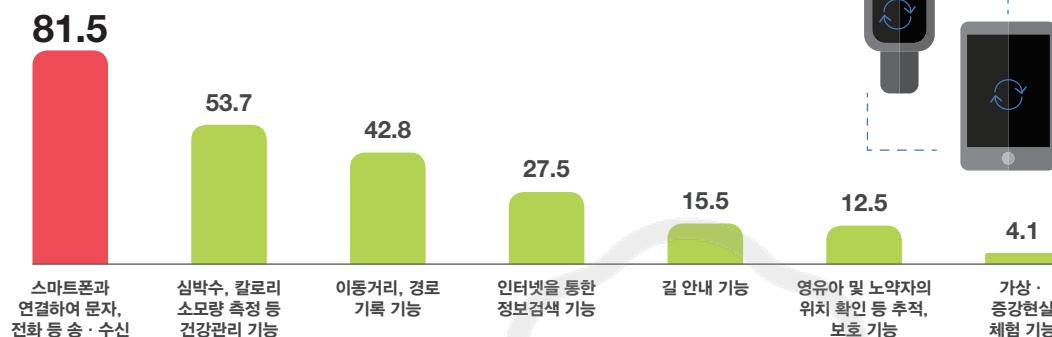


그림 19) 웨어러블기기 이용기능(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웨어러블기기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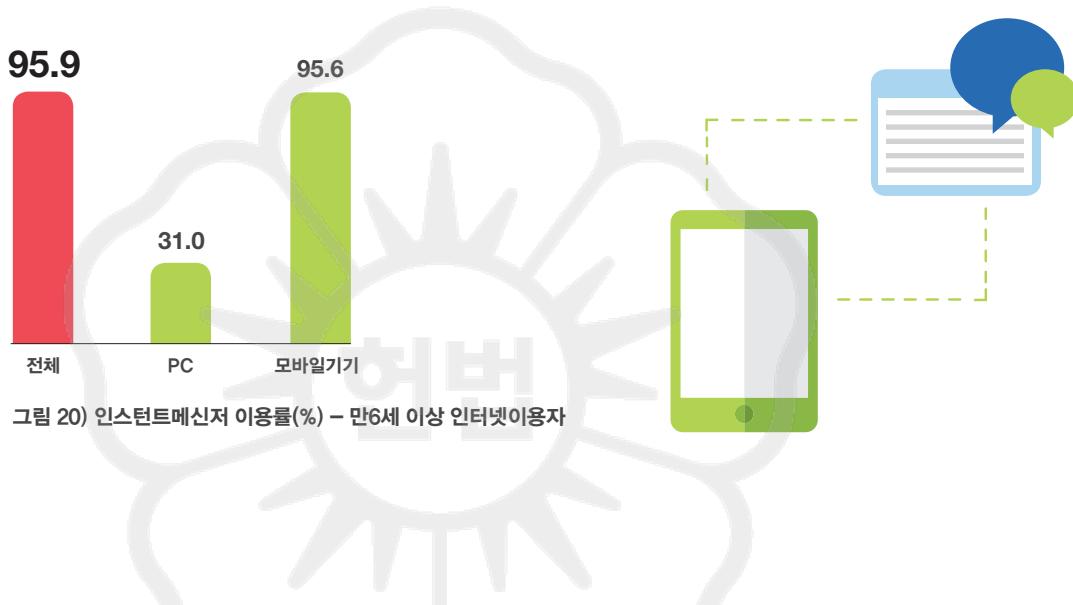
5

인터넷 ‘소통’

인스턴트메신저 이용률

만6세 인터넷이용자의 95.9%가 인스턴트메신저 이용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인스턴트메신저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5.9%이며, PC를 통한 이용률(31.0%)보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95.6%)이 3배 이상 높음



주이용 인스턴트메신저 서비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스턴트메신저는 ‘카카오톡’(99.2%)

만6세 이상 인스턴트메신저 이용자 중 ‘카카오톡’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99.2%, ‘페이스북 메신저’는 30.8%, ‘라인’ 11.0%, ‘네이트온’ 9.6%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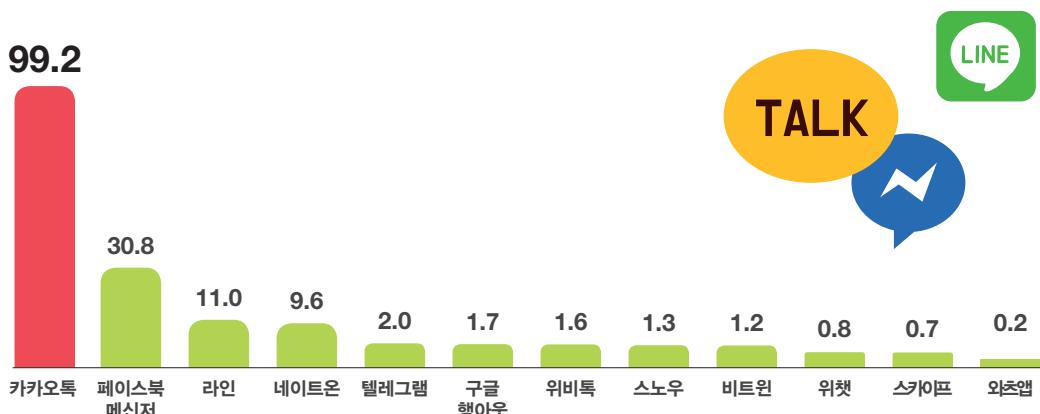


그림 21) 주이용 인스턴트메신저 서비스(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인스턴트메신저 이용자

인스턴트메신저 이용기능

'대화하기' 기능 외 '사진, 동영상, 일정, 업무용 파일 등의 공유' 76.0%

인스턴트메신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으로는 '대화하기'(100.0%) 외에 '사진, 동영상, 일정, 업무용 파일 등 공유'(76.0%)가 가장 많았고, '음성 및 영상통화'(45.0%), '게임'(36.2%), '지도 및 위치 공유'(29.3%) 등의 기능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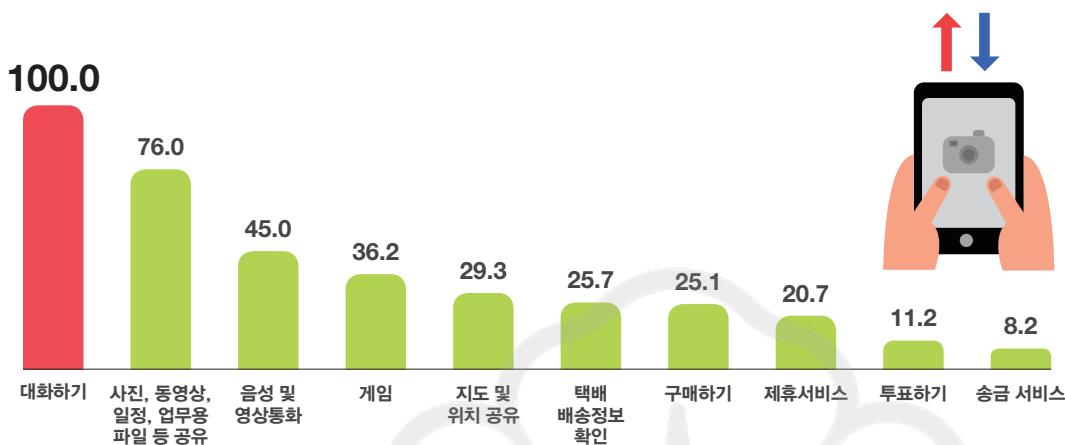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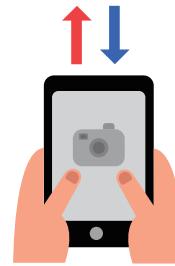


그림 22) 인스턴트메신저 이용기능(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인스턴트메신저 이용자



SNS 이용률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65.2%가 SNS 이용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SNS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5.2%이며, PC를 통한 이용률(26.5%)보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65.0%)이 2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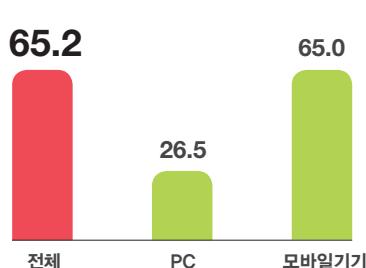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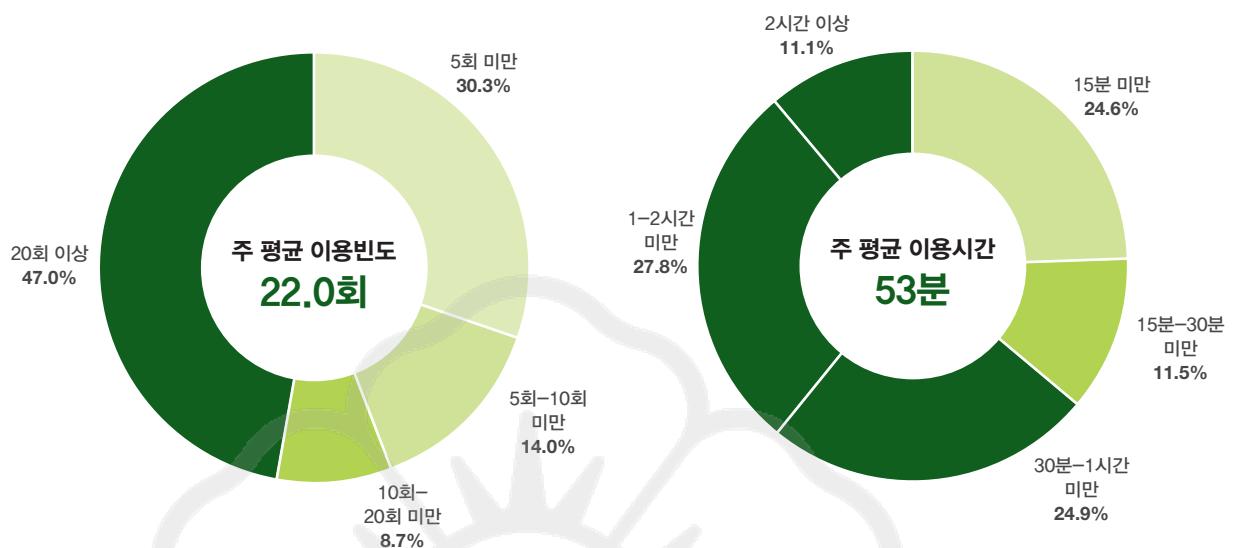
그림 23) SNS 이용률(%) –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SNS 이용빈도 및 시간

SNS이용자는 일주일 평균 22.0회 SNS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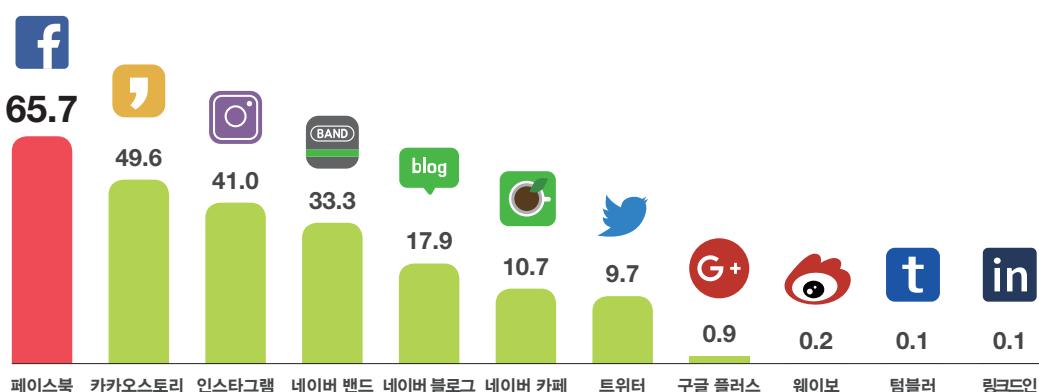
만6세 이상 SNS 이용자들의 주평균 이용빈도는 22.0회이며 절반에 가까운 47.0%가 주평균 20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SNS이용자들의 주평균 이용시간은 53분(1일 평균 약 8분)



주이용 SNS 서비스

주 이용 SNS서비스는 ‘페이스북’(65.7%), ‘카카오스토리’(49.6%), ‘인스타그램’(41.0%)

만6세 이상 SNS 이용자들의 주이용 SNS서비스로는 ‘페이스북’이 65.7%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49.6%, ‘인스타그램’ 41.0%, ‘네이버밴드’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SNS 이용이유

SNS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교 · 교제를 위해서'(81.2%)

만6세 이상 SNS이용자 중 '친교 · 교제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8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57.6%, '취미 · 여가활동 등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43.4%,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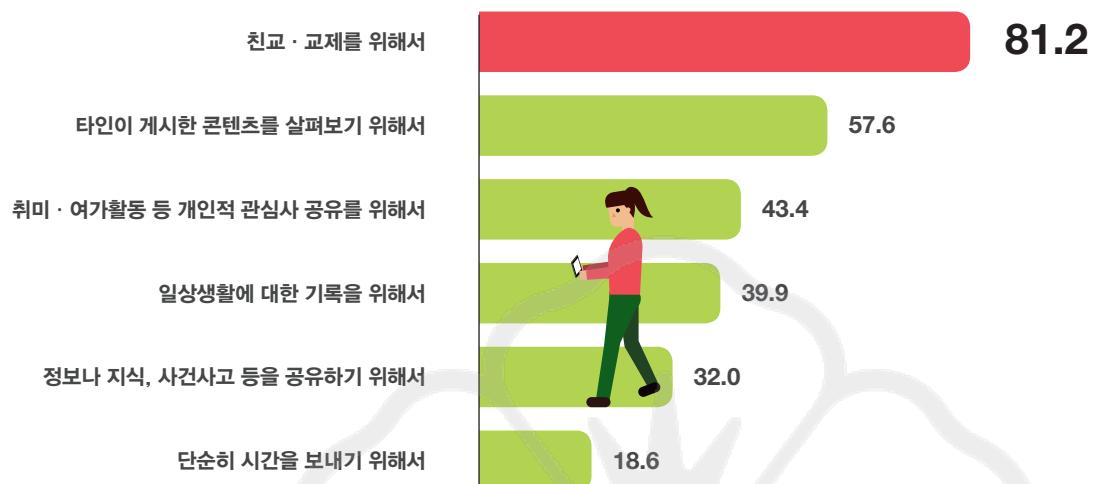


그림 27) SNS 이용이유(3개 항목 응답, %) – 만6세 이상 SNS 이용자

SNS 비이용이유

SNS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72.2%)

만6세 이상 SNS 비이용자의 가장 큰 비이용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가 7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서'(30.2%),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16.4%) 등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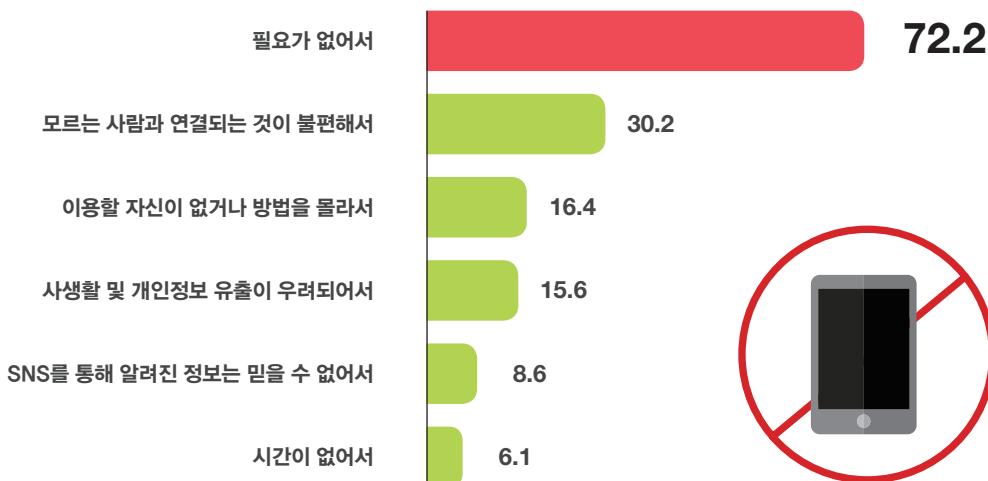


그림 28) SNS 비이용이유(복수응답, %) – 만6세 이상 SNS 비이용자

이메일 이용률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명중 6명(62.1%)이 이메일 이용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이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2.1%이며, '남자'(67.6%)가 '여자'(56.3%)보다 11.3%p 높으며, '20대'(97.5%)의 이메일 이용률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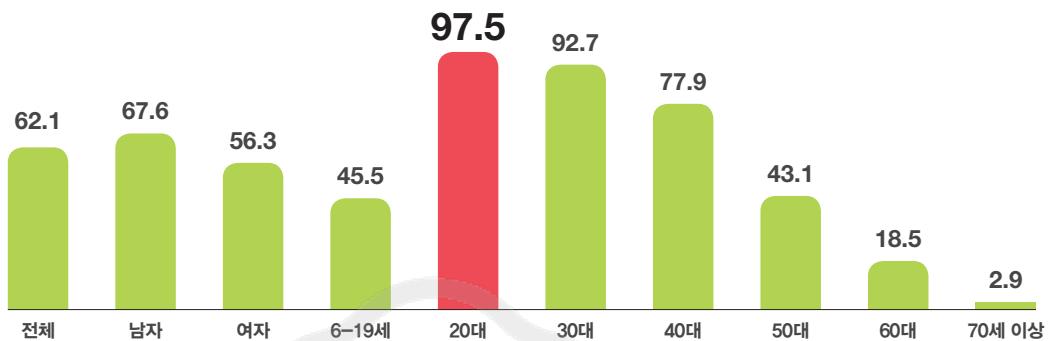


그림 29) 이메일 이용률(%) –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6

인터넷 ‘생활’

인터넷쇼핑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62.0%가 인터넷쇼핑 이용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내 인터넷쇼핑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2.0%이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59.9%)이 PC를 통한 이용률(47.1%)보다 12.8%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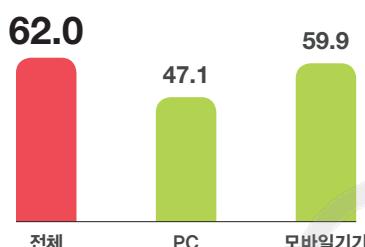


그림 30) 인터넷쇼핑 이용률(%) –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 빈도 및 구매금액

인터넷쇼핑 이용자는 월 평균 3.0회 인터넷쇼핑 이용, 평균 구매금액은 96,758원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월 평균 인터넷쇼핑 이용빈도는 3.0회(‘월 3회 이상’ 44.3%, ‘1~2회 미만’ 20.5%, ‘2~3회 미만’ 19.9%, ‘1회 미만’ 15.3%)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96,758원

월평균 구매금액: 96,75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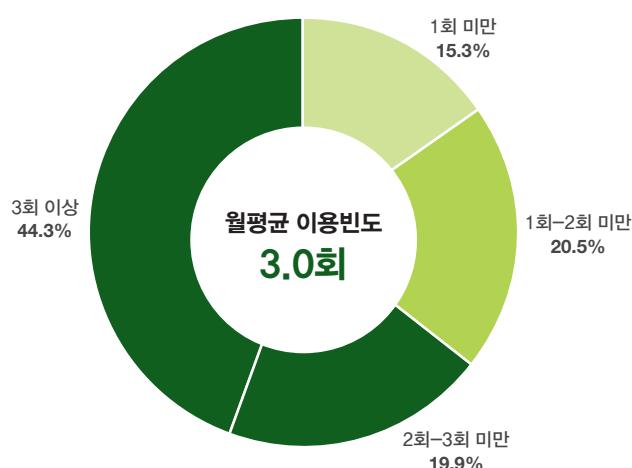


그림 31) 월평균 인터넷쇼핑 빈도 및 구매금액(%) –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인터넷쇼핑 결제방법

인터넷쇼핑의 주요 결제방법은 '신용카드'(79.1%)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율이 7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통장입금' 41.6%, '체크카드/직불카드' 36.5%, '간편결제' 3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간편결제의 경우 전년(28.7%) 대비 7.3%p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결제방법으로 나타남



그림 32) 인터넷쇼핑 결제방법(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이용기기별로 살펴보면, PC를 통한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신용카드'(75.0%), '마일리지 및 포인트'(10.4%), '선불카드 및 상품권'(7.8%)의 비율이 모바일보다 높고, 그 외 항목은 모두 모바일기기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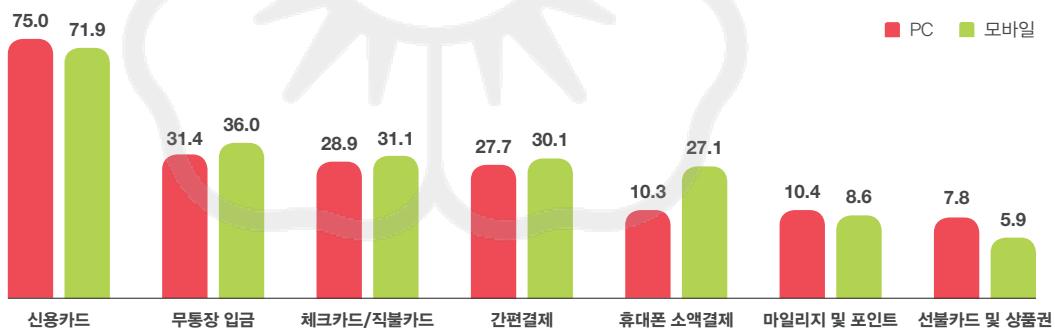


그림 33) 인터넷쇼핑 결제방법(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PC 쇼핑 이용자/모바일 쇼핑 이용자



인터넷쇼핑 품목

인터넷쇼핑의 주요 품목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87.7%)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구매 품목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가 8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영화, 문화공연’(54.6%), ‘도서, 잡지, 신문’(48.9%), ‘화장품’(42.1%)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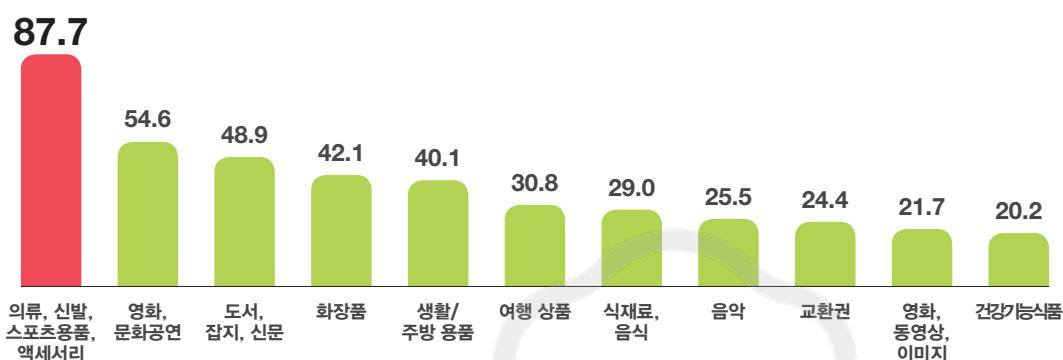


그림 34) 인터넷쇼핑 품목(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그 외 ‘휴대폰 통화 연결음, 이모티콘, 배경화면 등’(16.8%),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13.9%), ‘가구, 인테리어 용품’ 13.2%, ‘가전, 전자제품’(13.0%), ‘금융 상품’(10.2%), ‘유료 앱’(10.0%), ‘유·아동 용품’(9.9%), ‘컴퓨터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7.8%), ‘웹툰’(6.1%), ‘게임아이템’(5.9%),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 제외)’(5.6%), ‘교육’(3.2%), ‘성인용 콘텐츠’(0.8%) 순

인터넷뱅킹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63.7%가 인터넷뱅킹 이용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3.7%이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59.8%)이 PC를 통한 이용률(38.2%)보다 21.6%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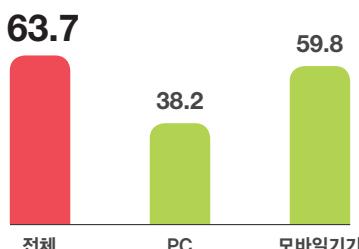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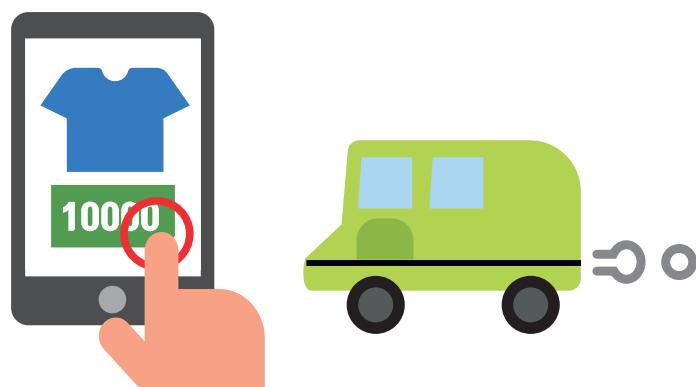


그림 35) 인터넷뱅킹 이용률(%) –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5.4%)가 ‘여자’(61.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30대’(93.3%), ‘20대’(87.8%), ‘40대’(82.9%), ‘50대’(55.9%), ‘12~19세’(24.7%), ‘60대’(22.9%), ‘70세 이상’(5.4%)순으로 높음



그림 36) 성 · 연령별 인터넷뱅킹 이용률(%) –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30.2%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최근 1년 내 클라우드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30.2%이며, ‘남자’(34.0%)의 이용률이 ‘여자’(26.2%)보다 7.8%p 높고, 연령별로는 ‘20대’(56.8%)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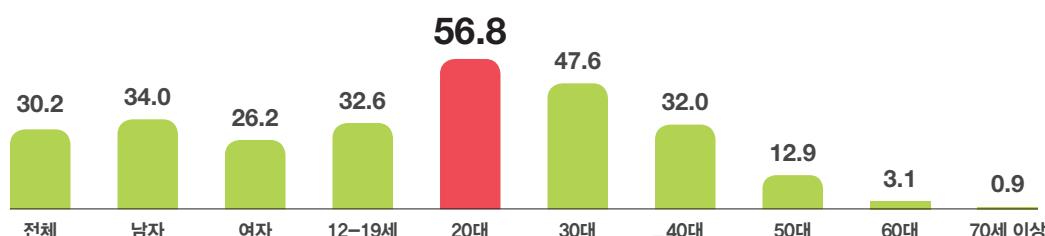


그림 37)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 –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목적

클라우드 서비스 주 이용목적은 ‘자료 및 정보 관리’(업무용 53.2%, 개인용 69.0%)

만12세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으로는 ‘자료 및 정보관리’(업무용 53.2%, 개인용 69.0%)가 가장 많았고, 용도별로는 업무용의 경우 ‘문서 편집’(31.8%)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개인용의 경우에는 ‘기기에 저장된 일정, 연락처 등 동기화 및 관리’(46.0%)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 재생’(45.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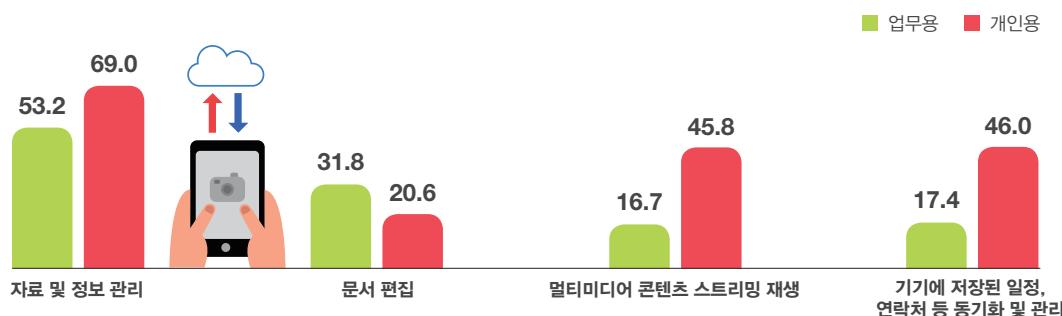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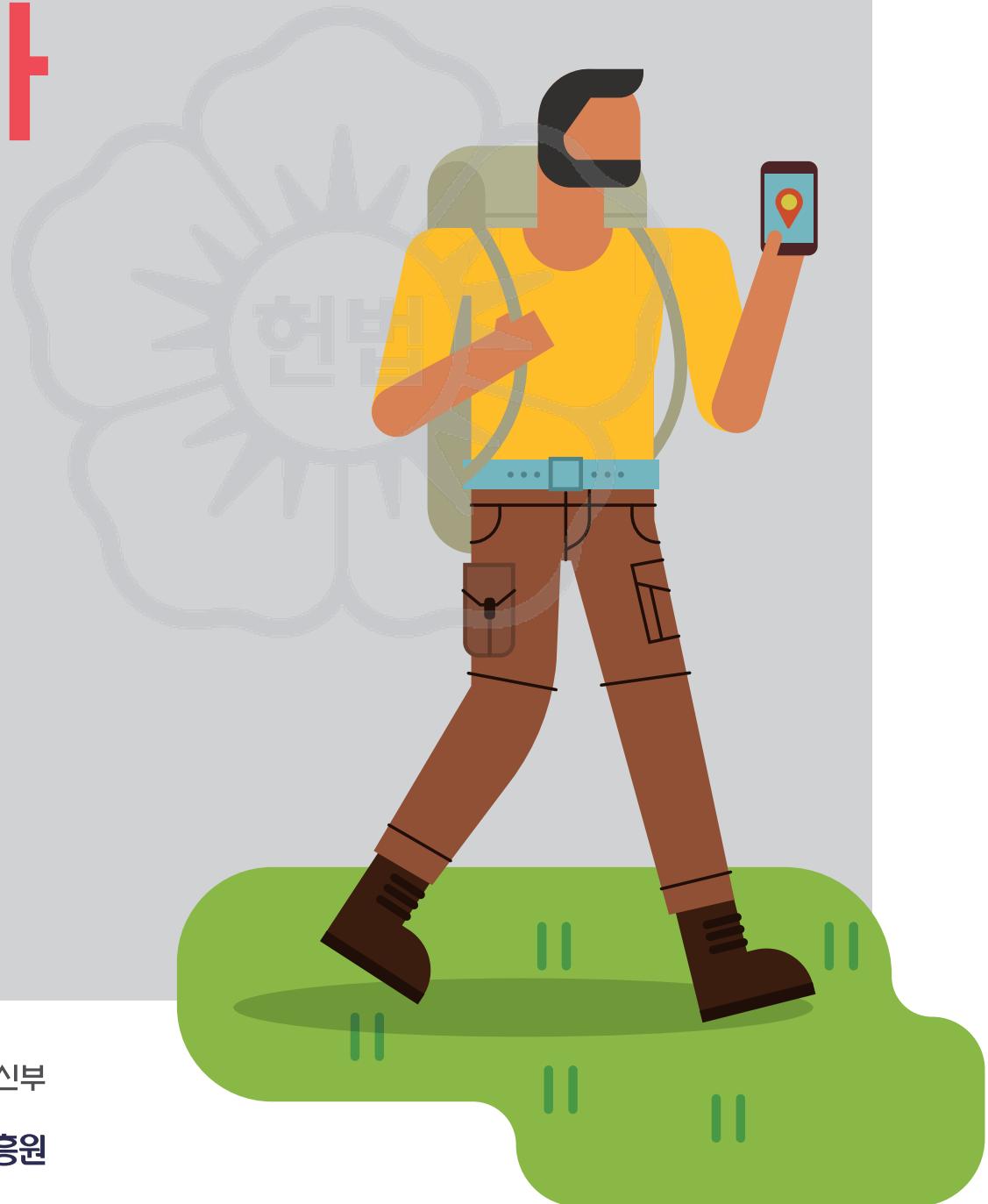


그림 38)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목적(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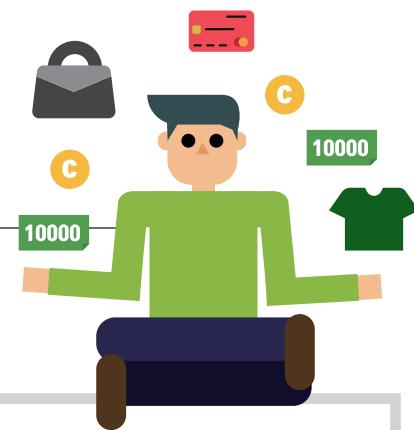


심층분석

인터넷, 새로운 세상을 열다



1 인터넷 '나 혼자 즐긴다'



1인가구 연령별 현황

1인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층과 청년층에 높은 분포

2018년 전체 가구 중 29.1%가 1인가구로 5년전 대비 3.2%p 증가

1인가구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는, 70대 이상(18.5%), 20대(17.5%) 등의 순으로 고령층과 청년층에 높은 분포, 또한 연도별 60대 이상 고령층 1인가구의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29.6%→ 2018년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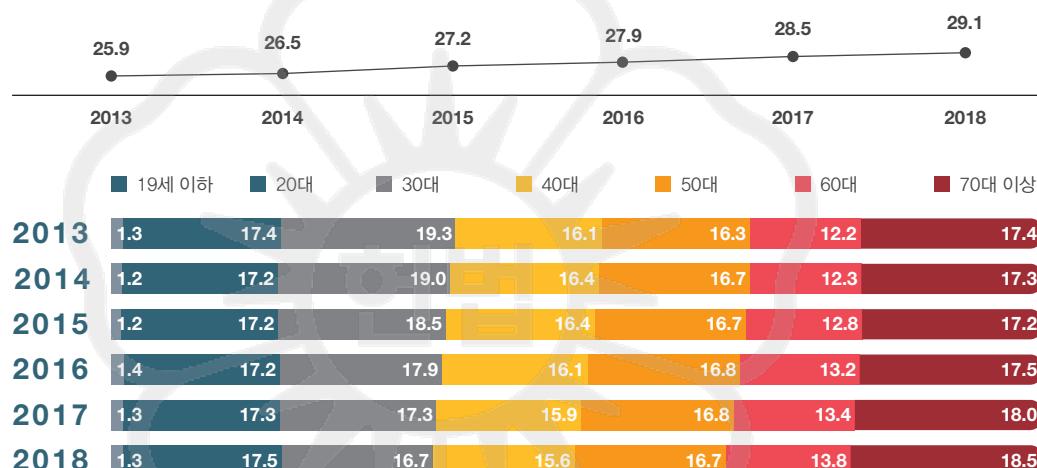


그림 39) 연도별 1인가구 비중 및 구성비율(%)

가구원수별 이용률

인터넷 및 인터넷 이용기기 이용률은 1인가구보다 다인가구 가구원이 더 높음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면,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이용기기의 이용률은 다인가구의 가구원에서 더 높지만, 반면 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 질문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1인가구의 가구원이 다인가구의 가구원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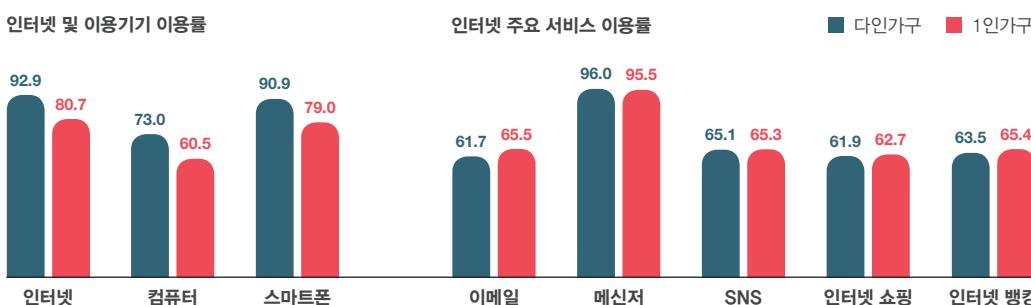


그림 40) 가구원수별 이용률(%)

1인가구 가구주 연령별 이용률

청년층 1인가구의 모든 이용률이 고령층 1인가구보다 월등히 높음

1인가구를 가구주 연령에 따라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분해보면, 두 집단간 현격한 이용률 차이를 보이며, 특히 청년층 1인가구는 모든 이용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혼자 살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이 쉬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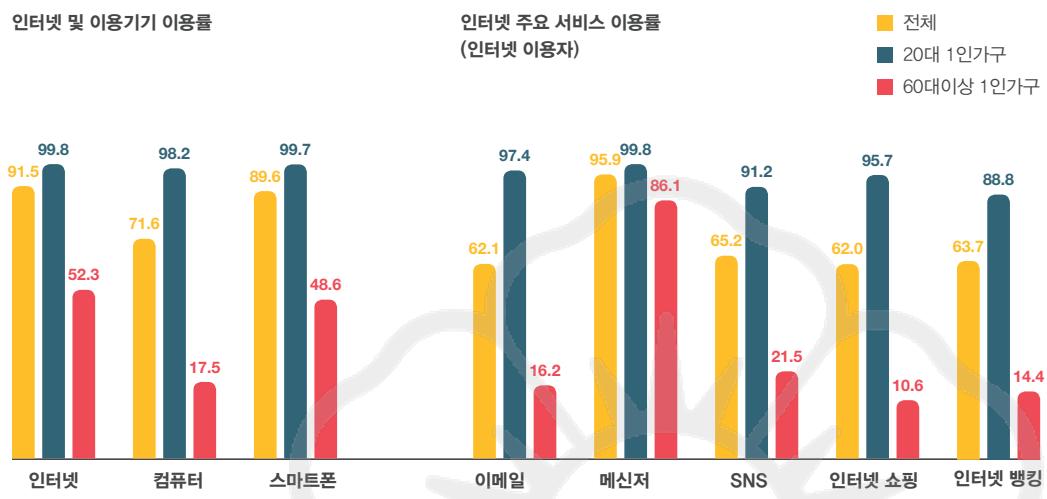


그림 41) 청년층-고령층 1인가구 이용률(%)

고령층을 세부 구분하면, 60대 1인가구와 70대 이상 1인가구의 이용행태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임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60대 1인가구와 70대 이상 1인가구의 이용행태가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70대 이상 1인가구의 전반적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두 집단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동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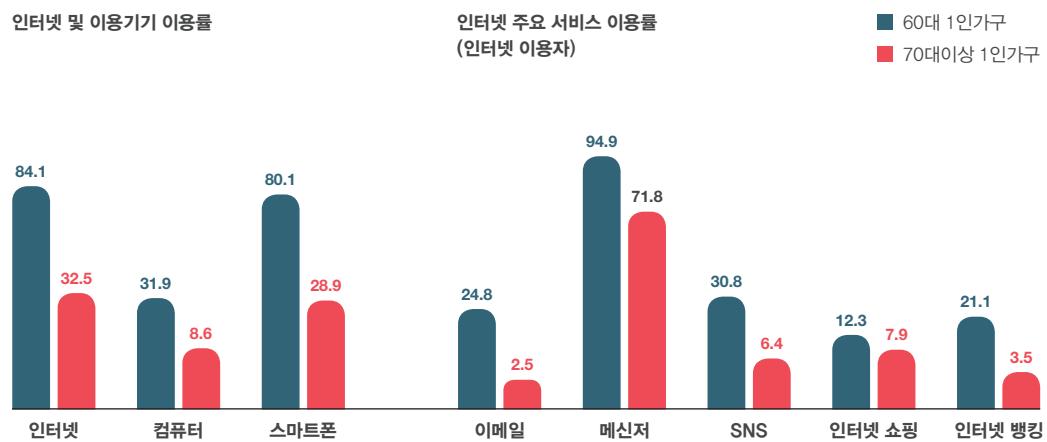


그림 42) 60대-70대 이상 1인가구 이용률(%)

2 인터넷 '나이 제한은 없다'



인터넷 이용률 추이

최근 10년간 인터넷 이용률은 15.0%p 상승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76.5%에서 2018년 91.5%로 10년간 15.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연평균 1.8%p씩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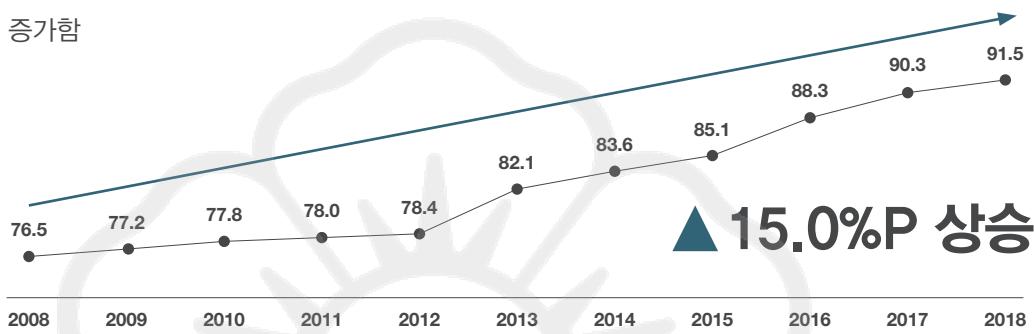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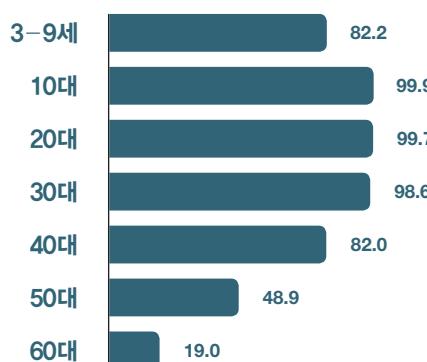
그림 43) 인터넷 이용률 추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10년전 대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는 감소하여, 전연령대가 인터넷을 이용

전 연령대에서 인터넷 이용률 상승을 보여 인터넷 이용 연령대가 확대됨. 특히 40대 이상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함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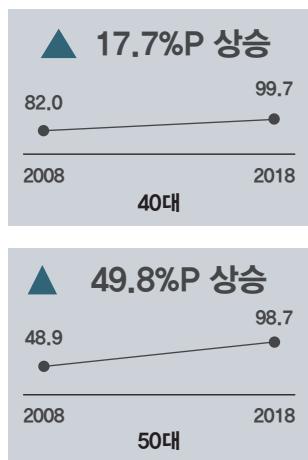
2018



그림 44)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 2008년 · 2018년 비교(%)

최근 10년간 인터넷이용률 상승을 견인한 계층은 고령층과 유아동

최근 10년간 인터넷 이용률 증가폭은 10대~30대는 보합 수준이었으나, 50대가 49.8%p로 가장 컸고, 이어 40대(17.7%p), 3~9세(5.6%p), 30대(1.3%p) 등의 순임



	2008	2018	10년간 증가율(%)
전체	76.5	91.5	15.0
3~9세	82.2	87.8	5.6
10대	99.9	99.9	0.0
20대	99.7	99.9	0.2
30대	98.6	99.9	1.3
40대	82.0	99.7	17.7
50대	48.9	98.7	49.8
60대('08년 60대 이상)	19.0	88.8	69.8
70세 이상	—	38.6	—

그림 45)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및 증가율 – 2008년 · 2018년 비교(%)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추이

최근 3년간 고령층과 유아동의 스마트폰 이용률 또한 전 연령대 대비 큰 폭 상승

인터넷 주 이용기기인 스마트폰의 최근 2년간 이용률 증가폭을 살펴보면, 60대 22.2%p, 70세 이상 20.2%p, 3~9세 12.9%p 등의 순으로 인터넷 이용률을 상승한 계층인 고령층과 유아동의 상승폭 또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



	2016	2018	2년간 증가율(%)
전체	83.6	89.6	6.0
3~9세	60.8	73.7	12.9
10대	95.9	98.4	2.5
20대	99.7	99.9	0.2
30대	99.5	99.9	0.4
40대	98.9	99.5	0.6
50대	92.3	97.7	5.4
60대	64.1	86.3	22.2
70세 이상	14.9	35.1	20.2

그림 46)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률 및 증가율 – 2016년 · 2018년 비교(%)

3 인터넷 '나는 집에서 쇼핑한다'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온라인쇼핑 거래액 매년 급증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7년 79조 9,544억원으로 2013년 대비 107.8%의 증감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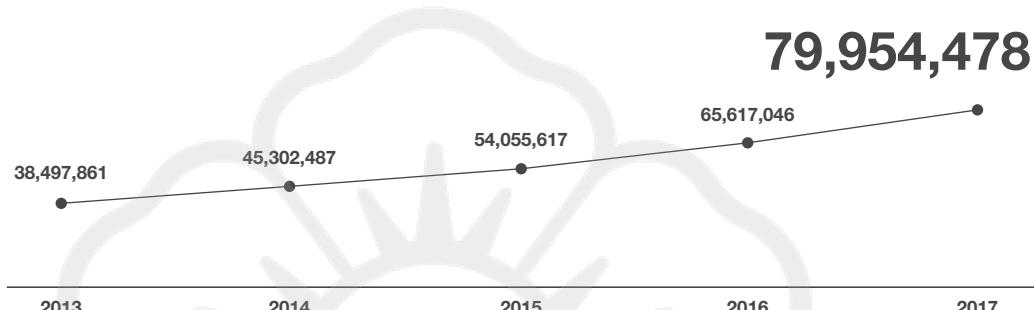


그림 47) 온라인쇼핑몰 거래액(백만원)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인터넷쇼핑 이용률

인터넷쇼핑 이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62.0%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예약·예매 포함)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5년전 대비 11.6%p 상승한 수치, 또한 월평균 이용빈도는 2013년 1.2회에서 금년 3.0회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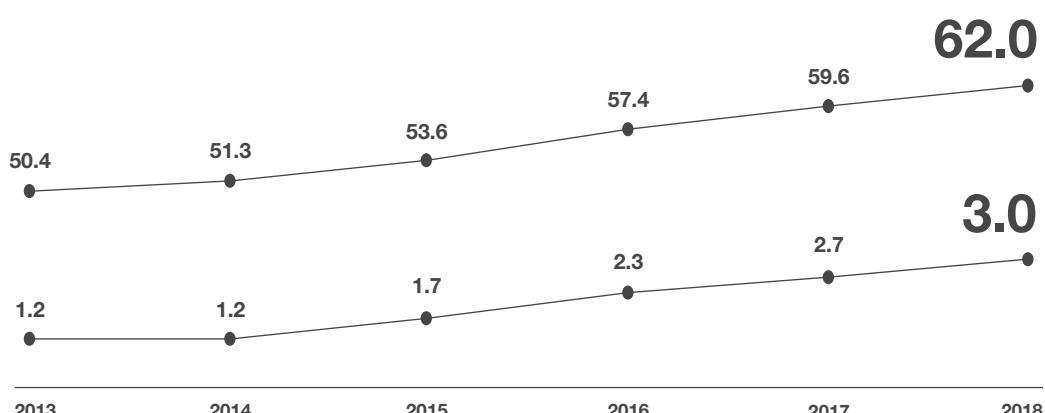


그림 48) 인터넷쇼핑 이용률 및 월평균 이용빈도 –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 이용기기

인터넷쇼핑 이용기기로 스마트폰은 증가, 데스크탑 컴퓨터는 감소

인터넷쇼핑 시 이용하는 기기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은 2013년 대비 53.2%p 상승한 반면, 데스크탑은 23.8%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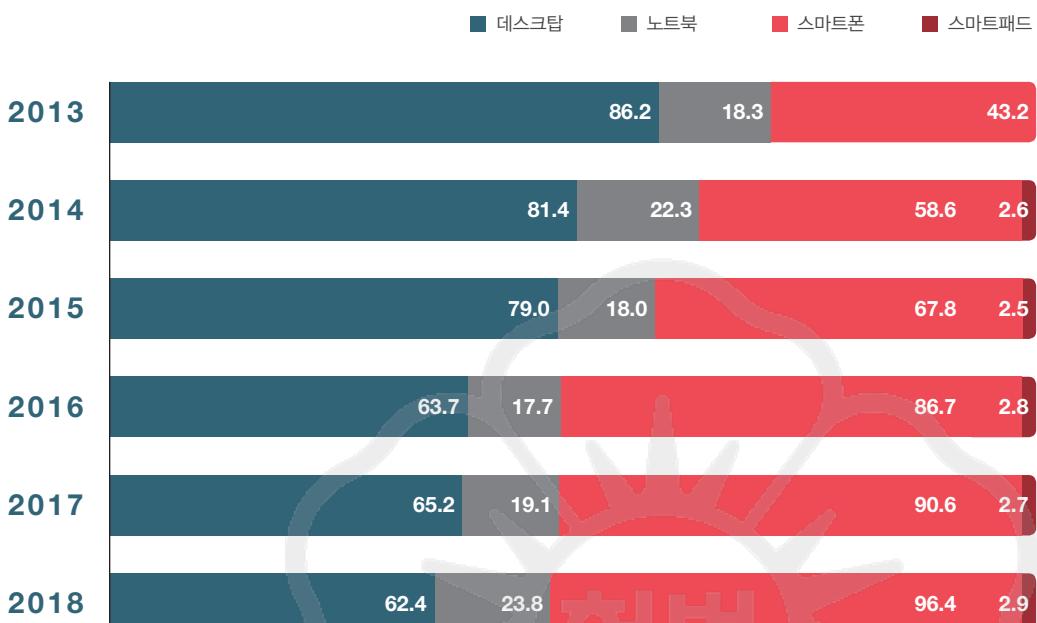


그림 49) 인터넷쇼핑 이용기기(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인터넷쇼핑 결제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직불카드가 연동된 간편결제 이용률이 가장 큰 폭 증가

인터넷쇼핑 시 결제방법은 최근 2년간 무통장입금을 제외한 모든 결제방법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는데, 간편결제의 증가 폭이 14.1%p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체크카드/직불카드(10.9%), 신용카드(5.0%), 휴대폰 소액결제(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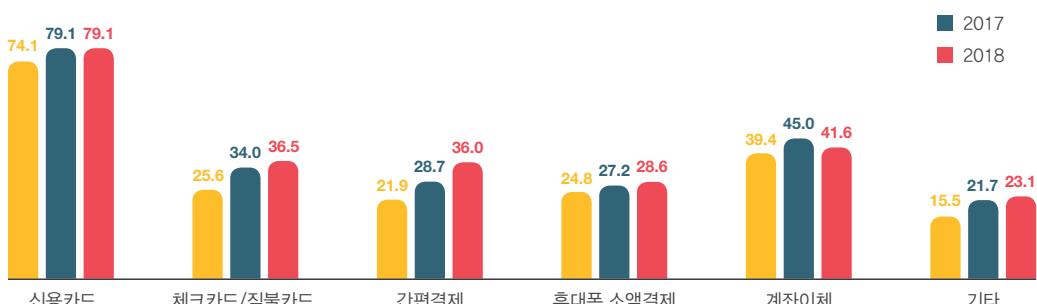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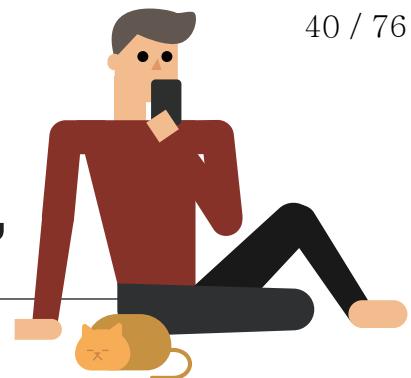


그림 50) 인터넷쇼핑 결제방법(복수응답, %) – 만12세 이상 인터넷쇼핑 이용자

4 인터넷 '언제 어디서나 이용한다'



연도별 모바일인터넷 이용률 추이

인터넷 이용률과 모바일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점차 감소

만3세 이상 인구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이 비율)은 90.4%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률(91.5%) 대비 1.1%p 낮은 수준이나 그 격차는 최근 3년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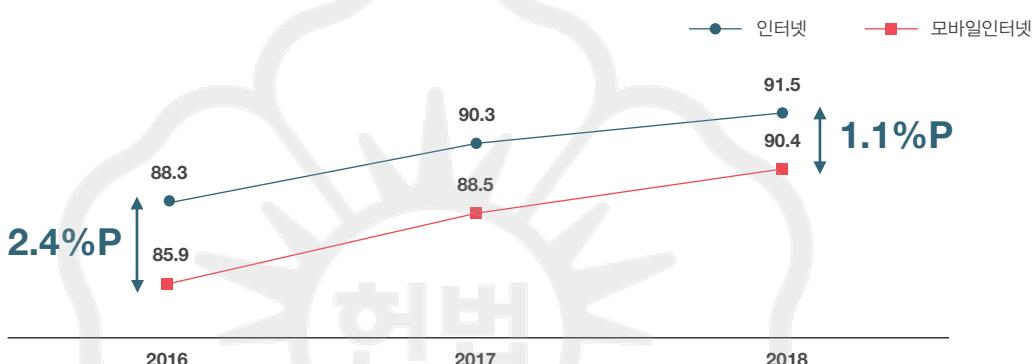


그림 51) 인터넷 및 모바일인터넷 이용률(%) – 만 3세 이상 인구

연도별 컴퓨터/스마트폰 이용률 추이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매년 증가

만 3세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89.6%로 조사되어 컴퓨터 이용률(71.6%) 대비 18.0%p 높은 수준, 스마트폰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컴퓨터 이용률은 감소 추세로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률(%) – 만3세 이상 인구

컴퓨터/모바일기기 기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비교

컴퓨터보다 모바일기를 통해 각 인터넷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인터넷 이용목적별로 서비스를 분류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기를 통한 이용률은 90%를 상회하는 반면, 컴퓨터를 통한 이용률은 80%대로 그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유튜브 등 '홈페이지 운영' 관련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모바일기를 통한 이용이 컴퓨터 보다 33.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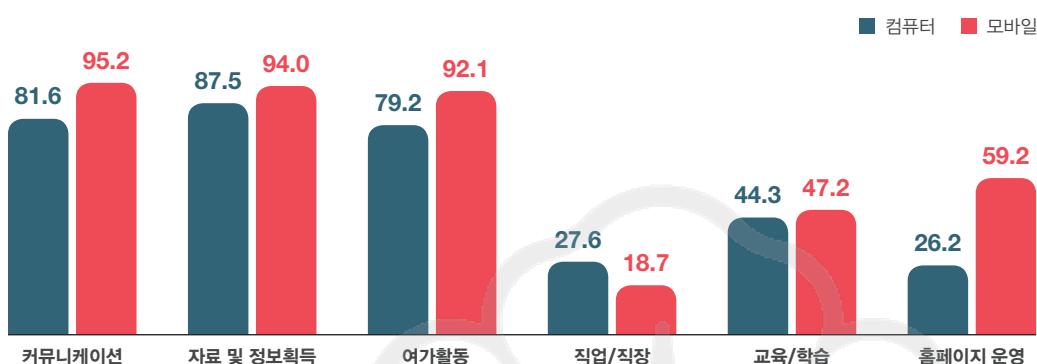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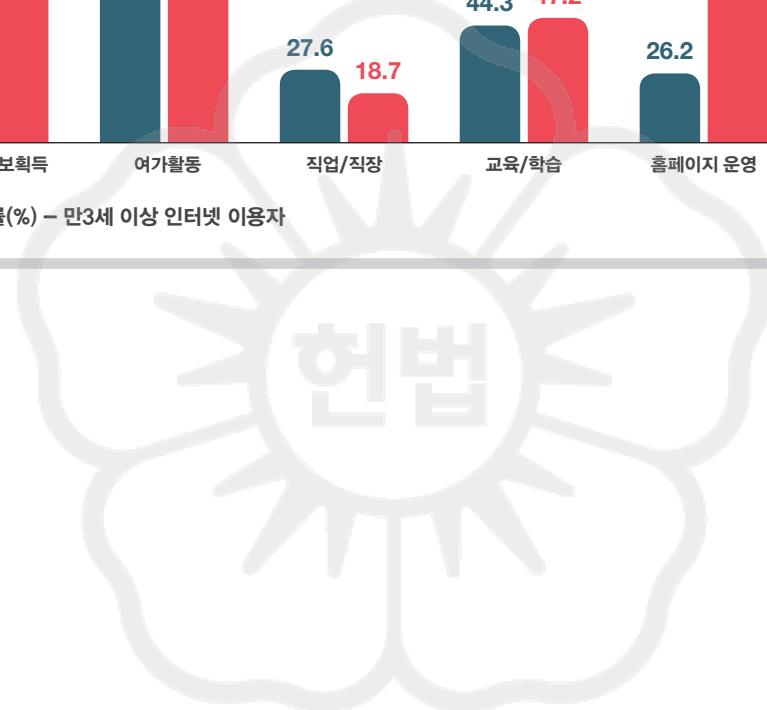


그림 53)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 만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국제 일반

구글, 사생활 침해 논란 일던 타깃 광고 중단

조선비즈 | 이윤화 인턴기자

입력 2017.06.26 14:22

구글(NASDAQ:GOOGL)이 가입자들의 지메일(Gmail) 내용을 검색해 '타깃광고'를 만들던 방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메일 콘텐츠 검색 중단을 알리는 구글 블로그 홈페이지 게시글 / 구글 공식 블로그 캡처.

블룸버그는 24일(현지시각) 구글이 지메일 콘텐츠를 검색해 가입자들에 대한 맞춤 광고를 찾던 방식을 올해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지난 2004년 지메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용자 인박스(메일저장함) 내 콘텐츠 검색을 중단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제기되던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이다.

지메일 사용자들은 구글이 허가 없이 메일 내용과 단어를 검색해 개인의 기호와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구글 측은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광고를 목적으로 개별 사용자들의 지메일 내용을 검색하던 방식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광고팀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 고객 확보를 목표로 하는 클라우드팀의 의사로 알려졌다. 구글 클라우드팀의 부사장 다이앤 그린은 "우리가 할 일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G스위트(G Suite)에는 앞으로도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구글의 광고는 무료버전의 지메일에 흥보메시지 형태로 표시된다. 사용자의 이메일을 스캐닝하는 대신 검색 엔진, 유트브 등 구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타깃 광고는 계속 한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이런 결정이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이앤 그린 클라우드팀 부사장은 "지 스위트에 현재 300만개 이상의 기업 고객이 있으며, 지난해 대기업 사용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자사의 클라우드 부문 수익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지난 1분기 클라우드 사업을



쏘임아는 기다 뉴욕은 신년 행기 내미 49% 증가한 3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프렌디의 딜레마

아빠의 감시 '판옵티콘' 된 스마트폰에 아이들 '탈 옥' 시도

입력 2016.10.13 04:40

[프렌디의 딜레마] <1> 감시와 보호 사이

유해 앱·사이트 차단 앱 19종
사용 시간·내역과 문자 대화 등
위치 추적해 부모에 알려주기도
아이들 "감시 당하는 느낌 불쾌"
앱 우회 방법 묻는 글 인터넷 봇물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감시·통제보다 교육이 해법"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시(혹은 보호)는 통신 발달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스마트폰은 현대판 '판옵티콘(개인을 감시하는 원형감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청소년 감시 수단을 꼽자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들 수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포털 와이즈유저에 따르면, 온라인에 유통 중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은 모두 19종에 달한다. 모두 청소년들을 유해 앱과 홈페이지로부터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일부 앱은 자녀가 누구와 연락하며,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 사용 내역을 부모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내포식으로 노바일펜스가 서비스 중인 '사녀스마트폰 관리' 앱은 '자녀가 실행한 앱, 방문 웹사이트, 사용시간, 문자 대화, 위치정보 등 모든 온라인 활동을 주시하고,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개선하세요'라고 광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치 추적을 통해 부모가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즉각 알림이 오는 기능도 있다.

감시에 맞서 숨 쉴 궁리를 모색하는 청소년들의 몸부림도 웃지 못할 상황이다. 기자가 포털사이트에 모바일펜스를 검색했더니 연관 검색어로 '삭제' '비활성화' 등이 나타났다.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자 앱을 우회하는 방법을 질문한 게시 글이 봇물을 이뤘다. 여기에는 "(유해 정보 차단 앱의) 자동실행을 방지하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라" "스마트폰을 공장 출고시점으로 초기화하라" 등 검증되지 않은 조언들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이름	개발사	기능
스마트보안관	MOIBA	- 유해 앱 · 홈페이지 차단
B인터넷가디언 · B인터넷자녀 스마트폰 관리	SKB	- 유해 앱 · 홈페이지 차단 - 앱 이용시간 설정 -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통계 제공 - 위치 조회 및 홈페이지 방문 횟수 제공 - 자녀가 사용한 음성 · 문자 · 데이터량 확인
맘아이 스마트	제이尼斯	- 유해 앱 · 홈페이지 차단 - 앱 이용시간 설정 - 위치 조회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엑스키퍼 모바일	지란지교소프트	- 유해 앱 · 홈페이지 차단 - 앱 · 홈페이지 이용시간 설정 - 위치 조회 및 부모-자녀 간 메신저
자녀스마트폰 관리	모바일펜스	- 유해 앱 · 홈페이지 차단 - 부모에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통계 제공 - 위치 조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와이즈유저

이런 현실을 두고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지난 8월 청소년이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유해정보 및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7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청소년의 정보 접근 여부를 감시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일부 유해정보 차단 앱의 경우 보안이 취약해 해킹을 당했을 때 고스란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도 있다"며 "기술적으로 학생을 모니터링 하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유해 정보의 폐해를 알리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의 보급은 주요 일상공간인 학원도 감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의 출입 시각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결석 시 즉시 공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



논 주시는 망파 우 악생들의 신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고교 1학년 양모(16)양은 “좋은 목적이라고는 해도 내 행동들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불쾌하다. 문자를 안 보내는 학원을 일부러 찾아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활동가 장은채(19)씨는 “우리 사회는 일탈의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식된다”며 “범죄 우려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스마트폰 과도사용 중재 모바일 앱 분석: 중재 방법 관점

An Analysis of Mobile Apps for Intervening Excessive Smartphone Usage: InterventionMethodPerspectives

고민삼, Minsam Ko*, 이준원, Joonwon Lee**, 양수빈, Subin Yang**, 이의진, Uichin Lee***

요약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 차원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 사용된 다양한 기제(사용시간 표시, 사용 금지 시간 설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효용성 검증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중재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 본 논문은 중재 방법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시중에 출시된 27개의 국내외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콘텐츠 분석을 통하여 중재 방법 ‘차단’, ‘정고’, ‘동기 강화’의 범주를 정의하였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범주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련 디자인 영역을 조명함으로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사용 중재 방법에 대한 심리학, 전산학 분야의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over problematic smartphone use (also known as smartphone addiction) in Korea. To mitigate this problems, application developers designed diverse mobile apps and released them in commercial app stores. However, our understanding of such applications are very limited. In this paper, we aim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popular intervention mechanisms? 2) Are there any missing design dimensions? 3) Are there any evidence-based treatment methods? In this paper, we begin with presenting three key themes of usage intervention, i.e., blocking, usage warning, and motivational enhancement, by analyzing published 27 intervention apps on the app stores. Such critical analysis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explore for research directions for designing intervention applications.

핵심어: *Smartphone Addiction, Intervention, Mobile Applications*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SW 창의연구과정의 연구결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에 의해 지원된 과제로 수행 되었음(NIPA-2013-ITAH0503130110270001000100100).

*주저자: 고민삼,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서비스공학과 박사과정, e-mail: msko@kaist.ac.kr

**공동저자: 이준원,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서비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oonwonlee@kaist.ac.kr, 양수빈,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서비스 공학과 석사과정, e-mail: subin.yang@kaist.ac.kr

***교신저자: 이의진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서비스공학과 부교수, e-mail: uclee@kaist.ac.kr

1. 서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삶은 분명 빠르고 편해 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의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2012년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자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11.1%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모바일 앱들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중재 앱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 과도사용 행동을 수정한다. 대표적 개인 사용 중재 앱으로는 SKT의 스마트 셀프 코치, KT의 올레 자녀폰 안심 등이 있으며, 학부모-자녀-교사 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아이스마트키퍼도 있어 그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 차원에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용된 기제에 대한 이해와 그 효용성 평가가 미비 하였고 더 나은 중재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논의 또한 부족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중독 연구는 주로 한국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2]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보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이해[3]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돋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점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한 중재의 경우 그 규모의 효용성이 뛰어나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기존의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콘텐츠 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중재 방법들을에 대한 범주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중재 서비스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디자인 영역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2. 조사 방법

먼저 우리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1) 사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2) 사용자에게 탈 중독 의지를 장려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맞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상용 앱 스토어(Google Play)에서 검색하여 총 2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중재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재 방법들에 대한 범주화를 위하여 Affinity diagramming 을 수행하였다. 처음에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각 중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중재 방법들의 개념을 추출 및 정리하였다. 각자의 작업이 끝난 후에는 두 연구자들이 함께 추출된 중재 방법에 대해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그룹을 만들어 나가면서 Affinity diagram을 고도화 하였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룹에 대표 중재 방법들을 분류하였으며, 각 중재 방법에 대한 세부이름을 부여 하였다.

3.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의 중재 방법들

표1은 중재 어플리케이션 별 사용 중인 중재 방법을 요약 한 결과를 보여 준다. 분석 결과, 27개 중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중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차단, 경고, 동기 강화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 차단:** 스마트폰의 전체 혹은 일부 기능에 대한 사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기능이다.
- 경고:** 사용자의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진동이나 경고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문제적 사용 상태를 인지시키는 방법이다.
- 동기 강화:** 사용자가 스스로 중재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는 기능으로 자기 효용성 고취, 사회적 지지 활용, 정보 제공으로 분류 가능하다.

표1. 중재 어플리케이션 별 사용 중인 중재 방법을 요약

어플리케이션 명 (개발처)	차단	경고	동기 강화		
			자기 효용성	사회적 지지	정보 제공
앱잠금 및 시간제한 (SkyNet)	○				
스마트폰 중독 방지 (대구대)	○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acontech)	○				
Procrastination Punisher (Great Byte Software)	○				
셀프 컨트롤 for Study (Special J)	○				
*키즈매니저 (AVAD)	○	○			○
Keep Focus(TouchFlick Studios)	○		○		
폰스탑 (포플 커뮤니케이션즈)	○		○		
스마트 셀프 코치 (SKT)	○		○		○
모모 (다우기술)	○		○		○
*모모랑 (다우기술)	○		○		○
스터디 락커 (mjsoft)	○		○	○	○
왓치앱 (Go&Reliance)	○			○	○
*올레 자녀폰 안심 (KT)	○				○
*텔레키퍼 모바일 (Logicplant)	○				○
*Kytetime (Kytephone)	○				○
*Net Nanny (ContentWatch)	○				○
*Qustodio (Qustodio)	○				○
*아이스마트키퍼 (NetCube Tech.)	○				○
*엑스키퍼 모바일 (Jiransoft)	○				○
알리미 (규루창)		○			
Stay On Task (Jay Muntz)	○				
울스 (Nam Seung Il)	○				○
스마트폰 자가 진단 (김종현)					○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 (Schma)					○
No Addiction (Lan Wen)			○		
Human Mode (MiLab)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기반 중재 어플리케이션

3.1 차단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중재 방법은 차단이었다. 이것은 차단 방법이 중재에 있어 간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인다.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차단 시간 동안의 사용 중재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것이다. 하지만 차단을 활용하면 의지적 사용 자제에 부작용도 예상될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차단은 강도 높은 중재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단된 상황에서 갑자기 일정을 확인해야 하거나 급한 일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를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불편함으로 사용자가 중독 방지 앱 사용을 중단하여 과도적 스마트폰 사용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설정에 있어 몇 가지 편의가 제공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시간 설정과 어플리케이션 설정 기능이다. 시간 설정은 사용자가 꾸준히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차단도록 하는 기능이다. 어플리케이션 설정은 차단 모드에서도 사용자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시간 설정과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사용되어 어플리케이션 별로 총 사용 시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한 차단 설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단 기능은 여러 사용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기능은 차단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호작용 지원이었다. 예를 들어 차단 상태에서 사용자가 페널티(스티디락커의 포인트 차감 등)를 받거나 가치 있는 일(Procrastination Punisher의 적십자 기부, Keep Focus의 시간 활용 명언 문구 입력 등)을 수행해야 필요한 만큼의 사용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3.2 경고

경고를 통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법은 담배, 술과 같은 다른 중독 도메인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다 [4]. 스마트폰 중독에서 경고 방법은 알람 기능으로 대표될 수 있다. 즉,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알람을 올려 사용자의 주의를唤起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위험 수준의 사용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받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어플리케이션 중 StayOnTask는 독특한 방식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따로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임의의 시간에 알람을 올리게 한다. 그리고 알람과 함께 사용자가 지금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메시지를 보여 주고 이에 예/아니오로 응답하게 하면서 사용자가 일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준다.

경고 방법은 차단 방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유연한 방법이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즉, 비록 사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인식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끌기까지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3.3 동기 강화

스마트폰 중독 방지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강한 중재 의지를 가지게 하고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의 중재 의지가 떨어져 사용자가 중재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원하지 않게 되면 중재 방법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들은 자기 효용성 고취, 사회적 지지 활용, 정보 제공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의 중재 의지를 장려하고 있었다.

3.3.1 자기 효용성 고취

자기 효용성을 높여 주는 것은 회복 의지가 있는 중독 환자의 동기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자기 효용성을 강화해 주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설정한 응원 문구를 노출시키는 것이다(모모 등).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 사진을 보여 주는 경우도 있었다(NoAddiction 등).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참은 시간을 보여 주거나(Human Mode 등), 그러한 시간을 점수화 하여 보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중재 의지를 자극하는 어플리케이션(스티디락커 등)도 있었다.

3.3.2 사회적 지지 활용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활용하는 것은 여타 중독 치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혼자의 힘으로 중독을 이겨내는 것보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은 중독자의 지속적 동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은 사례지만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발견 되었다. 이들은 경쟁이나 협업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사용 중재의 필요성을 알리고 중재 동기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점수화 하여 친구들과 순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스티디락커 등)이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해 가는 방식(왓치앱 등)이 있었다.

3.3.3 중독 상태 파악 및 사용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은 직접적인 중재 방법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식 시키면서 중재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혹은 반대로 잘 사용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역할로써 스마트폰 중독 방지

에 기여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하나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용 통계 제공과 다른 하나는 설문에 기반한 중독 지수 제공이다.

사용 통계 제공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내역을 날짜 별 혹은 어플리케이션 별로 보여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세한 사용 상황(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인식하게 하여, 스스로 중재 의지를 높이고 중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설문형은 스마트폰 중독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어플리케이션에 담아 사용자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용 통계 기능과는 다르게 자신의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자신의 중독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4. 합의 및 향후 연구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기존의 중재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재 방법은 중재 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각 방법은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방법이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타입의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각 방법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통해서 근거 기반 중재 방법을 확립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중재 방법을 추천해 주어 중재 효과를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 가지 중재 방법들이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것 보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재 강도가 강해 다소 부작용이 예상되는 잠금 방법이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재 의지를 고취하는 기능이나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이 서로 어우러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중재 효과를 볼 수 있을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중재 방법들 위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창의적인 중재 방법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로그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도입하여 문제적 사용을 자동 검출하거나 그룹 사용자의 문제적 행동 패턴 특성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행동 및 지속가능 인간 행동 유도를 위해 널리 사용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여 그룹 사용자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고 보상을 받는 형식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스마트폰 사용 중재 메커니즘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중재를 게임화(Gamification) 하는 기술들이나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가시화 방법 등도의 연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페어런팅(digital parenting)— 자녀에

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 편달하는 기법—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이었던 27개 어플리케이션 중 9개의 어플리케이션은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을 제어하여 중재 방법을 설정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방법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중재 효과에 있어서 부작용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의 통제와 자녀의 중독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 디자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가지 아이디어는 가족단위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다. 단순히 부모가 감시자 및 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본보기로서 함께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자녀들의 사용 중재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지금까지 기존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들의 중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중재 방법의 강도에 따라 소거, 주의, 동기 강화의 세 가지 중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1) 기존 중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한 근거 기반 중재 확립, (2) 여러 중재 방법의 상호보완 및 새로운 중재 방법 개발, (3) 스마트폰 사용로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지능적 중재 방법 개발, (4) 중재를 위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디자인 등에 대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돋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오강탁, 이제은,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실제와 스마트 폰 중독”,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4호, 한국인터넷진흥원, pp. 21~43, 2012.
- [2]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김명찬, 이윤희, 강은비, 금창민, 남지운,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상담학회, pp. 629~244, 2012.
- [3] Shin, C. and Dey, A.K., “Automatically Detecting Problematic Use of Smartphones”, ACM UbiComp, pp. 335~344, 2013.
- [4] Hammond, D., Fong, G.T., McNeill, A., Borland, R., and Cummings, K.M., “Effectiveness of Cigarette Warning Labels in Informing Smokers about the Risks of Smoking: Findings from ITC Four Country Survey”, pp. 19~25, Tobacco Control, 2006.
- [5] Miller, W.R., Zweben, A., DiClemente, C.C., and Rychtarik, R.G.,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Manual”,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1994.

사회 일반

"세뱃돈은 됐어요. 폰이나 풀어주세요" 스마트폰 감시 당하는 아이들

최상현 기자

입력 2019.02.05 15:48 | 수정 2019.02.08 10:26

부모가 자녀 폰에 설치하는 '스마트폰 통제앱'

시간 규제는 물론, 문자·검색 기록까지 한 눈에

아이들, '앱' 별점 테러로 '소심한 복수'

"드라마 'SKY캐슬'에 나오는 미친 엄마들이나 쓸 것 같은 앱"

"보호자라는 말로 어린이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이에요."

"내가 뭘 하는지 엄마가 다 아니까 사생활이 없어요. 하루하루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 통제 앱' 사용후기에 아이들의 절규가 가득하다. 스마트폰 통제 앱은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감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관리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사용되지만, 아이들은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미친 엄마나 사용할 앱". 스마트 폰 사용 시간 및 내역을 다 들여다보는 앱을 깐 청소년들의 불만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왼쪽 사진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 오른쪽은 모자간 대화를 공개한 사례. /JTBC 캡처

◇ "무슨 문자보내고, 무슨 게임했지?" 부모가 스마트폰 다 들여다본다

구글과통신3사(SKT·KT·LGT)는 각 회사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통제 앱'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게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 시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간이 초과되면 메신저·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봤는지 사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구글 패밀리링크(다운로드 100만 이상), 모바일 펜스(100만 이상) 쿠키즈 (50만 이상)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2년째 스마트폰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김선우(12)군은 "사용시간에 집착하게 되면서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김군은 "시간 통제도 문제지만 내가 보내는 문자 내용까지도 엄마가 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소년(10~19세)의 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유아동(3~9세)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015년 12.4%, 2016년 17.9%에 이어 2017년에는 1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스마트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청소년은 "입장을 바꿔 부모 폰에 이런 앱을 설치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며 "보호자라는 말로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게임 중독 때문에 스마트폰 통제 앱을 사용했다는 박주연(14·가명)양은 "사용시간을 다 쓰면 게임 뿐만 아니라 메신저까지 먹통이 됐다"면서 "하루종일 친구들과 대화가 단절돼 불편했다"고 했다.

◇통제 당하는 아이들, '별점 테러'로 복수

아이들의 불만은 '별점 테러'로 이어졌다. 별점 테러는 앱 스토어 등에서 일부러 낮은 평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SK텔레콤에서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통제 앱인 '쿠키즈'의 별점은 1.7점에 불과하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KT 자녀폰 안심'이나 'U+자녀폰 지킴이'도 별점도 각각 1.9점과 1.7점이다. 한 개발사는 "아이들의 별점 하나는 이 앱의 진가를 반증합니다"고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앱을 홍보하기도 한다.

별점 테러와 함께 남긴 사용후기에서 아이들은 스마트폰 통제에 대한 불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맨날 책읽고 수학 문제를 풀어도 15분 밖에 안준다", "저도 자유가 있고 폰을 막 할 권리가 있다고요", "어린이도 인간이에요"라는 내용의 후기가 주를 이뤘다. "제작자님. 저희들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게임 몇 판한다고 혼납니다. 저희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발 이 앱을 없애주세요"라는 호소도 있었다.

앱 통제에서 벗어나는 '노하우'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뚫는 법'을 찾아낸 아이들은 사용후기에 "스마트폰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앱을 몰래 삭제할 수 있다"거나 "음량 감소버튼을 연타하면 앱이 먹통이 된다"는 등의 비법을 나눈다. 유튜브에서도 '쿠키즈 뚫는 법' 등의 강좌 영상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학부모 이용자는 "아이가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내 앱을 무력화한다"며 "마음대로 앱을 삭제하기까지 해서 부모자식 사이가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호소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을 미끼로 아이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높아보여도 장기적 훈육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를 강압적·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과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통제를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통제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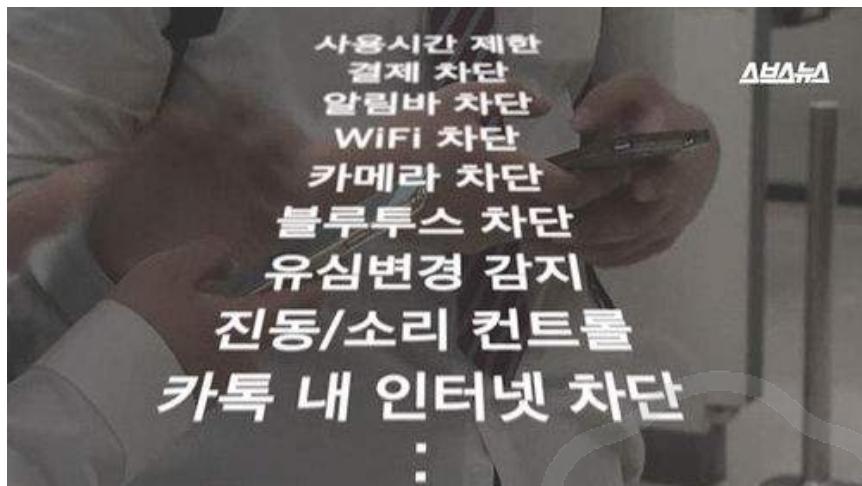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스카이캐슬

#건강한 훈육법

미성년이라면 누구나…'신종 족쇄'로 떠 오른 자녀 관리 앱

입력 : 2019.02.19 09:44 | 수정 : 2019.02.19 11:09



자녀가 모처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게임을 꺼버린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폰 통제 앱'을 통해서는 어떤 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데 이 앱, 그냥 지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자녀 휴대전화에 깔면 특정 앱을 차단하는 건 기본이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제가 PC방에 갔는데 아빠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자녀 관리) 앱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서…]

10분마다 자녀의 위치를 자동추적하고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모에게 바로 알려주는 기능부터 결제나 와이파이 차단 등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닭장 안에 닭 넣고 계속 알 날으라고 시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엄청 속박감을 느꼈죠.]

앱 리뷰 창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10대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앱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 집착이 심해졌다는데요.

[자녀 관리 앱 경험 청소년 : 평소에 계속 못 쓴다는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쭉 쓰라고 풀어주시면 진짜 그걸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계속하고 싶고 생각나고.]

앱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휴대전화에 이런 앱을 깔아야만 하고 이 앱을 삭제하면 통신사에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연/변호사 :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통제 앱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
며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10대에게는 신종 족쇄나 다름없는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 '지켜보고 있다'…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어떻길래?

입력 : 2019.02.19 09:44 | 수정 : 2019.02.19 11:09

저작권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HOME > 뉴스 > 뉴스

청소년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감시법', 개선이냐 폐지냐

2015년부터 '자녀관리 앱'으로 의무설치, 개정 추진 중...부모가 시간관리·모니터링·앱 차단, 문제 여전

송창한 기자 | 승인/2019.02.19 09:0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 앱은 하나의 바이러스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기본권 침해죠."

"이 앱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부모님 핸드폰에도 이거 까셔서 똑같이 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앱은 자녀 관리앱이 아닌 자녀를 탄압하는 앱이죠."

이른바 '자녀관리 앱'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앱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강도 높은 '인터넷 통제'를 당하는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글과 국내 이통3사, 몇몇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등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하고 음란물·유해매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자녀관리 앱'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통제 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 부모의 스마트폰에 각각 통제 앱을 설치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구글 페밀리 링크'(다운로드 수 500만), '모바일펜스'(100만), '스크린타임'(100만), '쿠키즈'(50만)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앱의 통제 권한은 상당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부터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내 인터넷 차단, 결제차단, 카메라 차단, 블루투스 차단 등 앱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기능 대부분을 부모가 차단·통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녀가 어디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차단시킬 수 있다.



각 사가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자녀관리 앱' 소개화면

문제는 이 같은 앱의 설치가 국내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콘텐츠



출입증명서에 내안 접속을 시킨아는 구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차단수단(스마트폰 통제 앱 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매월 해당 청소년의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를 제기할 만한 창구가 없는 청소년들은 앱에 대한 별점 평가, 댓글창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는 해당 앱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소위 'OOO 뚫는 법'이 연관 검색어로 제시된다.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6년 12월 차단수단 설치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법 개정안이 이전보다 일보 진전된 측면이 있더라도 사생활 침해 등 청소년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지원한 앱 '사이버안심존'을 비롯해 이통사가 제공하는 자녀관리 앱이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이유로 제기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부모 동의 조항이 생기면 부모의 자녀 교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긴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이런 앱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인권에는 큰 침해가 된다"며 "아예 개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조항 자체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런 앱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능 자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앱들이 아니다"라며 "통제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전부 암호화되면 모르겠지만 보안에 하술하다. 해커들이 앱을 해킹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해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부모의 개인정보 역시 해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은 2016년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청소년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 조항이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세계일보

"통제당연" vs "인권침해"...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 논란

'패밀리링크' 500만건 이상 다운로드 '1위' / 앱 이용시간 확인·다운로드 승인 등 가능 / 이용 웹 목록, 통화·문자 기록 모니터링도 / 유아동 부모 2명 중 1명 '모니터 앱' 사용 / 10대 3명 중 1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 교육·청소년단체선 "통제는 사생활 침해" / "현행법 부모에 통제수단 제공 명시 문제 / 무조건 규제하는 것 보다 절제 교육 먼저"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 / "부모들 주도의 통제 결국에는 효과 없어 / 서로 소통해서 이용에 관한 합의 이뤄야"

입력 2019-03-10 11:25:47, 수정 2019-03-16 15:19:06



#1. 안녕하십니까. 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최근 '모바일펜스'라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해 제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앱으로 인해 부모님이 제 통화·문자기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선 미성년자도 인권이 있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앱을 삭제해 주세요.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습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일부)

#2. 이서현(43·가명)씨는 최근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와 스마트폰 때문에 크게 달랐다. 새 학기를 앞두고 딸이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패밀리링크'를 지워 달라고 얘기하면서 다툼은 시작됐다. 이씨는 그간 이 앱으로 딸아이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딸이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앱을 확인해 왔다. 딸이 "사생활 침해"라며 바らく바らく 대드는 통에 이씨도 화가 나 "1년 전 스마트폰을 사줄 때 약속한 건 있었나"고 소리쳤다. 이씨는 "딸이 말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란 걸 아는데, 요즘 하도 익명 채팅 앱 같은 걸로 10대 대상 범행도 많고 유해 정보도 너무 접근이 쉬우니깐 완전히 놔줄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새 학년 시작과 함께 초·중·고등학생들 사이 스마트폰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모의 스마트폰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늘고 있다. 특히 이 용시간 제한, 앱 사용 현황 확인, 문자·통화·검색기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에 대한 10대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녀 스마트폰 통제 앱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한편 특정 앱에 대해 10대들이 대거 최하점 평가를 매기는 '별점 테러'도 계속되는 중이다. 오히려 앱 개발사는 '아이들의 별점 하나는 이 앱의 진가를 반증한다'며 10대의 별점 테러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자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부모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녀 스마트폰 관리 목적으로 현재 서비스되는 앱은 '패밀리링크'(다운로드 500만건 이상), '모바일펜스'(100만건 이상), '스크린 타임'(100만건 이상), '키즈 플레이스'(100만건 이상), '쿠키즈'(50만건 이상), '키즈 존'(50만건 이상) 등이다. 가장 많은 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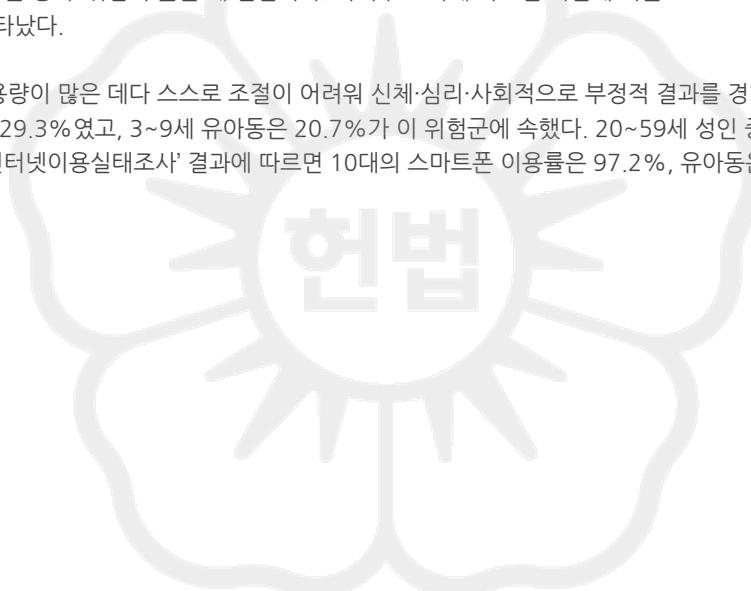
헌법재판소 전자기록에 등재된 문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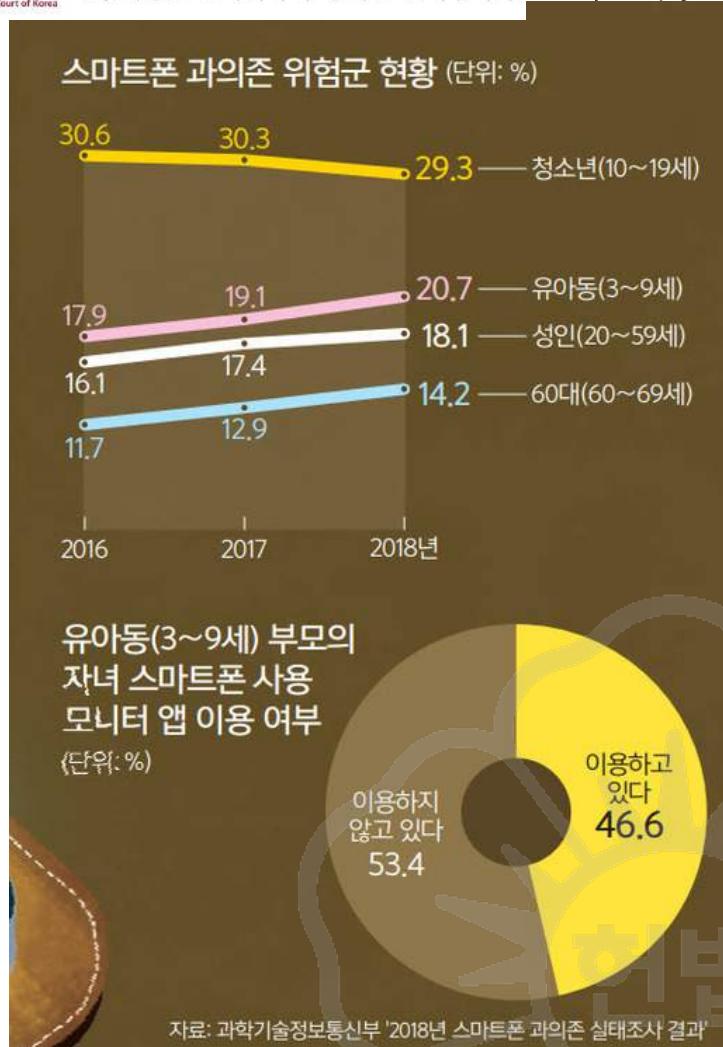
~€%kX hi qehnehoX orj i rhk
별 이용시간 확인, 앱 다운로드 승인·차단, 스마트폰 이용시간 한도 설정, 위치 확인 등 기능이 있다. ‘모바일펜스’는 여전히 자녀가 이용한 웹사이트 목록, 통화·문자기록의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3~9세) 부모 약 2명 중 1명(46.6%)은 자녀의 스마트폰 지도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모니터하는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앱이 확산한 건 결국 자녀 세대의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실제 아동·청소년은 다른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게 현실이다.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19세 청소년 약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은 데다 스스로 조절이 어려워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현상을 뜻한다.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9.3%였고, 3~9세 유아동은 20.7%가 이 위험군에 속했다. 20~59세 성인 중 비율은 18.1%, 60~69세는 14.2%였다. 과기부의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2%, 유아동은 63.8%였다.





◆ “무조건 ‘통제’보다 ‘교육’ 먼저”

이런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앱을 통한 자녀의 스마트폰 통제는 ‘인권 침해’라는 게 많은 교육·청소년 단체의 주장이다. 교육공동체 ‘나다’의 인성민 활동가는 “인터넷 접속과 앱 이용을 제한하고 그 사용기록을 조회하는 건 감시대상을 제한 없이 통제하는 일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기성세대의 편의를 위해서만 행해지는 일로 청소년을 그저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웹사이트 목록, 통화·문자기록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기능이 있는 앱 '모바일펜스' 작동 모습. 모바일펜스 제공

이들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이 통신사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통제수단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은 2016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전 무후무한 조치"라며 "자녀에 대한 스마트폰 통제가 필요하더라도, 이건 부모와 자식 간 논의하에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깔아라 말아라 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해 말 해당 법령에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을 하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결정도 청구 이후 3년이 다 돼 가지고 여전히 강감무소식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 자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돼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더욱이 자녀 통제 앱은 개인의 상당히 내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서 보안에 취약할 경우 해킹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스마트 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걷고 있는 학생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들은 스마트폰 통제 앱이 근본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이미 자녀가 일탈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해당 앱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특정 앱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성민 활동가는 “어떤 미디어나 대중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접근을 막는 식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미디어나 대중문화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 발달의 방향은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일 텐데, 통제는 이 큰 흐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부모는 스마트폰에 지지 않도록 자녀와 관계 탄탄히 해야”

“우리 부모들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별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사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보이면 뺏거나 강제로 통제하려 든다는 거예요.”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사진) 소장은 스마트폰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부모의 안이한 태도에서 찾았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부모 주도의 통제는 결국 효과가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건 서로 소통해서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지난해 자녀 스마트폰 이용 문제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접근 방법을 담은 책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를펴냈다.



그가 말한 건 처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부터, 스마트폰이 지닌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가 적당한 때 그 이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권 소장은 “이런 단계가 없으면 결국 나중에 스마트폰 이용을 둘러싸고 부모와 자녀 간 감정싸움만 벌이게 된다”며 “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말의 내용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부모 또한 아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그저 ‘대든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아 화해 없는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 먼저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자녀 스스로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권 소장의 생각이었다. 그는 “부모가 매번 개입해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설계한 규칙에 포함된 불이익을 생각해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헌법재판소 전자기록에 등재된 문서입니다. j hi qej hhni hi j e" ~€‰kX hi qehnehoX orj i rhk
한국어로 표기된 문서입니다. 그는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로 하는 규칙을 정했다면 부모도 그 시간엔 최대한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럼 자녀가 ‘해당 규칙이 부당한 게 아니다’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이 모든 방법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스마트폰 이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너무나 쉽게 이용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이건 원래 부모의 역할을 스마트기기가 뺏기 쉽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부모는 스마트기기에 지지 않도록, 자녀와 탄탄한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게 자녀의 스마트폰과 의존을 줄이는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이희진 수습기자 hwan@segye.com



HOME > 생활

스마트폰 통제 앱, 청소년 인권 침해인가

兜 채윤정 기자 | ⓒ 승인 2019.03.22 15:45

사용시간 제한 외에
위치추적·사용내역 확인
인권침해 의견도
청소년 약 3명 중 1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전기통신사업법에
청소년 유해차단 앱 설치 의무



서울시 주최로 열린 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고기 스티커를 폰에 부착하고 '스마트폰 1-1-1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인 A씨는 아이가 방과 후 거의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이 됐다. 담임선생님이 스마트폰 통제 앱을 소개한 것이 생각나 앱을 깔겠다고 아이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앱을 깔면 방문 사이트 기록이 남는다’며 친구들이 ‘인권침해’라는 말을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A씨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을 통제하고 싶었을 뿐인 데 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학부모 중 스마트폰 통제 앱을 자녀가 반대해 깔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통제 앱은 부모들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정해진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용 불가능하도록 해 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이 활발하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3세~9세의 과의존 위험군은 20.7%, 만



속해 있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매체,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앱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동통신 3사 공식 대리점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스마트폰 통제 앱은 부모와 아이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위치추적을 위해 ‘쿠키즈’ 앱을 까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생들은 이 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쿠키즈’ 앱을, KT는 ‘올레 자녀폰 안심’, LG유플러스 ‘U+자녀폰지킴이’ 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폰 통제 앱이 개발돼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패밀리링크’가 500만건 이상 다운로드돼 가장 점유율이 높고, ‘모바일펜스’(100만건 이상), ‘스크린 타임’(100만건 이상), ‘키즈 플레이스’(100만건 이상) 등도 인기가 많다.

그럼에도 국민청원에는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이 앱들을 사용 금지시켜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모바일펜스’는 휴대폰 이용 시간 설정은 기본이고 자녀가 들어간 앱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통화·문자 내역과 위치추적, 네이버검색창에도 뭘 검색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인권침해이고, 이 앱 때문에 부모님과 다투고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자도 “자녀폰안심·모바일펜스·쿠키즈 등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 사용을 차단해달라. 유엔아동아동권리협약 16조에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유해차단을 핑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플들을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이들 앱에 대해 최하점 점수를 주는 ‘별점 테러’에도 나서고 있다. 강력한 기능으로 잘 알려진 ‘모바일펜스’는 위치 추적, 앱 종류별 이용시간 확인, 스마트폰 총 이용시간 한도 설정은 물론이고 웹사이트 목록, 문자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청소년들의 별점 테러에 대해 ‘아이들의 별점 하나는 이 앱의 진가를 반증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스마트폰 통제 앱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오히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의 무료 앱인 ‘사이버 안심존’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기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 방통위 인터넷 윤리팀 김민지 주무관은 “2013년부터 앱을 서비스했지만 학교에서 설명회를 신청해야 이 앱 사용을 권유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참여가 없는 편이라 이번 MOU를 통해 서울시 학교의 참여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가 학교로 파견돼 앱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나 학부모가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련 앱들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이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 시민운동 단체인 오픈넷은 2016년 청소년에게 유해매체 등 차단 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청소년 사생활 침해 및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이 법을 ‘스마트폰 감시 법’으로 부르는 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며, 부모나 청소년 등의 없이도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모니터링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같은 앱은 보안이 취약해 해킹당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 정보가 노출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측은 “부모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하다 오히려 사이만 나빠지는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부모와 자녀가 합의를 통해 앱 사용을 결정하고, 제한적인 기능만 되는 폰을 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채윤정 기자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분석: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Content Analysis of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lications: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Sook-Jung Lee(sjleecom@ca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을 통한 자기결정적 조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6개의 중독방지 앱을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8개는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 18개는 자기관리형 앱이었다. 내용분석 결과, 분석된 앱 중에서 오직 3개의 앱만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하는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기 관리형 앱의 경우, 대부분이 차단·제한·잠금 등 이용환경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자율성 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상 행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능성과 관계성 속성은 매우 낮았다.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이 모두 낮았으며, 자기결정적 동기를 저해하는 통제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중독방지 앱이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조절동기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고려한 중독방지 앱 개발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스마트폰 중독 | 청소년 | 자기결정성이론 | 중독방지 애플리케이션 | 내용분석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lf-determined motivational features of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smartphone addiction management apps have features to support adolescent users' basic needs, that i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26 apps were analyzed. Among them, 8 apps were parental management apps installed on a parent's phone and a child's phone, and 18 apps were self-management apps installed on a child's phone. According to a content analysis, only 3 of 26 apps addressed all three basic needs. Overall, the functions to support users' competence and relatedness were rarely found. Particularly, parental management apps had a high level of controllingnes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ction management apps have limitations in stimulating adolescent users'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manage their phone use.

■ keyword : | Smartphone Addiction | Adolescents | Self-determination Theory | Application | Content Analysis |

접수일자 : 2015년 10월 27일

수정일자 : 2015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이숙정, e-mail : sjleecom@cau.ac.kr



I. 서 론

스마트폰은 융합 미디어이다. 스마트폰은 통화하기, 문자보내기, 정보 찾아보기, TV 보기, 뉴스 읽기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만큼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폰의 휴대성과 즉시성 덕분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의 신체 일부 또는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1], 어른, 아이, 노인, 어떤 연령층을 막론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독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발달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과도한 사용이 그들의 발달 과제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 및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중재 방안에는 부모 중재와 학교 교육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재는 제한적 중재, 설명적(적극적) 중재, 공동 이용으로 구분된다[4][5]. 제한적 중재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부모가 규칙을 정하거나 금지 및 차단을 하는 중재방식을 의미하며, 설명적(적극적) 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중재방식이다. 공동 이용은 부모와 자녀가 미디어를 함께 이용하지만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된 대화는 일어나는 않는 형태이다. 부모의 중재방식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형지와 정세훈 연구에 따르면[6], 부모의 설명적(적극적) 중재는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에, 제한적 중재는 오히려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 중재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교 규칙이 있다. 학교 규칙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생활지도매뉴얼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예방, 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7]. 이러한 학교 중재 방식들의 효과는 아직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김형지와 정세훈 연구에 따르면[6], 학교에서 실시되는 중독 예방 교육 참여 정도는 초등학생의 중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미디어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중재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유해차단 앱으로 스마트보안관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해차단 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의 행위를 중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앱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유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지나친 감시로 인해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호와 김경희의 연구에 따르면[4], 청소년들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부모가 유해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억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편법으로 해제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몇몇 참여자들은 중독방지 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앱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앱 설치의 자발성 및 앱의 특성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아가 이용행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중재할 수 있는 앱들이 개발 및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최근 고민삼, 이준원, 양수빈, 이의진[8]은 중재 방법을 크게 차단, 경고, 동기강화로 범주화하여 스마트폰 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앱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해 볼 때, 이용자의 기본심리욕



구를 충족시켜 이용조절에 대한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앱이 그렇지 않은 앱보다 이용자의 과다 사용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지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을 평가함으로써, 효과적인 중독방지 앱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자기결정성이론

1. 자기조절동기 유형

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대상 행동에 대한 행위자의 동기를 크게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로 구분한다. 내재동기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 및 확장하고 탐색하고 배우기 위해, 새로움과 도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정향성을 말한다[9]. 내재동기와 같은 자기결정적 동기는 대상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성취수준, 지속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인간이 관여하는 또는 관여해야 하는 활동이 모두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다[9][10]. 예를 들어,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은 내재동기에 의한 활동일 경우가 많지만,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는 행위는 주로 외적조절에 의해, 또는 외적조절이 내재화되어 나타난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내재동기가 유일한 자기결정적 동기는 아니다. 외재동기라고 할지라도 내재화의 과정을 거쳐 자기결정 동기로 발전할 수 있다. 내재화(internalization)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관행이나 요구를 개인적으로 승인된 가치와 자기조절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내재화의 과정이 잘 작동할 때, 개인들은 대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외적 조절은 내적 조절로 변형된다[9][10].

자기결정성 이론가들은 외재동기를 외적 통제로부터 자기결정에 이르는 하나의 연속체로 개념화하고, 그 유

형을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사된 조절(introjection), 확인된 조절(identific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ion)로 구분한다. 외적 조절은 한 개인이 외적 제약에 대한 순응이나 외적 보상 또는 처벌 때문에 요구된 행동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동기유형이다. 내사된 조절은 외적 규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내사는 외적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보다는 그냥 삼켜버리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존심, 타인의 인정, 공격자의식 등으로 인해 요구된 행동을 수행하는 동기 유형이다. 확인된 조절은 그 행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적 의미를 부여할 때 발생하는 동기유형이며, 통합된 조절은 완전히 자신에게 동화될 때, 즉 자신의 다른 가치나 욕구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동기 유형이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확인적 조절과 통합된 조절은 자율적 동기 복합체로 간주된다[9-13].

이러한 동기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응답자들이 확인된 조절과 통합된 조절의 개념을 구분하여 응답하기 어려우며,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1]. 현재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무동기, 외적동기, 내사(부과) 동기, 확인(통합) 동기, 내재동기라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동기 유형을 측정하고 있다[14][15].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확인동기와 내재동기가 자기결정적 동기라는 상위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4][16].

동기 유형을 스마트폰 조절 행위에 적용해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조절 행위의 원인이 부모의 감시나 처벌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외적 조절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를 내사된 조절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 중요성, 유용성을 인식하고 스마트폰 조절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확인된 조절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조절이 외적동기에서, 내사된 조절동기로, 나아가 확인된 조절동기로 내재화될수록, 스마트폰 조절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외재동기의 내재화와 기본심리욕구 총족

외적 조절이 내적 조절로 변형되는 내재화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내재화라는 심리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을 제시한다[9][10].

2.1 관계성(relatedness)

관계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타인과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이다[17]. 사람들은 타인들과 서로 관심을 주고받고, 나아가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고자 한다. 이러한 관계성 욕구로 인해, 인간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이나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16-18].

사람들은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그 행동을 요구하거나 그 행동을 직접 하거나, 그 행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요구된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0]. 왜냐하면, 그 행동을 요구하는 또는 동기 부여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 나아가 그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관계성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 행동에 대한 조절 내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관계성 욕구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동기부여자와 행위자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타인이 행위자의 행동 수행에 관여하고, 또는 함께 그 행동을 수행하면서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19].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청소년의 관계성을 지지해줄 수 있다면,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을 통한 자기조절의 가능성과 지속성이 높아질 것이다.

2.2 유능성(competence)

유능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탐색, 학습, 적응이 축적된 결과이다[18]. 유능성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가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된다. 행위자가 대상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고, 그 행동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각한다면, 그 행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현될 수 있다[9][10].

유능성은 효능감과 유사하다. 사회인지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 방침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20]. 일부 연구들은 지각된 유능성과 자기효능감을 통합하여 단일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고[21], 일부 연구들은 관련된 개념이지만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각된 유능성은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그 이상의 의미로서, 주어진 과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22]. 자기결정성 이론가들은 욕구를 심리적 성장, 통합,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이자 에너지원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욕구로서의 지각된 유능성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효능감과 다르다고 본다[9].

유능성 욕구를 지지하는 맥락적 특성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 도전 가능한 적정 수준의 활동 제시, 충분한 연습 시간과 기회 제공, 과제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자원 제공, 긍정적 피드백 제공 등이 포함된다[6][10][23]. 이때 피드백은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 과제를 어떻게 숙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18].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는 스마트폰 앱은 청소년 이용자의 유능성 지각을 높여 스마트폰 조절 행위에 대한 내재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2.3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자신이 대상 행동에 대한 주체이자 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10]. 사람들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느끼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기를 원하

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4

며,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자율성은 통제당하고 조정당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통제된 규제를 의미하는 타율성(heteronomy) 또는 통제성(controllingness)과 반대되는 개념이다[10][24].

자율성은 관계성과 유능성과 함께 대상 행동의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자율성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분명한 보상과 처벌이 있고, 행위자가 요구된 행동을 수행할 정도의 유능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외적 조절의 상황이다. 관련 준거 집단이 그 행동을 지지해주고, 그 행위자가 그 행동 수행에 대한 유능감과 준거집단과의 연결됨을 느낀다면, 이는 내사적 조절 상황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맥락적 조건 속에서, 유능성과 관계성을 경험하게 된다면, 행위자는 그 행동의 의미를 자신의 다른 목표 및 가치와 통합하여 그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적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10].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맥락적 조건은 강요와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행위자의 관점과 감정을 인정해주고, 대상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여러 대안들 중에서 행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행위자의 가치와 대상 행동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말한다[17][19][25].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환경을 제공할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용 조절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이용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자기 결정적 동기를 촉진시켜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속성을 살펴보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은 자기관리형과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으로 구분되는데, 자기관리형 앱과 부모관리형 앱 간의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은 자기결정적 동

기를 촉진시키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앱 형태별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앱 형태별로 자기결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부모관리형 앱은 자기결정적 동기를 저해하는 통제성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스마트폰 중독 방지 및 이용 관리 앱이다. 분석 대상을 수집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중독’ ‘중독 방지’ ‘이용 관리’ ‘자녀 관리’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무료 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설치 가능한 26개의 앱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8개는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이며, 18개는 자기관리형 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분석 대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중독방지	낫터치
넌 얼마나 쓰니	노터치
모모	모바일 펜스
부들부들	세 번만
스마트보안관	스마트중독방지앱
스터디락커	스터디타임
아이스마트키퍼	알리미
엑스키퍼	오마이폰중독
올레자녀폰안심	왓디드
중독방지매니저	퀄러티타임
키즈락	키즈매니저
폰스탑	폰아웃
Sam Locker	Stop it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 분석: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17

2. 분석 유목

자기결정성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앱 속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유목을 개발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중재 모바일 앱의 특성을 범주화한 고민상 등의 연구[8], 자기결정성 관점에서 금연앱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정화·박동진·노기영의 연구[26], 이용자의 관여(user engagement)의 관점에서 건강 앱을 분석한 Sama와 동료들의 연구[27] 등을 참고하였다.

2.1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을 지지하는 앱의 특성으로는 ① 차단·제한·잠금 등 환경 설정에 대한 자율적 결정, ② 차단 설정 및 목표 설정에 따른 알람 기능, ③ 목표 시간을 설정하거나 목표 문구를 입력하게 하는 기능, ④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해야 하는 중요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을 포함하였다.

유능성을 지지하는 앱의 특성은 ① 스마트폰 이용자 본인의 이용 행위 분석 정보 제공, ② 비교를 위한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통계 정보 제공, ③ 이용조절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④ 성취 상황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하였다.

관계성을 지지하는 앱의 특성으로는 ①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지지 및 응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② 친구 등 타인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포함하였다.

2.2 자기결정성 점수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성 점수는 각각의 앱들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즉, 내용 분석을 토대로, 각 앱의 자율성 4항목, 유능성 4항목, 관계성 2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한 값으로 0점에서 10점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2.3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의 통제성

자녀폰과 연동된 부모관리형 앱은 위의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저해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율성의 반대개념인 통제성의 차원에서 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제성과 관련된 앱의 특성으로는 ① 이용 조절과 관련하여 부모가 일방적으로 환경 설정, ②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완전 잠금 가능함, ③ 자녀의 사용 내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받음, ④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 ⑤ 위치추적 가능여부를 포함하였다.

3. 분석 절차와 코더 간 신뢰도

분석유목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기에 앞서, 해당 앱들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앱의 특성 및 기능을 지면에 요약 정리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분석유목에서 고려하지 못한 앱의 특성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바로 코딩할 경우 놓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앱별로 요약 정리된 내용과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기능을 다시 비교하면서 분석유목에 따라 코딩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두 명의 코더들은 분석대상인 총 26개의 앱을 개별적으로 코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코더 간 신뢰도는 모든 항목에서 .9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를 보인 항목은 분석 유목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능이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들이었다. 따라서 앱의 기능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코더 간 신뢰도를 높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은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이용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해주는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총 26개의 앱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지지 속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율성 차원에서 볼 때, 시간대와 시간량을 제한하고 특정 앱을 차단하는 환경 설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지닌 앱은 65.4%였으며, 그 다음으로 차단



설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기능을 가진 앱은 42.3%였다. 전체 앱의 19.2%는 차단 설정과 별도로, 목표 사용시간을 설정하거나 목표 문구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조절 행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절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차원에서 보면, 전체 앱의 57.7%가 이용자 본인의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사용 정도를 다른 일반 이용자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앱은 각각 7.7%와 3.8%에 불과하였다. 한편, 관계성을 지지하는 기능을 가진 앱은 11.5%로, 친구와 함께 앱을 실행하고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표 2. 중독방지앱의 자율성·유능성·관계성 분석

(n = 26)

세부 항목		비율(빈도)
자율성	차단·제한·잠금에 대한 자율 설정	65.4 (17)
	차단 설정에 따른 알람	42.3 (11)
	목표 시간 설정 및 문구 입력	19.2 (5)
유능성	조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정보	0.0 (0)
	이용자 본인 사용 내역 정보	57.7 (15)
	비교를 위한 일반인 사용통계	7.7 (2)
관계성	가이드라인 등 유용한 정보 제공	0.0 (0)
	성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3.8 (1)
	친구와 공동 실행 유도 기능	11.5 (3)
	격려 및 응원 메시지 제공 기능	0.0 (0)

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2>는 앱 형태별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자기관리형 앱이 부모관리형 앱보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관리형 앱 중 88.9%가 이용자 스스로 차단·제한·잠금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관리형의 경우, 전체 8개 중에서 하나의 앱만이 자율적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관리형 앱 중 55.6%는 설정에 따른 알람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부모관리형 앱의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앱만이 알람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능성 차원에서 볼 때, 자기관리형 앱의 61.1%, 그리고 부모관리형 앱의 50%가 이용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의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관리형 앱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는 스스로의 이용 행위에 대한 유능감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부모관리형 앱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감시 및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제공되는 자녀의 이용 관련 정보는 오히려 통제성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한편,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진 앱은 전체 분석 대상 중 11.5%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앱은 모두 자기관리형 앱이었다. 부모관리형 앱 중에서 친구와 공동 실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앱 형태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비교

	세부 항목	자기관리형 (n = 18)	부모관리형 (n = 8)
자율성	차단·제한·잠금에 대한 자율 설정	16	1
	차단 설정에 따른 알람	10	1
	목표 시간 설정 및 문구 입력	4	1
유능성	조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정보	0	0
	이용자 본인 사용 내역 정보	11	4
	비교를 위한 일반인 사용통계	2	0
관계성	가이드라인 등 유용한 정보 제공	0	0
	성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제공	1	0
	친구와 공동 실행 유도 기능	3	0
	격려 및 응원 메시지 제공 기능	0	0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3>은 자기관리형 앱과 부모관리형 앱의 자기결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앱의 평균 자기결정성 점수는 2.08이었다. 자기결정성 점수가 최대 10점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성 점수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자기관리형 앱 중에서,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았던 앱은 <넌 얼마나 쓰니>, <부들부들>, <오마이폰 중독>이었다. 3점 이상을 받은 앱에는 <노터치>, <모모>, <스터디락커>, <퀄러티타임> <Stop it>이 포함되었다.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 분석: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19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기관리형 앱과 부모관리형 앱의 자기결정성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2.98$; $p = .007$). 부모관리형 앱의 자기결정성 평균 점수는 .88, 자기관리형 앱의 자기결정성 평균 점수는 2.61로, 자기관리형 앱에 비해, 부모관리형의 자기결정성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앱 형태별 자기결정성 점수 비교

	<i>M</i>	<i>SD</i>	<i>t</i>	<i>df</i>	<i>p</i>
자기관리형	2.61	1.46			
부모관리형	.88	1.13	2.98	24	.007

4.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4>는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의 통제성 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부모관리형 앱의 통제성은 자율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녀의 자기결정적 동기를 저해하는 속성에 해당한다. 부모관리형 앱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앱들이 부모가 자녀의 이용시간대와 이용량을 제한하고 앱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예외적인 앱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을 통해 자녀가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부모관리형 앱 중, 50%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의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25%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자녀 폰을 일방적으로 완전 잠금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앱도 25%로 나타났다.

표 5. 자녀폰 연동 부모관리형 앱의 통제성 분석 (*n* = 8)

	세부 항목	비율(빈도)
통제성	부모의 일방적 차단 설정 가능	87.5 (7)
	자녀폰 완전 잠금 가능	25.0 (2)
	자녀 사용통계 정보 제공 받음	50.0 (4)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5.0 (2)
	위치 추적 가능	50.0 (4)

부모관리형 앱 중, 모바일펜스는 가장 통제성이 높은 앱이었다. 모바일펜스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차단에 대한 환경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사용 내역에 대한 통계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위치추적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키즈매니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모관

리형 앱들이 부모가 유해 앱이나 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시간 제한 등 환경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아이스마트키피와 스터디타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일방적으로 완전 잠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이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앱 형태별로 그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자기결정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관리형 앱의 경우, 자기결정적 동기를 저해하는 통제성 속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은 전반적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형 중독방지 앱의 경우,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속성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관리형 앱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용시간대와 시간량을 제한하고, 특정 앱 차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 환경 설정에 따라 경고나 상기 알람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조절에 대한 보조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행하고 있는 행동이 왜 중요한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28], 스마트폰 조절 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사용 정도를 다른 일반 이용자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앱도 소수에 불과했다. 자기결정성 동기는 자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행동에 대한 효율성과 유능성을 지각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결정적 동기화는 촉진되며 대상 행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9][10].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자기관리형 앱에 유능성과 관계성 속성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폰과 연동되어 부모가 관리하도록 고안된 앱의 경우, 통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앱들은 불법·유해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하며, 원격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부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지나친 통제이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관리하더라도, 자녀의 자기결정적 조절 동기화를 위해서는 통제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 이용자의 관계성과 유능성 욕구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모관리형 앱에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지지하는 속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부모관리형 앱은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조절을 내재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친 통제성으로 인해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여하는 부모 중재 유형 중, 설명적 중재는 가치 내재화 및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9]. 한편, 부모의 제한적 중재는 자녀의 텔레비전 이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제한적 중재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6][29].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사적 영역의 연장으로 간주함에 따라, 부모가 그들의 사적 영역, 즉 스마트폰 이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30]. 따라서 미디어 이용이 점점 개인화됨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는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가치 및 규범을 내재화하고 자기 결정적 조절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나 부모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중독 방지앱을 통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하고자 하는 시도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중독방지 앱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

하여 효과적인 중독방지 앱의 속성을 도출해냈다. 현재 유해물차단이나 중독방지를 위한 부모관리형 앱들은 정부나 통신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앱들은 지나친 통제성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중재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로 삼은 속성을 참고하여 앱의 기능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의견 및 평가를 통해 그 기능을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앱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독방지 앱은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자녀의 일상을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를 지지하면서 그들의 자율적 조절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을 분류해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중독방지 앱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중독방지 앱의 효과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앱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한 앱의 자기결정적 요소와 이용자들 간의 평가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 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질적 평가와 함께, 중재 앱 이용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이용행위를 조절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현

- [1] 하성보, 강승묵, “스마트폰의 이용행태와 이용환경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 고찰: 미디어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89-99, 2011.
-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5.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 분석: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21

- [3] 김병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208–217, 2013.
- [4] L. S. Clark,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Vol.21, No.4, pp.323–343, 2011.
- [5] P. M. Valkenburg, M. Krcmar, A. L. Peeters, and N. M. Marseille,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43, No.1, pp.52–66, 1999.
- [6] 김형지, 정세훈,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2권, 제1호, pp.87–120, 2015.
- [7] 이창호, 김경희,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08, 2013.
- [8] 고민삼, 이준원, 양수빈, 이의진, “스마트폰 과도 사용 중재 모바일 앱 분석: 중재 방법 관점,” *HCI* pp.747–750, 2014.
- [9] R. M. Ryan and E. L. Deci, “Self –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8–78, 2000.
- [10] E. L. Deci and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No.4, pp.227–268, 2000.
- [11] 김아영,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169–187, 2002.
- [12] 한순미,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1호, pp.329–350, 2004.
- [13] E. L. Deci, R. J.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26, No.3–4, pp.325–346, 1991.
- [14] 김수연, “욕구만족도, 자기결정동기가 청소년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169–189, 2009.
- [15] 조한익, 권혜연,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47–68, 2010.
- [16] 김은영, 성소연, 최명구, “자기결정동기 유형에 따른 부모의 자율성지지 환경,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동기, 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pp.1–27, 2014.
- [17] E. L. Deci and R. M. Ryan,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85.
- [18] C. P. Niemiec and R. M. Rya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Vol.7, No.2, pp.133–144, 2009.
- [19] G. C. Williams, H. Patrick, C. P. Niemiec, R. M. Ryan, E. L. Deci, and H. M. Lavigne, “The smoker’s health project: a self-determination theory intervention to facilitate maintenance of tobacco abstinence,” *Contemporary clinical trials*, Vol.32, No.4, pp.535–543, 2011.
- [20]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Macmillan, 1997.
- [21] S. N. Sweet, M. S. Fortier, S. M. Strachan, C. M. Blanchard, and P. Boulay, “Testing a longitudinal integrated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model for physical activity post-cardiac rehabilitation,” *Health Psychology Research*, Vol.2, No.1, 2014
- [22] W. M. Rodgers, D. Markland, A. M. Selzler, T. C. Murray, and P. M. Wilson, “Distinguishing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Efficacy: An Example From Exercis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Vol.85, No.4, pp.527–539, 2014.

[23] R. Jackson-Kersey and C. Spray, "The effect of perceived psychological need support on a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1356336X15591341, 2015.

[24] R. M. Ryan and E. L. Deci, "Self 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 determination, and will?," J. of personality, Vol.74, No.6, pp.1557–1586, 2006.

[25] J. Reeve and H. Jang, "What teachers say and do to support students' autonomy during a learning activity,"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8, No.1, pp.209–218, 2006.

[26] 최정화, 박동진, 노기영,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른 스마트폰 한국어 금연앱 내용 분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목표내용의 프레이밍을 중심으로," 흡보학 연구, 제17권, 제2호, pp.76–110, 2013.

[27] P. R. Sama, Z. J. Eapen, K. P. Weinfurt, B. R. Shah, and K. A. Schulman, "An evaluation of mobile health application tools," JMIR mHealth and uHealth, Vol.2, No.2, 2014.

[28] J. Reeve, H. Jang, P. Hardré, and M. Omura, "Providing a rationale in an autonomy-supportive way as a strategy to motivate others during an uninteresting activity," Motivation and emotion, Vol.26, No.3, pp.183–207, 2002.

[29] 이숙정, 전소현,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289–322, 2010.

[30] P. M. Valkenburg, J. T. Piotrowski, J. Hermanns, and R. de Leeuw,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9, No.4, pp.445–469, 2013.

저자소개

이숙정(Sook-Jung Lee)

정희원



(박사)

• 1995년 2월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98년 8월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07년 12월 :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오스틴) Radio-TV-Film

• 2008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효과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opennet.or.kr/14032

By 오픈넷

September 12, 2017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시 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배포중인 앱이다.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은 역시 MOIBA에서 개발한 유해정보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보안감사를 통해 해당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심존이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2015년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보안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연구진은 '책임있는 공개(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 따라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해 수정하도록 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연구진은 분석에서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 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OIBA가 청소년 감시 앱 개발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 없는 편이 더 안전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허프포스트코리아 17.09.20.)
- [웹툰 및 권고] 없는 편이 더 안전해!: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 [보도자료]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6.12.26.)
- [논평]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2.2.)
- [논평]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 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2016.8.30.)
- [논평]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2015.11.3.)
- [논평]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2015.9.21.)
-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슬로우뉴스 2015.11.16.)



AHEAD OF WHAT'S POSSIBLE™

X

delightIT.net

뉴스 · 기획·특집 · 블로그 · 클라우드뉴스

로그인 · 회원가입 · 즐겨찾기등록 · 뉴스레터신청

IT언론의 새로운 대안
Da 디지털데일리

Driver IC for Automotive RGB LED

24ch 정전류 LED 드라이버



검색

최신기사 IT정책 통신/방송 e비즈/솔루션 보안 금융IT 콘텐츠 기업문화 산업 국제 피플 칼럼 S리포트 2019.02.22(금)

실시간속보 **Samsung Unveils Next-Generation RF Chipsets for 5G Base Stations at MWC2019**

HOME > 뉴스

방통위 '스마트안심드립' 앱, 이용자 외면 '유명무실'에도 사업은 계속?

2018.10.14 15:38:58 / 최민자 cmj@ddaily.co.kr

관련기사

- [국감2018] NH농협은행, 최근 3년간 착오송금 피해 554억 중 반환금액 240억에 그쳐
- [국감 2018]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 여전히 성행
- [국감2018] 가짜뉴스·역차별·지상파·단통법...방통위 국감, '주마간산'(종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사이버 안심존	부모	20,878	25,085	25,974
	자녀	23,071	27,720	28,702
	계	43,949	52,805	54,676
스마트 안심드림	부모	7,733	8,607	792
	자녀	9,754	10,544	1,103
	계	17,487	19,151	1,895
				151,430
				38,533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스마트안심드립 앱 사업이 좌초를 겪고 있다. 지난해 2000여건에도 미치지 못한 다운로드 수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고, 청소년 사생활침해 논란과 함께 이용자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밀빠진 독에 물(예산) 놋기'라는 지적이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방통위가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사이버언어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 고민단어 검색 때 단어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녀 스마트폰에 이 앱이 설치되면 사이버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자녀고민 의심문자를 탐지한다. 부모 스마트폰에서는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고민의심문자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다. 자녀 스마트폰에서 설치된 이 앱은 부모의 허용이 있어야만 삭제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 간 상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문자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검색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언어폭력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5년 다운로드 수는 부모 7733건·자녀 9754건, 총 1만7487건이었다. 2016년에는 부모 8607건·자녀 1만544건, 총 1만9151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다운로드 수를 보면 부모 792건·자녀 1103건, 총 1895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한 해 200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Da 기획·특집·시리즈

더보기 >

- [갤럭시언팩] 삼성, '갤럭시폴드' 공개...
- [갤럭시언팩] 삼성, '갤럭시폴드.갤럭...'
- [갤럭시언팩] 삼성, '갤럭시S10' 발표...
- [주간 클라우드 동향] 올해 금융권 주요...
- [미리보는MWC①] 간판 바꾼 MWC201...

- [카드뉴스] 기업의 지속가능성 해법은 결국...
- [카드뉴스] B tv 서라운드, 거실을 영화관으로...
- [이지크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에스크로

Da English News

더보기 >

- Samsung's Galaxy S10+ Camera Takes F...
- Samsung Unveils Next-Generation RF Chip...
- Next Generation Connectivity: Samsung...
- Samsung Raises the Bar with Galaxy S10...
- Samsung Unfolds the Future with a Whole...



삼성반도체 이야기 blog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



Da 많이 본 기사

- [갤럭시언팩] 삼성, '갤럭시폴드.갤럭시...'
- [주간 클라우드 동향] 올해 금융권 주요...
- 산업부, 2000억원 투입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 삼성SDS, 금융·공공 IT시장 사실상 복귀...한...
- 적과의 동침?... 쏘카, 타다 플랫폼에 택시 호출...
- SK텔레콤, SKB-티브로드 합병 추진
- [갤럭시언팩] 삼성, 웨어러블도 1등...갤...
- CJ헬로 매각, 결국 케이블 업계 퇴출로 이어지...
- [2019 Cloud Impact ⑦] 올해 추진되...
- 쿠팡, 현금 미리 충전하면 연 5% 수익률 혜택...



동영상

포토뉴스



갤럭시S10→5G 단말 환승 프로그램 내놓은 K...



그러나, 시장은 시장에 시장은 배우자에게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보안 취약점까지 발견된 바 있다. 현재는 발견된 보안취약점을 수정한 상태다.

방통위는 “청소년과 자녀가 받는 폭력 문자나 정보 검색을 통한 자살 암시를 부모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며 “청소년 사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만큼 실적을 못 내고 있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취약점 및 시스템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고 웹 검증도 한다”며 “꾸준히 문제되는 경우 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적받은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그 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놓은 앱들은 상당수 도마 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2013년부터 약 30억원 예산을 투입해 MOIBA에서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7월 말 기준 총 38만7524건 이용을 기록했으나, 청소년 정보 유출 우려로 곤혹을 겪었다.

당시 캐나다 시티즌랩은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보안관이 26건 보안취약점이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를 비롯해 데이터 변조, 계정 무력화 발생을 지적했다. 또,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장·전송하고, 암호화 표준도 준수하지 않아 보안등급은 최하위인 F등급일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스마트보안관 앱은 2015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사실상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앱으로 스마트보안관을 대체 운영하고 있었다.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사이버안심존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과 코드가 같은 앱이라며 보안문제를 주장했다. 방통위는 보안성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안심드림과 사이버안심존이 포함된 클링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총 약 11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 때 자동으로 잠금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예산은 9억6000만원이었다. 사이버안심 존 다운로드 수는 ▲2015년 4만3949건 ▲2016년 5만2805건 ▲2017년 5만4676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은 초등학생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청소년 안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사업”이라며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며, 범정부적인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사업의 기술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Beta

네이버 메인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볼 수 있어요!

트윗
좋아요 1개
공유하기
Share
 공유하기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 인쇄

사람을 향한

PEOPLE TECHNOLOGY kt



Da 오늘의 Cloud

- [2019 클라우드 임팩트] 클라우드 전환시 기...
- [2019 클라우드 임팩트] 금융 클라우드 도입...
- [2019 클라우드 임팩트] 멀티 클라우드 성공...
- 네이버 클라우드, 인텔과 클라우드 AI-HPC 시...
- [2019 클라우드 임팩트] 폭발적 관심...올해...
- 네이버, SKT 해외로밍서비스에 클라우드 공...
- [2019 Cloud Impact ⑦] 올해 추진되...
- 이노그리드, 농진청-농연구원에 클라우드 공...
- [주간 클라우드 동향] 올해 금융권 주요 클라...
- IBM AI '왓슨', 모든 클라우드에서 구동...시...



Da PEOPLE NEWS

더보기 >



[갤럭시언팩]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 "5G, 4차산업 방아쇠..."

Da COLUMN/취재수첩

더보기 >



[취재수첩] 유료방송 M&A 열풍... 통신사·정부 역할 중요



Da PLAY IT

더보기 >

- 한국형 '오사카 주유패스'?...야놀자 투어패...
- [PLAY IT] 유튜버 위한 초소형 짐벌 카메...
- [PLAY IT] 가볍고 사진 잘 나오는 LG폰.....
- [PLAY IT] LG이노텍 핸드레일 UV LED...
- [PLAY IT] '복고'와 '편의', 두 마리...



회원가입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채용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Da 디지털데일리

상호 : (주)디지털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아00039 *등록년월일 : 2005년 09월 06일 제호: 디지털데일리 *대표자 : 양경진 *편집인 : 최승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901호 대표전화 : 02-6670-4500 Fax : 02-6670-4514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13419 *발행일자 : 일간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기록 (webmaster@ddaily.co.kr)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

황 성 기^{**}

<국문초록>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연령 및 본인확인, 광고규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아동포르노, 청소년보호책임자

I. 들어가는 말

스마트폰 및 스마트TV로 상징되는 스마트 미디어¹⁾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가 유통되는 채널이나 방법, 수단 등이 기존의 유선인터넷 시대보다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유통방법 등의 다양성에 상응하게 콘텐츠 규제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콘텐츠 규제의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개인의 인격권(명예권) 보호, 저작권 보호,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이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는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일정한 매체가 등장하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가 유통되며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한 항상 존재해 왔던 이슈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리

* 이 글은 2013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이 글에 대해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던 토론자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스마트 미디어란 “소통의 도구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응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똑똑한 매체(네트워크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김정훈·김승윤, “영상 컨텐츠 2.0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 - 미디어 이용행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IT전략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2, 1면.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전달매체’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는 지면이나 TV와 같은 고정형 디스플레이였으나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TV 등의 스마트 기기이다. 둘째, ‘전달방향성’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는 단방향이었고, 콘텐츠 제공자에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인 반면 스마트 미디어는 양방향성을 가지며 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간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 및 정보를 주고 받는다. 셋째, ‘시간의존성’ 측면에서 기존 미디어는 1회성이며 시간의 제약성이 있는 반면 스마트 미디어는 원하는 시간에 항상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공간의존성’ 측면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 공간 제약성이 있었으나 스마트 미디어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 상 제약성이 없으며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어디에든 존재 가능한 특징이 있다. 다섯째, ‘표현성’의 측면에서 스마트 미디어는 동영상에 상호작용, 실감 등이 더해지는 진보된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가진다. 윤장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발전 방향”, 「방송공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방송공학회, 2013. 1, 49-50면.

고 더 나아가서 최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청소년 보호 이슈는 특히 인터넷과 게임 관련 산업영역에서 ‘과도한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을 전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II)을 검토한 뒤에, 현재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는 몇 가지 청소년 보호 관련 콘텐츠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함(III)으로써, 과연 현재의 청소년 보호 관련 콘텐츠 규제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콘텐츠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판단척도이기 때문이다.

1.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는 불법정보 내지 불법표현물로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불법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인의 접근 및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콘텐츠는 ‘금지의 대상’이다. 반면에 청소년유해콘텐츠(harmful content)는 청소년유해정보 내지 청소년유해표현물로서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42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2013

성인의 접근 및 이용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관리의 대상’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협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절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된다.²⁾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규제가 분리되지 않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 및 유해 구분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명제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면,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2005년도에 발생했던 ‘VOD사건’이다. 당시 국내의 주요 포털이 제공한 18세 관람가 성인용 VOD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이 VOD 제작자와 이들 VOD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VOD 제작자에 대해 제1심 법원³⁾과 항소심법원⁴⁾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내세웠던 주된 논리 중의 하나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음란성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법콘텐츠인 음란물의 기준이 청소년의 접근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에서는 강화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

2)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291-292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2005고단15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 5. 16. 2006노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과 법원은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결과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결국 성인인증절차 등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방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을 제쳐두고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음란성 판단기준을 강화시켜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청소년의 알권리의 수준으로 낮추게 되어 헌법상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⁵⁾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이 불법콘텐츠 규제의 ‘효과’를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이 불법콘텐츠 규제의 효과를 유발하게 되면, 결국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갖는 헌법적 의미가 몰각되고 성인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래에서 분석할 예정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예정하고 있는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은 원래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그런데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이 너무 강력하게 되면 성인들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 사실상 불법콘텐츠 규제로서의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헌법적으로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 한편 이 부분은 아래에서

5)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2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428면.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이러한 논리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6)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가 강력한 국가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가능하고 있는 결과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성표현물 자체의 입지를 줄여나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재웅·배정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청소년 보호”,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108면.



살펴 볼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와도 관련이 있다.

2.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위와 같이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구분(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을 전제로 할 때,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인의 접근은 허용해야 하는 것이 논리필연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와 관련하여 사실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은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통제수단 내지 통제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차별적 접근통제수단 내지 방법들⁷⁾이 개발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수단 내지 방법들에 대한 평가척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평가척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청소년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원리라는 점이다.⁸⁾ 즉 청

7) 대표적인 경우가 정보통신망법이 2001년 전문개정되면서 도입되었던 것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인터넷콘텐츠에 대해 ‘19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시 등 콘텐츠를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현재 2004. 1. 29.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8)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음란·저속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적이 있다.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성표현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등을 규제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저속한 표현을 규제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은 청소년에게 한정되어야 하고, 규제수단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되는 저속한 표현물에 대해 등급표시를 하거나, 판매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나아가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



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당해 접근통제방법이 청소년의 접근통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되지만, 또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이유로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⁹⁾ 후술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문제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분석되고 평가 될 필요가 있다.

3.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의 존중(가족의 자율성 명제)

자연법상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제1차적인 권리·의무는 부모에게 존재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자연권이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다.¹⁰⁾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구도는 ‘청소년, 부모, 국가 간의 3면 관계’로 형성된다. 이들 세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리이다. 청소년도 엄연히 기본권 내지 인권의 주체로서 일정한 매체물에 대한 접근권을 향유한다. 다만 청소년의 미성숙성을 이유로 일정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접근·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될

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1998. 4. 30. 95헌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 제청)(밀줄 필자 강조).

9) 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85-87면.

10) 현재 2000. 4. 27. 98헌가16등(병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현재 2009. 10. 29. 2008헌마63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현재 2009. 10. 29. 2008헌마45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이다.

둘째, 부모의 교육권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제1차적인 권리·의무는 부모에게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의 접근·이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제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바로 이러한 부모의 교육권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관계의 형성(가족의 자율성: family autonomy)을 국가가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¹¹⁾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부모의 교육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이익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의 이익은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며, 행동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 판단력이 성인의 경우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다.¹²⁾ 물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

11)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47면.

12) 우리 현법재판소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 등이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임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현재 1995. 4. 20. 92헌마264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현재 1996. 2. 29. 94헌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등 위헌확인(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현재 1996. 2. 29. 94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1997. 3. 27. 94헌마196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안에서는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1999. 9. 16. 96헌마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 라. 마. 위헌확인(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2001. 1. 18. 99헌마5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술을 판매하여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숙하다”라는 시각이 부모의 과도한 보호주의 내지 국가의 과도한 후견주의에 기초한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시각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 부모, 국가 간의 3면 관계’라는 개념은 이들 세 가지 관련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3면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족의 자율성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가족의 자율성 명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인터넷게임 셧다운법이다.

한편 가족의 자율성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할 등급분류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등급분류시스템은 ‘매체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그 매체물의 이용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 고지(notice)를 해주는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등급분류는 부모가 자녀의 매체물 이용에 대한 통제권(parenting control)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4.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등급 분류시스템이고, 이러한 등급분류시스템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이다. 예컨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분류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이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 보호」이다.¹³⁾

연령을 19세미만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따라서 등급분류시스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공적 규제를 하면 모르되, 이미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국가에 의한 규제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이미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등급분류시스템을 혼란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

5. 청소년 보호와 기타 혁법적 가치와의 조화(규범조화 명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콘텐츠, 즉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청소년 및 성인의 일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는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권(알권리)을 제한함¹⁴⁾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콘텐츠를

13) 이러한 등급분류시스템은 우리 현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2007. 10. 4. 2004헌바36,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의사 표현물의 공개 내지 유통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발표나 유통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디오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고자 공개나 유통에 앞서 이용연령을 분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비디오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등급부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용 연령 제한으로 인해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이용가능한 연령이 되면,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검열과 다르다.”(밀줄 필자 강조)

14) 김혜경, “청소년유해성의 새로운 정의기준과 법적 정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둘째, 영업의 자유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부분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첫째, 청소년유해콘텐츠의 판단기준에서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판단기준이 보수적일수록, 성인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는 그대로이면서,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수 없는 콘텐츠의 양과 범위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포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가 국가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콘텐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국가의 청소년유해콘텐츠 평가기준은 현실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¹⁵⁾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통제방법에서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682-683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특히 능동적 차원에서 성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주승희,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6, 54-59면.

15) 대표적인 경우가 만화가 이현세의 작품 「천국의 신화 소년용」의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이다. 「천국의 신화 소년용」은 지금은 폐지된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서울지법 2000. 7. 18. 선고 98고단5625 판결),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불량만화)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법재판소는 이러한 불량만화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다(현재 2002. 2. 28.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츠에 대한 접근통제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이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연령 및 본인확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한 연령 및 본인확인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온라인이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통한 연령 및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이 동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에서 적용되는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온라인에서의 연령 및 본인확인수단이 당해 청소년 유해콘텐츠를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인증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규범조화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이러한 규범조화 명제에 따라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후술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상의 아동·청소년연상 음란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문제이다.

6. 자율규제의 확대(자율규제 확대 명제)

일반적으로 매체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방식인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tion)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그 정당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 왔다.¹⁶⁾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율규제(self-regulation)이다. 자율규제가 갖는 장점으로는 효율성, 융통성의 증가, 규범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의 증가, 비용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¹⁷⁾

16) 국내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게임물들은 우리나라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애플이 한국에서 제공되는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해 버린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17)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

이와 같은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하기 어려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보다 사업자와 이용자에 의한 자율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자율규제는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조화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를 ‘자율규제 확대 명제’라 부를 수 있겠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인 자율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즉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등급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중의 하나로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¹⁹⁾으로 정하는 것(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이러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동 법 제21조 제9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35頁.

¹⁸⁾ 주정민,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한국방송학회,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24면.

19)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률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혜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
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

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향).

이와 같은 자율규제 확대 명제라는 관점에서 분석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 바로 후술할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이다.

III. 청소년 보호 관리 협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

1. 청소년의 역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

2011. 9. 15에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²⁰⁾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에는 연령확인의무만 부과하던 것을 연령확인과 함께 본인확인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20)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법」(이하 「방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문리해석상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총 6가지의 수단 혹은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이다(제1호). 이 수단들은 오프라인에서 활용되는 전형적인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서명법」(이하 ‘전자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이다(제2호). 그런데 공인인증서에는 주지하다시피 인터넷뱅킹 용과 범용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과 관련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으로서 유의미한 것은 ‘범용 공인인증서’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다(제3호). 이것은 ‘i-pi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제4호).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섯째,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다(제5호). 이것은 신용카드 개설시 개인에 관한 신원정보를 수집한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다.

여섯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다(제6호).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제2문은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부여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예컨대 인증창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상호명을 입력 및 선택을 하면 인증번호를 당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휴대전화 소지자가 전송된 인증번호를 다시 인증창에 입력함으로써 확인하는 방식이다.

(2)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문제점

1) 연령확인 이외 본인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연령확인 이외에 본인확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연령확인 이외에 본인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령확인(age verification system)과 본인확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령확인이란 말 그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연령(나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본인확인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A라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의 차이를 염두에 둘 때, 청소년보호법 제16조가 연령확인 이외 본인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기본취지에 벗어난다는 점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의 기본취지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연령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집단은 일반인 중에서 일정한 부류의 집단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러한 집단을 선별해 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중의 하나가 ‘연령’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기본취지는 일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연령확인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연령확인에 그쳐야 한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시 연령확인만 하지 본인확인까지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은 연령확인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에서 본인확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된다. 예컨대 부동산거래의 경우처럼 일정한 상거래에 있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부동산등기를 위해서이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이들 서류들이 본인확인기능도 수행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 및 공시주의에 따른 등기제도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련 소유권 질서의 유지’, ‘부동산 소유 현황의 확정’,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콘텐츠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둘째, ‘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에 반한다는 점이다. 연령확인 이외에 본인확인까지 요구하고, 또한 본인확인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워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기회를 사실상 제약하게 되면, 성인들은 청소년 유해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불법콘텐츠 규제로서의 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헌법적으로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에 반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통제방법이 청소년의 접근통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되지만, 또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이유로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전자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후자를 잊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연령확인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적용되어 왔던 차별적 접근통제방법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령확인을 넘어서서 본인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이유로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될 위험성이 높게 된다.

2)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의 적용가능성 및 실효성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 중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유통에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은 범용 공인인증서, i-pin,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 다섯 가지이다. 왜냐하면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은 오프라인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이지 온라인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위 다섯 가지 수단들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섯 가지 수단들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가라는 측면이다. 그런데 이들 다섯 가지 수단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차원에서 그 커버리지(coverage)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커버리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성인의 접근 및 이용을 사실상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범용 공인인증서와 i-pin의 보급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에, 범용 공인인증서나 i-pin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성인들의 콘텐츠이용을 억제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한다. 비록 신용카드의 보급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성인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콘텐츠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에서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문제점이 존재한다.²¹⁾ 그런데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

2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12. 28에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2.8.18.)되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인증수단(휴대전화)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 11. 현재, 민간 아이핀 496만건, 범용 공인인증서 319만건, 휴대전화 5,345만대로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가능 -”



다. 그것은 바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 점유 인증’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방식은 인증창을 통해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사람이 실제로 현재 당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의 상당 부분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위 다섯 가지 수단들이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실효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 시점, 인증비용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 시점’은 결국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의 횟수’와 연동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증비용’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ID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이용자의 경우와 ID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를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ID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이용자의 경우, 현재 여성가족부는 2012. 12. 14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회원가입 시 연령 및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ID를 생성해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연령 및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부·모,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연령 및 본인여부를 확

2012. 12. 28자 보도자료.

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및 입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오프라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온라인의 경우에 차별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프라인에서 성인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가게에 입장할 때 이미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을 통하여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치자. 위의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입장할 때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후 그 가게 안에서 판매되는 성인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마다 또다시 별도의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별도의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시 연령 및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ID를 생성했고, 이후 ID 로그인을 한 회원 이용자에 대해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매번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령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매번 별도의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이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는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인증비용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증비용²²⁾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는 분명히 의사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효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매번 별도의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규범조화 명제’에 반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매번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및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에 반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카페의 경우 카페지기나 카페회원이 카페에 접속할 때마다 매번 연령확인

22) 이전에는 임증비용이 회당 30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및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스트리밍방식의 음원의 경우 자기가 이미 구입한 음원을 매번 이용할 때마다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웹툰의 경우 업데이트할 때마다 또 매번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시마다’ 매번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요구함으로써, 성인들이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게 되거나 자제하게 되어 사실상 불법콘텐츠 규제로서의 효과를 유발하게 되고,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이유로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음으로 ID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비회원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까지 과도하게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인증비용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사업자는 영업정책상 더 이상 비회원이 ID 로그인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사업자의 측면에서, 콘텐츠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사업자가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콘텐츠를 회원에게만 제공하느냐 비회원에게도 제공하느냐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유는 인터넷사업자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이기도 하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콘텐츠 이용자의 측면에서,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비회원 이용자의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서, 콘텐츠 이용권 내지 콘텐츠 접근권의 침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검색서비스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결국 회원 이용자이건 비회원 이용자이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마다’ 매번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이 ‘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및 ‘규범조화 명제’에 반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16조가 연령확인 이외에 본인확인까지 요구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가능성 및 실효성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통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설령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통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2012. 2. 17 개정되고 2012. 8. 18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예외 중의 하나로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통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별도의 장치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주민등록법상의 규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제시하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들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즉 공인인증서, 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도 도용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성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예정하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들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사전등급분류가 적용되는 매체물에 대한 적용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가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의무가 부과되는 매체물의 범위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와 비디오물은 영비법에 따라, 그리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전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영화,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등급분류도 기본적으로 연령등급제를 전제로 한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으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18세 미만) 관람불가가 존재한다(영비법 제29조 제2항 및 제50조 제3항). 그리고 게임물의 등급으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18세 미만) 이용불가가 존재한다(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도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전등급분류가 적용되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²³⁾

23) 우리나라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보국인 독일에서도 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연령 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를 통해서 2원적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이 양 제도는 서로 존중하며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정환,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경희대 법학연구 소 2009. 9. 88면.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존재한다. 만약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서 청소년 관람불가 혹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비디오물 혹은 게임물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문제’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²⁴⁾

6) 개선방향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연령확인 이외에 본인확인까지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들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콘텐츠 유통 자체가 위축되고 관련 콘텐츠 시장이 고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결국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본인확인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즉 연령확인만 그치고 본인확인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확인에만 그치도록 한다면, 연령확인방법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령확인 이외의 수단들은 불필요하게 된다.

둘째, 만약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연령확인의 실효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현재 규정하고 있는 수단들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령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령확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주민등록번

24) 또한 전형적인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복규제의 문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기존의 연령등급제와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기탁, ‘스마트 콘텐츠의 중복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2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1, 84-87면.

호의 확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령확인은, 인터넷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는 않되, 다만 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령확인만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매칭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서 ‘본인확인업무’를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부분을 예컨대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 및 본인확인 업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주민등록번호만을 활용한 연령확인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이용자나 사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령확인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 중에서 현재 온라인에서 연령확인 및 본인확인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밖에 없다. 왜냐하면 범용 공인인증서와 i-pin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고, 또한 국가가 특정한 기술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기술중립성에 반한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용자나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령확인방법의 선택지를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령확인방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로 이용자나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령확인방법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의 일환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연령확인의 경우에는 연령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서 적용되는 연령확인은 ‘의무’의 형태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의 당사자들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국가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위축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니면 본인확인기관의 확대를 통해 연령확인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인증비용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기조에 역행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가가 연령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본인확인기관의 확대를 통한 인증비용의 하락유도정책도 불가능하다면, ‘인증비용 상한제’를 통해서 인증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연령확인의 시점 및 횟수와 관련하여, ID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이용자의 경우, 이미 회원가입 당시 연령확인을 거쳤다고 한다면, ID 로그인을 해서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연령확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ID 로그인 자체가 유의미한 연령확인절차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ID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연령확인의 시점 및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비회원 이용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연령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비회원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내지 이용권을 제약할 위험성과 인터넷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연령확인의 시점 및 횟수의 문제는 인증비용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인증비용의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 버린다고 한다면, 인증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연령확인의 시점 및 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2.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내용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라는 제 하에,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3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3호).

(2)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이 담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비록 광고의 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광고 자체가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규제방식은, 예컨대 18세 관람가 영화인 ‘친절한 금자씨’에 관한 포스터도 그 포스터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유해한가에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전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광고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1항은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한 광고선전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비법 제32조도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을 혼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계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고(제1항), 원칙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만 배포·계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제2항).²⁵⁾

우리나라는 일정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판정주체를 행정기관으로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²⁶⁾ 그리고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영비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상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이전, 혹은 18세 등급으로 판정받기 이전에는 당해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연령등급제의 기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이 담고 있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이유로 청소년과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서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에도 반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3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 법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5) 영비법 제32조 제2항 단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단서 조항도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와 동일한 문제점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이러한 행정기관으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 우리 현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2000. 6. 29. 99헌가16,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 제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라는 이유로 삭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는 불법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이 담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는 ‘불법 및 유해 구분 명제’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²⁷⁾

셋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이 담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령확인 및 본인 확인의 문제점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것이다.

(3) 개선방향

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그것을 청소년유해콘텐츠로 간주해서 법적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이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방식은 청소년과 성인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자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고 고시된 경우에만 규제될 수 있도록 법이 개

27) 설령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의 규제가 당해 광고정보에 대한 성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육소영,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쟁점 - 표현자유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165-166면.

정되어야 한다.

3.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1)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내용

2011. 5. 19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9조 제5호에서 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2011. 11. 20.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형사벌을 통하여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래 셧다운제를 도입할 당시 PC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및 콘솔기기 게임은 2년간 유예되었고,²⁸⁾ 2013. 2. 20 여성가족부 고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제2013-9호)에 의해서 2015. 5. 19까지 다시 그 적용이 유예되었다.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이외에 또 다른 유형의 셧다운제도 존재한다. 예컨대 2011. 7. 21 신설된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은 인터넷게임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조치의 내용 중의 하나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28)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10659호, 2011. 5. 1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제3호)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진흥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이라는 점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2013. 1. 8 손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263)(이하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이라 한다) 제23조는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셧다운제를 통한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셧다운의 시간대에 있어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시 제재수단에 있어서는 형사벌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동 법안 제24조 제9호).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의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률안도 국회에 제안되었다. 예컨대 2013. 2. 4 전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87)은 게임산업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모바일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 등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6조 제4항 신설).

(2)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으로서의 ‘게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알 권리 내지 정보접근

권을 침해하고, 게임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의 침해하고, 평등원칙 및 문화국가의 원리에도 반한다.²⁹⁾ 무엇보다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녀가 게임을 어느 정도 혹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에 관한 통제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가족의 자율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문제’에도 반한다. 강제적 셧다운 제가 적용되는 인터넷게임은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 그 자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등급분류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시간대 제한방식을 ‘중첩적’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첩적인 규제는 기존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³⁰⁾

29) 자세한 것은 횡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현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립법학FORUM」 제16권, 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43-153면; 한국법학회,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 그 규범평가 및 입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2011. 3, 31-45면;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129-136면 참조. 그 외 강제적 셧다운제는 일반적·절대적 금지로서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 목적이 아닌 후견 목적을 위한 기본권제한으로서는 지나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호경, 송시강,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11, 20-21면. 반면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을 감안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하고도 합리적 제한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23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2. 2, 19-24면 참조.

30)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서비스하지 않고, 15세 이용가 등급에 해당할 것 같은 게임물은 오히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연령을 상향하여 제작 및 서비스하는 것이 강제적 셧다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게임시장에서 향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 15세 이용가라는 연령등급은 사실상 연령등급제에서 의미있는 연령등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셋째,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적합하지 못하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목적인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 혹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한번 근본적으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될까? 왜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을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원인이 게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게임중독은 보다 근본적인 정신질환 내지 개인문제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은 과도한 사교육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³¹⁾은 제쳐두고, 기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본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규제 수단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들은 손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상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셧다운제를 통한 보호대상 범위 및 시간대를 혈행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보다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문제점은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많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법적 의무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과도한 간섭 내지 개입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는다.³²⁾

상동한다. 김민규, “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한국게임학회, 2012. 4, 72면.

31) 게임 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해설로는 전종수, 「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참조.

32)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황승흠·안경봉 편,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11, 203면.



(3) 개선방향

위와 같은 위헌성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세련되고 문제점이 덜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적 의무화’ 방식을 통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 내지 게임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족의 자율성 문제’ 및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문제’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용자-사업자-국가 간의 합리적인 기능 및 권한분배’라는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첫째, 셧다운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시장의 논리에 맡김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셧다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임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문화와 시장메커니즘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매체물 이용에 대한 통제권(parenting control)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 즉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도 우선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맡겨 그 제공 여부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도에 한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국가가 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러한 시스템은 바로 ‘부모에 대한 통지의무’의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게임에 셧다운시스템이 채택되어 있는지 여부 및 채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부모에 대해서 통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약한

³³⁾ 황성기, 위의 글, 204면.

정도의 행정질서별(과태료) 부과의 제재가 적절하다. ‘부모에 대한 통지의무’의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정 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면서도, 부모의 통제권 행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처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시스템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개념 정의이다. 즉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는바, 소위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도 포함시키고 있다.³⁴⁾ 그런데 이러한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34) 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494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 공전자기록등 불설기재 · 불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 저작권법 위반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둘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포함시켜서 기존의 child pornography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 및 발견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다(아동법 제17조 제1항).³⁵⁾ 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료판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35) 2013. 6. 19부터 시행예정인 아동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

⑤ 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위의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이전에는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아청법 제17조 제2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이루어진 전부개정을 통해서 신설되었다. 한편 기존의 아청법 제8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아청법 시행령 제1조의3을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청법 시행령 제1조의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전을 위한 조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응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

런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의미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를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작 자체도 금지되는 불법콘텐츠로서, 그에 대한 규제는 현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콘텐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반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보호법익이 다르다. 즉 일반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풍속의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보호법익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시스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선 현행 아청법이 채택하고 있는 용어인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여기서 ‘음란물’과 ‘포르노(그라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음란물이라는 개념은 가치평가를 전제로 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하지만 포르노(그라피)라는 개념은 記述的·中立的 개념이다. 사실 아동포르노를 규제하

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6) 예컨대 단순히 청소년 유해성의 차원을 넘어 ‘음란’한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수·김정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6. 15면.

는 목적이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속한 정도에 그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출연해서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아동포르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실제로 현행 아동법 제2조 제5호의 개념정의는,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가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정의에서 채택했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는 문구 대신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성표현물’로까지 외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도 ‘아동·청소년이용성표현물’이라고 하는 기술적·중립적 용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도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關する法律)」이 1999년 5월 26일 제정되어 아동포르노의 제작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兒童ポルノ’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³⁸⁾

37) 아동포르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킬 것, 진지한 문학적·예술적·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을 것, 아동이 포르노 제작과정에서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것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묘사한다면 충분하다는 입장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따른 것이다. 김용화,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0, 404면.

38) 동 법에 의하면 ‘아동포르노’란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의 물건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세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2.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동법 제2조 제3항).

그리고 이러한 아동포르노를 반포·판매하거나 공연히 진열한 경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2)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에 규제의 문제점

위와 같이 아동포르노 규제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실사 영상물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묘사하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 포함시켜, 일반 음란물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한다.³⁹⁾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가장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표현들도 ‘입법정책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섭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과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라는 보호법익은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에는 아동 내지 청소년이 실제로 출연하거나 등장하지 않아서, 아동 내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9) 실제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애니메이션이나 그림과 같이 가장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들 수 있고, 둘째, 외양은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인 사람을 출연시켜서 이용자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물을 들 수 있다.

40) 현재 2002. 4. 25. 2001헌가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정: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을 이 사건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장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 여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밑줄 필자 강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당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정의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펠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당시에는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실사 영상물만을 의미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보호’라는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포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상의 아동 내지 청소년이 등장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규범조화 명제’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는 서로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1996년에 제정된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일명 CPPA)가 기존의 아동포르노의 개념정의를 수정하면서, 아동포르노는 실제의(real) 청소년이 성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실제로(actually)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appears to be) 것 내지 성행위에 관여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conveys the impression) 것조차도 포함시켰다.⁴¹⁾ 그런데 이와 같은 아동포르노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컴퓨터와 그래픽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제로는 성인의 성행위를 묘사한 경우이지만 청소년과 같이 보이게끔 이미지를 ‘변형(morphed)’시킨 경우라든지 혹은 사람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단지 컴퓨

41)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U.S.C. §2256(8):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sexually explicit conduct, where -
- (A) the production of such visual depiction involves the us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 (B) such visual depiction is, or appears to b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 (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is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or
 - (D) such visual depiction is advertised, promoted, presented, described, or distributed in such a manner that conveys the impression that the material is or contains a visual depiction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터로 조작한 이미지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아동의 성행위에 관한 것임을
아동포르노로 간주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현법소송이 진행되
었다. 즉 1997년 7월 성인물의 제작·배포업을 행하는 사업자들의 이익단
체인 ‘자유언론연합’(the Free Speech Coalition)이라는 단체는 문제되는
조항들인 18 U.S.C. §§2256(8)(B)와 2256(8)(D)가 애매모호해서 위헌이라
는 주장을 하면서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Northern California 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자유언론연
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17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북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판결을 폐기하면서, 1996년에 제정된 CPPA의 위
조항들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⁴²⁾ 더 나아가서 연방대법원도 2002년 4월 16일 이들 두 조항
이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⁴³⁾

하지만 독일은 미국과는 상반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⁴⁾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를 2003. 4. 1부터 시행된 「방송과 전기통신미디어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주간협약」(Staatsvertrag der Länder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⁴⁵⁾에서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자연스러운 성적 자세로 묘사하는 것”⁴⁶⁾을 그리고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포르노그래피이면서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혹은 동물과 인간과의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⁴⁷⁾을 금지되는 정보에

⁴²⁾ Free Speech v. Reno, No. 97-16536(1999).

⁴³⁾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2002).

44) 가상아동포르노에 관한 해외 입법례 및 사례에 관한 소개로는 이향선,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사회에 대한 합의」, 『한국방송학보』 제27권 제2호, 한국방송학회, 2013. 3, 241-256면 참조.

45)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으로 약정하기도 한다.

⁴⁶⁾ „Kinder oder Jugendliche in unnatürlich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darstellen; dies gilt auch bei virtuellen Darstellungen“.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보 모두 ‘가상적인 묘사(virtuelle Darstellungen)’도 그 포섭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의무 부과의 문제점

현행 아청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 및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 등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입법정책적으로 ‘효율적’일지는 몰라도⁴⁸⁾, 현행 아청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의무 부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청법 제2조 제8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 아청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아청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곧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7) “pornografisch sind und Gewalttätigkeiten, d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oder Jugendlichen oder sexuelle Handlungen von Menschen mit Tieren zum Gegenstand haben; dies gilt auch bei virtuellen Darstellungen”.

48) 권현영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가장 편의적 입법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규제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수많은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1차적 당사자의 저항을 줄이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표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는 표현행위에 대한 공적 규제 여부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사적 규제를 법제화함으로써 헌법적 논란에서 우회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권현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85-86면.



일반적으로 유선인터넷 및 모바일, 정보통신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주체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 : CP),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 : ICH)⁴⁹⁾,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⁵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⁵¹⁾ 따라서 불법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이러한 분류에 상응하여야 하는데, 아청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털이나 검색엔진과 같은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상시적이고도 일반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히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상시적이고도 일반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철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나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리나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상시적이고도 일반적인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⁵²⁾

셋째,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법률 자체에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49)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 부를 수 있다.

50)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 부를 수 있다.

51) 황승호·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10-211면 참조.

52)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182-183면.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 및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이 ‘행위의 당별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점이 있다. 즉 이러한 의무위반행위가 과연 형사벌로 규율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냐의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화보수단으로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는 결국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⁵³⁾

다섯째, 현행 아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 및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별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방식 및 예외 요건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및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넓힐 위험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특히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인지가능성’ 및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인

53) 현재 1995. 3. 23. 92헌가14,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 현재 2012. 12. 27. 2011헌바354,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지가능성' 및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의 '동시 충족'이라는 요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4) 개선방향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이전의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처럼 아동 내지 청소년이 실제로 출연하거나 등장하여 당해 아동 내지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만 포섭시키도록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⁵⁴⁾ 물론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아동포르노에 대한 ‘수요통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에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죄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연상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포섭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만이라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로 좁힐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⁵⁵⁾만을 적

54) 아동·청소년이 음용관물의 정의는 개정하지 않되,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지 아니하는 영상물로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도록 연기를 하거나 애니메이션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 이러한 영상물과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경한 법정형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다. 임정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 28면.

55)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다.



84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2013

용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동법 제17조 제2항이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만 부과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의무’라도 삭제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되,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직접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재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삭제·전송방지·전송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의 부작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지가능성’ 및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그러하다.”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5.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내용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⁵⁶⁾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동조 제2항).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내부’에서 청소년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로 상충되는 이익들의 종류, 상호 충돌 양태 및 구도는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보호 v. 자율규제’라고 하는 구도이다. 사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율규제도 인터넷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독일 청소년매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제7조상의 청소년보호담당자

5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Jugendschutzbeauftragte) 제도이고⁵⁷⁾, 또한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를 수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이 채택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독일의 청소년 보호담당자제도를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원래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시한 채 외형만 따왔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과 한계를 갖고 있다.⁵⁸⁾

첫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기본취지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할 논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는 모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3 제2항은 청소년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즉 현재처럼 해당 사업자의 임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57)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에 관한 소개로는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0, 752-754면; 이부하, “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 - 독일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2012. 3, 108-109면 참조.

58)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2010. 8. 159-161면.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여 과연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의 영업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지정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하의 전기통신미디어제공자가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구가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⁹⁾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자율규제 확대 명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개선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⁶⁰⁾

첫째,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유통은 시장의 논리상 대규모사업자 영역보다는 중소규모사업자 영역에서 그 유인이 크므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⁵⁹⁾ 이것은 실제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아웃소싱이 가능한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로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FSM)’이 구성되었다.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88면. 그리고 중소규모의 사업단위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청소년보호의무의 제시라는 점에서 현실을 고려한 규제제도 운용방법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강진숙,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 청소년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0. 10, 380면.

⁶⁰⁾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위의 보고서, 161-162면.



둘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전문가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되, 지정된 자를 해당 사업자의 임원급으로 ‘대우’함으로써,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를 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확대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일정한 능력과 요건 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를 승인하고, 승인된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자율규제기구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V. 나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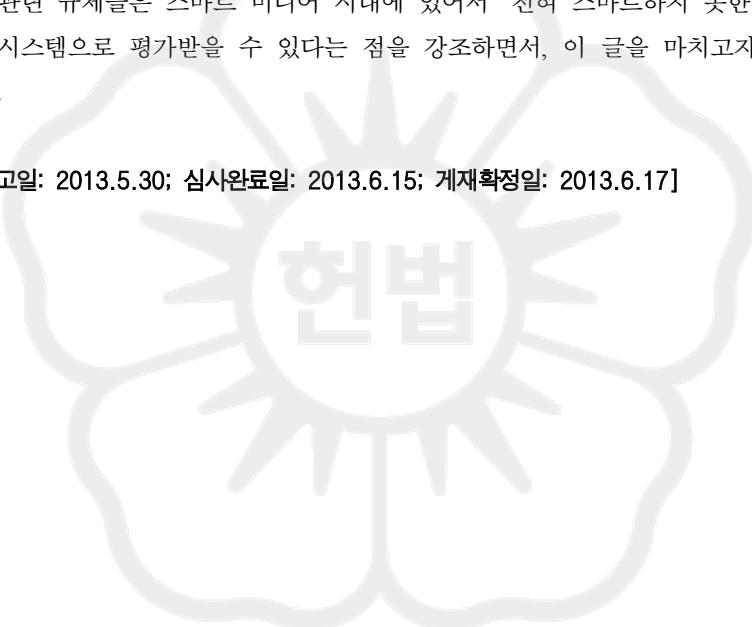
이상에서 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로서 ‘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가족의 자율성 명제’, ‘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규범조화 명제’, ‘자율규제 확대 명제’ 등 6가지 명제를 도출한 뒤에, 이들 명제에 기반하여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터넷 및 게임관련 규제 5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6가지 명제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스마트 미디어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현재의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기존의 인터넷 환경의 경우보다 정보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와 같은 6가지 명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판단척도 내지 고려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의 국

가의 역할과 기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터넷 및 게임관련 규제시스템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감이 없지 않다. 즉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터넷 및 게임관련 규제들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규제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투고일: 2013.5.30; 심사완료일: 2013.6.15; 게재확정일: 2013.6.17]



참고문헌

- 장진숙,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 청소년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0. 10
- 권현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 김민규, “문화콘텐츠시장에 미치는 제도화의 영향에 대한 고찰 - 게임산업의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한국게임학회, 2012. 4
- 김용화,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영남법학』 제3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0
- 김정환,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경희대 법학연구소, 2009. 9
- 김정훈·김승윤, “영상 컨텐츠 2.0 :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 - 미디어 이용행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IT전략 보고서, kt경 제경영연구소, 2012
- 김현수·김정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6
- 김혜경, “청소년유해성의 새로운 정의기준과 법적 정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 문기탁, “스마트 콘텐츠의 중복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2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1
- 박종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11. 12
-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고려법학

-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0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
23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2. 2

심재웅·배정근,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청소년 보호”, 「언론과 법」
제7권 제2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12

육소영,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적 쟁점 - 표현자유권의 문제를 중심으
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윤장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발전 방향”, 「방송공학회지」 제18
권 제1호, 한국방송공학회, 2013. 1

이부하, “방송광고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 - 독일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2012. 3

이향선, “디지털시대의 가상아동포르노 규제 -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사
회에 대한 함의”, 「한국방송학보」 제27권 제2호, 한국방송학회,
2013. 3

임정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국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3. 2

정호경·송시강,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
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11

주승희,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
의 자기결정권 보호”,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1. 6

주정민,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한국방송학회, 「스
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황성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공법연
구」 제2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1. 5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학설에 관한 연구”,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황성기,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4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12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08. 6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황승흠·안경봉 편, 「게임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009. 11

전종수, 「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2010. 8

한국입법학회, 「청소년 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 그 규범평가 및 입법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2011. 3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Abstract>

Trends and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 in Smart Media Era

- Focusing on Internet and Game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

Sung Gi Hwa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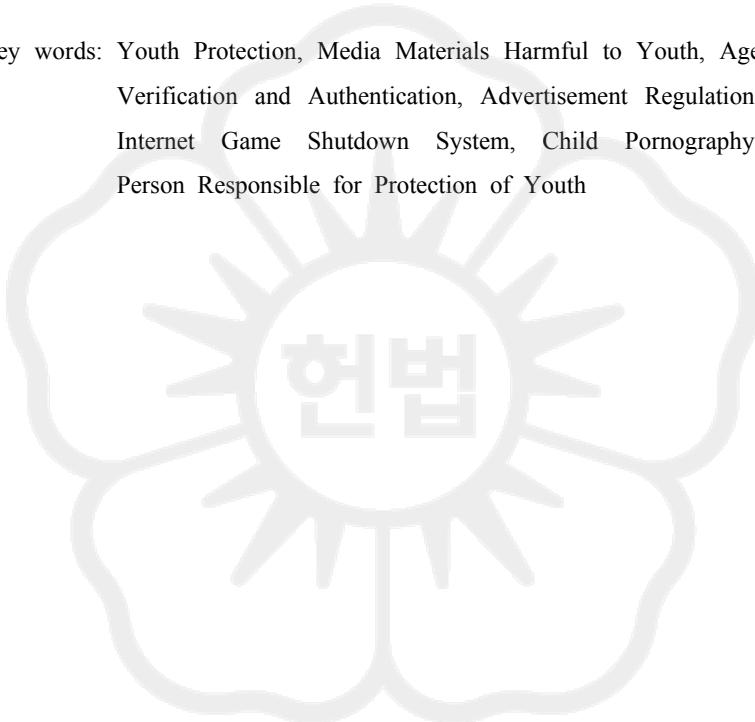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Key words: Youth Protecti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Advertisement Regulation,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Child Pornography,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I.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는 이른바 댓글과 관련한 문제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유해정보문제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유해정보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2008년 6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해당법률에 대한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 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은 참의원에서 2008년 6월 11일에 가결·성립되고, 6월 18일 공포된 법률(平成20年 법률 제79호)이

다. 同법률은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¹⁾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Public comment 절차²⁾)에 있으며, 시행 후 3년 이내에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법률의 개략적인 내용을 법률의 순서에 따라 총칙,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 대책·환경정비추진회의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 등,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일본 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비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각주

1) 2008년 11월.

2) 행정의 정책입안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공모하는 제도로서 2005년 6월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



II. 총 칙

1. 목적

이 법률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그 외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정의

- (1) 이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2)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i. 범죄 혹은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맡거나, 중개하거나 혹은 유인하거나, 자살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유인하는 정보
 - ii. 사람의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그 외 현저히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정보

- iii.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의 참혹한 묘사, 그 외 현저히 잔혹한 내용의 정보
- (3) 이 법률에서 “ISP(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4) 이 법률에서 “휴대ISP(휴대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휴대전화로부터 인터넷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5)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인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6) 이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별한 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한 역할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당해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자에 대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7) 이 법률에서 “특정서버관리자”란 서버를



이용해서 타인의 요구에 따른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이 열람가능 한 상태로 두고,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본이념

- (1) 청소년자신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시행하여야만 한다.
- (2)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 정보의 열람을 할 기회를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 (3) 민간에서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대처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 할 책무를 갖는다.

5. 관계사업자의 책무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열람을 할 기회를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할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보호자의 책무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의 상황을 적절히 파악 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7. 연계협력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 청소년의 인터넷이용에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관계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상호간의 연계협력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III.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 환경정비추진회의 등

1.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 환경정비추진회의

- (1) 내각부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 환경정비추진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두기도 한다.
- (2)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를 추진하는 것
 - ② ①이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 (3)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직

으로 한다.

- ①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내각관방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그 외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기본계획

- (1) 회의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정하도록 한다.
- (2)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 ②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에 관련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등에 관련한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청소년의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그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IV.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啓發)활동의 추진 등

1.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의 추진 등

-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가정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의 지원,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정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보급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가정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홍보계발

1, 2 외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 그 외 계발활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4. 관계자의 노력의무

관계사업자 등은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인터

넷을 이용하는 때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의 습득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보급을 위한 활동, 그 외 계발활동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V.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의 제공 의무 등

1. 휴대ISP의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1) 휴대ISP의 의무

계약의 상대방 또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자가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호자의 의무

청소년의 사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휴대ISP에 대해서 그 취지를 말해야한다.

2. ISP의 의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 정보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3. PC메이커 등의 의무

Preinstall,³⁾ 그 외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마련한 후에, PC 등을 판매해야 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개발사 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사업자의 노력의무

(1) 청소년유해정보에서 열람이 제한되지 않은 것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배려해서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열람의 제한을 하는 정보를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열람의 제한을 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열람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2) (1)에 규정된 것 외에 청소년유해정보 필

각
주

3) 판매하는 컴퓨터에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는 것.

터링소프트웨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성능 및 편리성향상에 노력해야만 한다.

5. 유해정보의 청소년에 의한 열람의 방지조치 등

(1) 청소년열람방지조치 등

①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발신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이하 청소년열람방지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②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열람방지조치를 위한 때에는 당해조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2) 연락접수체제의 정비

특정서버관리자는 청소년유해정보의 연락접수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VI.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

1. 필터링 추진기관

다음의 업무를 시행하는 자는 총리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및 청

소년유해정보필터링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와 그 보급 및 계발

(2)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의 추진

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다음의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한다.

(1) 필터링추진기관

(2)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성능에 관한 지침의 작성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3)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및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 제공사업자

(4)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5) 청소년유해정보에 관련한 정보를 수리(受理)하고, 특정서버관리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6)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그 외의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7) 청소년열람방지조치, 청소년에 의한 열람

의 제한하는 정보의 개선, 그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한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관해서 취해지는 조치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에 대해서 활동하는 ADR기관

(8) 그 외 관계하는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VII. 시행기일 등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政令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검토

(1)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이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서버관리자가 그 정보가 공중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당해서버관리자가 그 정보의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 법률의 시행 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VIII. 해당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해당법률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 및 비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체의 자유를 저하시키고, 그것에 동반해서 정보량도 격감시킬 우려가 있다.
- 유해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공적기관인지 민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독재적인 판단 및 주관적인 평가 될 위험이 있다.
-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유해하다고 판단되는)사이트도 삭제할 의무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에 따라서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이 유해성을 판단한다고 해도, 국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이며, 일본헌법에 규정된 “표현 · 이상의 자유”에 위반한다.
-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정부비판만으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예술로써의 누드나 회화도 규제될 우려가 있고, 문화와 예술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친다.
- Microsoft · Windows · Macintosh에는 이미 필터링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김 경 석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135
------------	------

제출연월일 : 2016. 12. 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안 제22조의5 및 제

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제92조제1항제1호)

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을 하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

마.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의7제1항 본문 중 “음란정보”를 “음란정보(이하 이 조에서 “유해·음란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방법 및 절차”를 “제공방법, 절차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되 해당 청소년이 유해·음란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동의의결을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한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방안(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하며,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돋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
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
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
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⑩ 동의의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

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음란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104조제5항에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6항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 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p>	<u>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 란정보 유통방지)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다)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 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 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정 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 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의 차단) ① ----- ----- ----- ----- ----- ----- -----</p>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음란정보(이하 이 조에서 “유해 · 음란정보”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되 해당 청소년이 유해 · 음란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절차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

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동의의결을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한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방안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하며,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돋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
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
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
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
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명령, 과징
금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
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제53조(금지 행위 등에 대한 과정
금의 부과) ① · ② (생 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④ ~ ⑧ (생 략)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주장할 수 없다.

⑩ 동의의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3)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④ ~ ⑧ (현행과 같음)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를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3. (생략)

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한다.

② ~ ⑤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

하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

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

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

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 <신 설>
2. · 3. (생 략)
- ④ (생 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3.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음란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p><u>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u> <u>다.</u></p> <p>1. ~ 17. (생 략)</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u>제3항제1호</u>,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p><u><신 설></u></p>	
	<p>1. ~ 17. (현행과 같음)</p> <p>⑥ ----- ----- ----- -----. ----- <u>제3항제1호 · 제1호</u> <u>의2</u> ----- ----- ----- ----- ----- ----- ----- -----. ⑦ <u>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u></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 제출
(2016. 12. 6. / 2004135)

헌법

2017.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원



【 목 차 】

I.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검토의견 4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규정 4

2.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규정 10

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동의의결제 도입 12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과정금 부과시 고려사항에 추가 20

5. 대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의 상향 .. 23

【 참고자료 】

1.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동의의결 개요 .. 27

2.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의 내용 29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정부 제출

나. 제출연월일 : 2016. 12. 6.

다. 회부연월일 : 2016. 12. 7.

2.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하는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제92조제1항제1호)

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을 하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을 할 수 있도록 함.

- 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3)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유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추가함.
마.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한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II. 검토의견

1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규정

(1) 개정안 요지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2조의5 신설).
-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2조 및 제104조).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를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 .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3) _____

한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항제1호,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신 설>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음란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6) _____

----- 제3항제1호 · 제1호의2 -----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검토사항

- 최근 개인인터넷방송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받게 되며¹⁾,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²⁾.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2조의5).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계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2)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2조 및 제104조).

- 방심위의 사후 심의를 규정한 현행법상의 규제체계로는 방대한 양의 음란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통신사업자³⁾에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여 음란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방심위의 심의 절차 없이도 부가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가 ‘음란정보’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즉각적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통신망의 실시간⁴⁾ 내용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임⁵⁾.

정보통신망법이 음란정보 등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방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콘텐츠 내용 심의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3)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됨.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4)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정보의 경우, 현행법체계로 규제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실시간성과 휘발성에 있음. 개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임.

5) 정부는 개정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은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잉 규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부가통신사업자로서는 음란정보를 음란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음란정보가 아닌 것을 음란정보로 오인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이용자와의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사업자의 경우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자의 경우 검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란정보 유통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정보에 대한 판단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음란정보의 즉각적 차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 간의 비교형량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6. 10. 17.)」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정보를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유해·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 규정
(1) 개정안 요지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유해·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차단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7).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p> <p>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u>음란정보</u>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u>제공 방법</u>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p> <p>① ----- ----- ----- ----- ----- ----- ----- ----- ----- 음란정보(이하 이 조에서 “유해·음란정보”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청소년이 유해·음란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u>제공 방법</u>, <u>절차</u>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3) 검토사항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⁶⁾ 및 음란정보⁷⁾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행법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보호자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⁸⁾.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봄.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유사한 차단수단을 의무화하면서 보호자가 차단수단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6)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8)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오픈넷, 2016.8.30.

9)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제17조

3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동의의결제 도입
(1) 개정안 요지

-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51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공정경쟁의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1. 동의의결을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한 경우. 다만, 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p> <p>2.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p> <p>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2. 관련 법령 조항

3.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방안(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하며,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돋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⑨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⑩ 동의의결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동의의결 제 개요]

-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¹⁰⁾ 이래로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이행¹¹⁾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¹²⁾) 개정으로 동의의결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음^{13).}

- 동의의결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14).}

동의의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일방적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기업의 입장에서도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시정조치 등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질적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제한된 자원을 위법성이 보다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음.

동의의결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동의의결이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편리한 동의의결 절차로 도피하는 등 제도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10) 2006년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11) 한미자유무역협정문 제16.1조(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2014년 1월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음.

14)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함.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유진희 외, 고려법학, 2012.

또한,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위법행위를 확정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우리나라의 경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과 규제기관이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¹⁵⁾과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검토]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제50조)¹⁶⁾를 한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제51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하거나(이하 ‘조치명령’이라 함)(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3조).

또한, 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제52조의2), 시정명령(제92조), 과태료(제104조)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임.

15)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유죄 및 형량을 협상하는 소위 플리바겐(plea bargain)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고 본다.” 김범식,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2008.

16)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2를 참조.

- 개정안의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와 상당 부분 유사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의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이나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와 개정안 비교>

구분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개정안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근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제51조의2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또는 타사업자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 동의의결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된 경우 제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 대한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동의의결 취소시 심의절차 재개는 재량행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 대한 절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동의의결 취소시 심의절차 재개는 기속행위 조사·심의 절차는 세부고시에 규정

- 개정안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제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론 외에도, 현재 타법상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동의의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근본적으로 동의의결제는 규제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 제도이므로 동의의결제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규제기관의 제도 활용에 달려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2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의의결제의 적용 사례가 총 5건¹⁷⁾으로 극히 적어, 평가를 통한 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의결 적용 사례 4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의결 적용 사례 1건

완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임.

현재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를 동의의결제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장¹⁸⁾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적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측면에 한정하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동의의결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동의의결제는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신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제를 적용할 실익이 낮기 때문임.

둘째, 동의의결제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개정 배경에 따르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6.8.17.)은 최근 이동통신사가 광고한 서비스품질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품질에 차이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던 중 이동통신사의 신청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동의의결(안)에서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이용자 피해 구제방안이 실제 피해를 구제하는 데 혼자히 부족하여 동의의결제도가 사업자의 최소비용으로 이용자 피해를 무마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학영의원안과 관련한 공정위의 무제한 요금제 관련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1을 참조.

현행법상 금지행위 중 ‘공정경쟁 저해 행위’는 제외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동의의결제가 규제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주어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동의의결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¹⁹⁾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된 시정방안과 시정방안의 이행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경우 통신시장의 특성 및 제재 현황을 고려하여 현재 타법상 시행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6. 8. 17.)」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동의의결제의 적용 범주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19)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개진이 저조할 경우에는 자칫 동의의결안을 통한 피해구제의 수용여부를 공정위가 사실상 판단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의견수렴 과정 중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언제든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반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봉의 외, 동의의결제도의 규범적 정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 KOFAIR 연구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5.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에 추가

(1) 개정안 요지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제5호 · 제6호).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② (생 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④ ~ ⑧ (생 략)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u> <u>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u> ④ ~ ⑧ (현행과 같음)

(3)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제3항)²⁰⁾.
- 개정안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i)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및 ii)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2016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자율준수 프로그램²¹⁾’의 정착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²²⁾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21)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4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22)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세부기준(고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운영시 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도(제4항)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²³⁾을 법률에 규정한(제3항) 취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산정 및 과징금 가중²⁴⁾과 같이 처분 상대방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개략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즉, 과징금의 감경을 위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과징금의 감경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2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제1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제2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제3호),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제4호).

2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5

대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의 상향

(1) 개정안 요지

-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대리점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기피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사실조사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하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u>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u>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 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단서 신설></u>	⑤ ----- -----.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생 략)
<u><신 설></u>	⑦ (생 략)

(3) 검토사항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²⁵⁾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1조)²⁶⁾,

2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내용은 참고자료2를 참조

26)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

사실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2조 및 제104조)27).

<사실조사 관련 현행 규정>

구 분	제 재 수 단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법 제51조제2항)	시정명령(법 제92조 제1항)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4조제1항)
자료·물건 제출명령 또는 일시 보관 (법 제51조제5항)	시정명령(법 제92조 제1항) 거부·기피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4조제5항)
시정명령 (법 제92조제1항)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법 제20조제1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4조제5항)

- 개정안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함)가,

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을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7)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생략)… 제51조, …(생략)…,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4조(과태료)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안 제104조제1항제3호) 과태료 부과의 상한을 종래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의 과태료 비교>

구 分	현 행	개 정 안	
		대기업등	그 밖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천만원 이하 (법 제104조제1항)	현행과 동일 (안 제104조제1항제1호)	현행과 동일 (안 제104조제1항제1호)
자료·물건 제출명령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천만원 이하 (법 제104조제5항)	5천만원 이하 (안 제104조제1항제2호)	현행과 동일 (법 제104조제5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 (법 제104조제5항)	5천만원 이하 (안 제104조제1항제3호)	현행과 동일 (법 제104조제5항)

- 대기업등은 소규모 영세 유통점에 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이 가능하고 조사자료 은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자료·물건 제출 명령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할 유인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²⁸⁾와 그 밖의 유통점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⁹⁾.

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 참고자료 】

1.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동의의결 개요

□ 개요

-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 통신사들이 특정 엘티이(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15년 12월 16일 동의의 결 절차를 개시하였음.
-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잠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 9월 5일 전원 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동의의결안(2016.9.5.)

구분	최종 동의의결안
1.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요금제 명칭개선	• 향후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 중지
표시광고 개선	• (문자) ‘무제한’ 표현 사용중지 • (데이터·음성) 자막의 크기·색깔을 확대·변경하는 등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 - 영상광고의 경우 “제공량, 속도 등에 제한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 ※ 유사서비스(예: 데이터로밍)에 대해서도 제한사항 등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
홈페이지 개선	• 요금제 가입·변경 시, 사용한도나 제한조건 인지 여부 확인절차 마련 • 요금제 사용한도 등을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7일)과 배너(1개월)로 고지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LTE 데이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제범위: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제공량: 광고기간 가입자 2GB, 광고기간 종료 후 가입자 1GB등록기간: 제공 후 30일 이내 등록사용기간: 등록 후 3개월 내 사용 <p>※ 데이터 제공 시,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기간 및 사용기간 등을 SMS로 고지</p>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제범위: ‘음성·문자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하여 과금경험 있는 이용자구제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가입자는 2개월 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 해지한 가입자는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환불
부가/영상 통화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제범위: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제공량: 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기간 종료 후 가입자 30분사용기간: 제공 후 3개월 내 사용 <p>※ 부가/영상통화 제공 시, 제공량 등을 SMS로 고지</p>
요금제 정보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요금제 가입·변경시 안내자료 제공 등 상세내용 알림문자한도 초과시 과금회피 방법(스팸 아님을 입증) 등 안내대리점 및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점검(2개월 간 월2회 이상)
통신사 변경한 소비자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 시,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데이터·통화 제공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보상 신청 <p>※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 가능</p>
피해구제 전담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통신사별 동의의결 피해구제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p>※ 필요시 3사 합동 TF 구성</p>

2.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의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

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라. 이용자[명의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양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의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 삭제 <2016. 12. 30.>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

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문 의 처

김수진 입법조사관(788-2774)



FOCUS 2

FOCUS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송은지*, 민경식**, 최광희***

오늘날 인터넷과 모바일 단말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세대 및 국가에 상관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 서론

II. 국내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III. 각국의 청소년 보호 인터넷규제 현황

IV. 각 국 정부 및 민간의 인터넷 규제 비교

V.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송은지 연구원(songeunji@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민경식 수석이코노미스트(kyungsik@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최광희 팀장(khchoi@kisa.or.kr)



I. 서론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기준 약 95%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을 통한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른 영향²⁾이다.

인터넷은 활용 방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창의성 발달의 도구이자 새롭고 폭넓은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국내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53.0%), 악성댓글(52.5%), 욕설 및 비속어의 남용(40.4%), 개인 신상 정보의 오남용(39.5%) 등을 꼽았으며, 유해 콘텐츠(음란물 등) 확산(18.6%)이나 인터넷 마녀사냥(18.3%)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은 성인보다 사회적 경험이 적고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력도 낮아 유해 정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무분별한 정보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성인보다 더욱 큰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게임에 대해서 김현수(2012), 조민자(2012) 등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 의식에 관한 양소정(2010), 김유정(2010) 연구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범죄에 대한 김계원(2012), 남재성(2011)의 연구도 나타난다. 온라인상의 대표적 청소년 규제인 ‘셧다운제’도 최성락(2013), 박종현(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 먼저 해외 주요국들에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및 인터넷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터넷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미주지역 학부모 802명 및 자녀들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2) 2012년 9월 기준 12세~17세 미만 미주 지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 단말 조사 결과, 74%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기타 모바일 단말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도 조사 당시에는 모바일 단말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이 약 65%로 나타났음

II.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 활용에 관한 내용은 물론 콘텐츠 관련 내용까지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확대로 악성 댓글 및 명예훼손,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 및 이용자 권리 침해에 따른 피해 등 관련 문제가 증가하는 동시에 복잡 다양화되면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마련이 요구되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부응해 2012년 3월 『청소년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도 했다.

1. 국내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련 법률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통틀어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인터넷상 유해 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³⁾.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제41조)'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보호를 위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31조 1항), 사이트

3) 청소년의 법령별 정의 및 연령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밖의 법령들도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통일되어있지 않다.

4) 정보통신망 이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책은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해당됨

운영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된다(제23조 1항). 또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사실인 내용 또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제 70조 1항, 2항), 청소년 보호의 경우에도 같은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상거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가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청소년의 구매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제13조 11항). 아울러 청소년의 불건전한 인터넷 게임 접속 및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의 등급 확인(제21조 2항)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게임 이용 시간 등의 제한(제12조)을 법률로 규정했다.

『전기통신망 이용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련 광고를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2조).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및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의미한다(제2조 2호, 3호). 본래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은 각각의 매체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을 받고 있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변환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다⁵⁾.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 발행, 유통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망 이용법』의 제42조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체명, 대표자명,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 매체물 표시 의무 및 광고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제59조).

2)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 운용 구조 및 현황

국내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관한 심의 및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영상, 게임, 음악, 출판물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되고 있는 일부

5) 건강한 인터넷 문화정책을 위한 서비스 기준 및 운영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콘텐츠들은 영상을 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이 각 담당 매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며, 음악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⁶⁾한다.

(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정보 내용을 일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용 가능한 등급 정보를 표시하면, 정보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가 해당 정보 내용을 필터링 또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차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적 문화 가치 및 국제 호환성을 고려해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SafeNet)⁷⁾’를 개발 및 도입해 2001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SafeNet은 현재 5개 범주에 대해 0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분류 체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⁸⁾, 인터넷 콘텐츠 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일본 전자네트워크 협회(Electronic Network Consortium)의 등급 기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있다. 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의 범주와 등급 수준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사행성 행위 등 5개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을 표시한다.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 마약사용조장 - 무기사용조장 - 도박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 - 음주 조장 - 흡연 조장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없음	비속어 없음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무리한 심의규정 남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방신기의 ‘주문’ 가사 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지펴졌다. 추후 제작사가 소송에서 이겨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반해 세계 음악 시장인 미국, 두 번째인 일본은 자율심의를 도입하고 있다. (프레시안, ‘13.6.3)’

7) <http://www.safenet.ne.kr/>

8)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가 인터넷 콘텐츠 분류를 위한 기술표준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를 보다 구체화 시킨 등급 서비스 표준안

등급서비스는 자율등급시스템(Self Rating System)과 제3자 등급시스템(3rd Party Labeling System)이 있다. 자율등급시스템은 국내 정보제공자가 <표1>의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심의위원회 측이 보급한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보이용자가 인터넷 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제3자 등급시스템은 제3자 기관에 의해 부여된 등급 목록을 정보 이용자가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율등급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 서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3자 등급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2) 셧다운(Shutdown) 제도

셧다운 제도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 제공사 측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1년 5월 제정되어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돌입했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연령과 본인 인증 등의 개인정보를 통해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게임은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게임 내 이용료가 부과될 시에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측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이나 건강권을 이유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즐길 권리나 실효성, 가정의 청소년 지도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왔다⁹⁾.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 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용 패키지 게임에서 먼저 적용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의 단말 보급률이 비교적 높지 않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다만, ‘스타크래프트1(StarCraft I)’나 ‘디아블로(Diablo)’와 같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이나 닌텐도 위(Nintendo Wii)와 같이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동시에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9) 블로터넷, 전병현 의원 셧다운제 원화 법안 발의, 2013.2.4.

III. 각국의 청소년보호 인터넷 규제 현황

1. 미국

미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규는 연방법과 주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조직 체계 역시 복잡하고 분산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헌법상 최우선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의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관련 규제는 강제적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법령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개입만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 통신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역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가하지 않으며, 주로 연방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이나 사업자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입법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자율 규제 정책을 만드는 사업자에 대한 면책 기회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 자율 규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⁰⁾.

1)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미국 정부는 70년대부터 청소년에 대한 음란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연방법¹¹⁾을 제정해 왔으며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을 공식 제정하였다. 동 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저속물, 노골적인 혐오물, 음란물을 고의로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인인증번호 사용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0)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책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11) 유해 및 음란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연방법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의성적 묘사물 제작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 착취에 관한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1977)'이 최초 제정. 동 법은 1986년 아동 음란물 제작 금지 요건을 16세에서 18세로 끌어올리고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아동 성적 학대 및 포르노법』(Child Sexual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으로 발전. 1996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 그림, 필름, 비디오 등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고의적 판매, 소지, 배포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이 제정되었으나 200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 이에 따라 2003년 『아동포르노법』(Protect Act of 2003)이 신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외설물 거래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아동 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을 제정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동 법은 1996년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¹²⁾에서 출발해 『아동 성적약탈 방지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으로 개정되었으나, 200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2003년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동 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은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적 행위 묘사물을 제작 및 중개하는 행위는 물론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외설물의 거래 및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개봉되지 않은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 및 저장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일명 가상 포르노 금지(Virtual Porn Ban)라고도 불린다. 동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금형과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중대 범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별금형과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동 외설물에 대해서는 동 법뿐만 아니라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다.

법률명	내용
미국연방법전 제18편 2,251조~2,260조 : 아동 포르노 등의 정의	전자, 기계 및 기타 다른 수단 등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의 사진, 필름, 영상, 그림, 컴퓨터 그래픽 영상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인 묘사물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시켜 제작된 묘사물, 또는 이러한 인상을 전하는 방법으로 광고, 홍보, 전시, 설명 또는 배포된 매체를 모두 포함
미국연방법전 제18편 2258A조 및 42편 13,032조의 규칙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은 아동 포르노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제42편 13032조), 상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유해 및 불법 정보로서 '실종아동수색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팁라인(Cyber Tipline) 신고 센터에 보고해야 함
미국연방법전 제18편 1,470조 : 미성년에 대한 음란 스팸 전송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불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스팸 음란 문서를 보이거나 전송하는 것을 금지

출처: Jetro(2012), GovTrack.us

한편, 미국은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0), 『닷키즈 적용효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12)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 사진, 그림, 필름, 영상 등을 전자, 기계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고 고의적으로 판매, 소지,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아동 인터넷 보호법』은 공립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 시 유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인터넷 관련 재정적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학교나 도서관은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y protection measure)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학교나 도서관에서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책인증서를 제출 및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국공립학교의 80~90%가 동 법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닷키즈 적용효력법』이란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kids.us'라는 도메인명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사이트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해당 도메인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포르노 등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채팅룸, 인스턴트메시지 등의 외부 도메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동 법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부모들을 교육하거나 제도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은 아동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모에게 둠으로써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수집되어 온라인상에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제안한 법으로 1998년 10월 제정되었다.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공개할 때, 이를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통지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로, 구체적으로는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등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에 관한 정보들이 해당한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 운용 구조 및 현황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와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같은 기구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및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34)에 따라 조직된 미국 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미국 통신 시장의 규제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및 아동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2001년부터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에 따라 공립학교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보호조치를 적용하는 'E-rate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통신정보관리청은 미국의 정보통신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담당 행정 조직으로 미국 상무부 산하에 조직되어 있다. 미국통신정보관리청은 『21세기 아동보호법』(Protecting Children in the 21st Century Act)에 준해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온라인 안전 및 기술 관련 위킹 그룹(The Online Safety and Technology Workign Group)을 설치하고 인터넷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재는 주로 정책 분석 및 개발부서(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한 접근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면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 및 통신 사업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업자 단체가 학부모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필터링 도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연방 정부의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아동 인터넷 보호법에 따라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한해 인터넷상 유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도서관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감시, 부적절한 액세스 방지, 개인정보 무단 배포 등에 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에 아동 사이버 안전 담당 조직(Cyber Safety for Children)을 개설하고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텍사스주 역시 연방 정부법에 근간을 두고 주 형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및 아동의 연령과 위법 행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 검사국(District Attorney)에서는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인터넷사이트, 채팅, SNS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정의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 폭력 및 학대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 공유 및 배포하는 행위도 동 법률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텍사스 주에서도 아동 인터넷 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필터링 소프트웨어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각 서비스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어 옵션을 활용도록 권장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일반적인 법 제도도 미국과 유사하게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역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에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인터넷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주로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는 법률이 많다. 이러한 법 제도하의 인터넷 규제는 정부, 사업자, 시민 단체, 일반 시민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규제 차원에서 시행한다.

1)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영국에서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영상 및 콘텐츠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비디오 레코딩법』(Video Recordings Act 1984)에 따라 영국 영화 분류국(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에서 콘텐츠 등급제를 시행한다. 인터넷상의 영상 콘텐츠는 해당 등급제에 따를 의무가 없으나 업계에서는 인터넷 방송 영상용 등급 분류 서비스 'BBFC 온라인'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비디오 레코딩법』에서는 성적 묘사나 폭력성이 강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연령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체계는 『2010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의 제정에 따라 영국 영화 분류국의 시스템에서 '전유럽게임정보(Pan-Europe Game Information)'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법적으로는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유럽게임정보는 플레이스테이션(Play Station), 닌텐도 위(Nintendo Wii), 엑스박스(X-box)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콘솔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유럽게임정보 온라인안전코드(PEGI Online Safety Code)'라는 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일반적인 PC 및 모바일 온라인 게임은 동 규범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영국 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추진 중이다¹³⁾.

『아동 성추행법』(Indecency with Children Act 1960)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적 목적으로 접촉하는 일명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13) 영국 게임 관련 업계에서는 '영국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협회(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 사업자 및 보호자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담은 '비디오 게임 산업: 청소년과 부모의 책임감 있는 자세(The video games industry : A responsible attitude towards parents and children)'를 발표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및 음란물 콘텐츠 제작은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을 비롯해 『시민정부법』(Civic Government act 1982),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경찰 및 형사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 『범죄 처벌 및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은 인터넷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관련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모두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청소년에 관한 성적 표현물의 금지 대상은 저속하거나 음란한 광고물, 영상물, 출판물 등이 모두 해당되는데, 여기서 청소년의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아동보호법』, 『성범죄법』과 함께 별도의 형법에서는 청소년 음란물의 단순 소지 역시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제작 및 소지의 범위는 PC 내 다운로드 및 저장하는 행위와 저장물을 인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운영 구조 및 현황

영국 정부는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 조직으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산하에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 Internet Safety)를 운영하고 있다. 동 조직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협의하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도 계획을 고안하여 추진하는 데 주력하며,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 및 제재는 수행 역할에서 제외된다.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는 애플,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보다폰 등의 대표적인 글로벌 ICT 사업자들을 비롯해 법 집행 기관, 학술 연구 단체, 자선단체 등 17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처벌 권한을 갖는 사법 기관으로는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있다.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는 특히 청소년 및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거나 이용하려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의 가해자를 적발 및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씽크유노(Thinkuknow)¹⁵⁾’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5~7세, 8~10세, 11세~16세, 부모와 학부모, 교육자 등 각각의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 이용과

14) 1978년 '아동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16세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제정된 '성범죄법'에서 연령 범위를 18세로 상향 조정함

15) www.thinkuknow.co.uk



인터넷상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신고 전화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상 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이용을 단속하는 법률의 준수가 강조됨에 따라, 사업자와 민간 부문도 자율 규제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 및 사법부의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며 동참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인터넷 보급이 우리나라나 미국 등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이지만,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법률 구조와 엄격한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규제법 시스템이 잘 정비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방법 차원에서는 유해 콘텐츠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콘텐츠의 배포나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법과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을, 주법 차원에서는 별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의 성격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정부의 감시 및 관리 권한이 비교적 강력한 형태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 규범을 마련하고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실행 규범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 및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1997년 독일 연방 형법에서는 인터넷상 유해 콘텐츠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오프라인상의 물리적 문서에 국한되어 있던 규제 대상 매체가 인터넷 및 온라인상 전자 문서와 데이터로까지 확대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음란물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일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형법 제 184조)이나 폭력 행위 및 수간 행위 묘사물(형법 제 184a조)에 대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 윤리를 해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실제 성적 학대 및 추행 행위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비강제적인 음란 행위 묘사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배포하거나 구매 및 소유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183b, c, d조).

한편,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유해 콘텐츠 규제법으로는 2002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과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2002년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 법률 시스템으로, 동법 1조 1항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을 각각 14세 미만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미디어의 범위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보급 확대 상황에 맞춰 ‘기록미디어(Trägermedien)’와 ‘텔레미디어(Telemedien)’로 구분했다. 여기서 기록미디어는 오프라인 공간의 물리적 매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텔레미디어는 온라인 공간의 가상 및 통신 매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이다.

〈표〉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규제 대상 매체의 구분

구분	의미
기록미디어 (제 1조 2항)	- 물리적인 매체에 기록되어 배포되거나 직접적으로 인식 가능하고 재생이 가능한 기기에 기록된 문서, 영상, 음성 콘텐츠 - 도서, 음반, 비디오, CD, DVD, 포스터 등이 이에 해당
텔레미디어 (제 1조 3항)	- 인터넷 미디어, 정보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접근이 가능한 매체 -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 및 전송되는 문자, 영상, 음성 콘텐츠 등이 포함

출처: Jetro(2012)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미디어 및 텔레미디어를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목록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부도덕하거나 폭력성을 조장하고, 폭력·범죄·인종 간 증오 행위를 선동하며 살인과 같은 폭력 행위나 구타 등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묘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제17조, 18조 1항).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에서는 방송국 및 텔레미디어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콘텐츠 공급자는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제5조 1항)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술적 차단 조치’와 ‘시간제한 조치¹⁶⁾’가 해당된다(제5조 3항, 4항). 아울러 콘텐츠 공급자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도록 하는 보충 규정(제11조 1항)도 마련되어 있다¹⁷⁾.

16) 청소년 이용 금지 콘텐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 가능 시간이 23시~6시까지이며, 16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 콘텐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2시~6시까지로 지정

17) 해당 소프트웨어는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관할 주 미디어청이 ‘청소년 미디어 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연장도 가능함(제 11조 2항)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 운용 구조 및 현황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은 크게 각 주의 미디어감독청(Die Landesmedienanstalten, DLM),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BPjM)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은 앞서 언급한 청소년보호법 및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에 따르고 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로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의 역할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심사청은 청소년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디어 및 텔레미디어를 청소년유해매체 목록에 등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해매체 목록 등재 결정은 각 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텔레미디어의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우선한다. 만일 주 위원회가 특정 텔레미디어에 대한 유해목록 등재를 신청하면 연방 심사청의 심사 없이도 목록 등재가 가능하며, 반대로 주 위원회가 등재 조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등재를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¹⁸⁾. 즉, 텔레미디어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 매체와는 달리 규제 권한을 주 정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¹⁹⁾.

주 미디어감독청은 콘텐츠 제공사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텔레미디어 주간협약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데, 텔레미디어 주간협약의 조항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한 직속 기관으로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텔레미디어 주간협약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텔레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를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 콘텐츠 등급을 결정하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방지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기술을 검증 및 허가하며,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 목록 등재 결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텔레미디어 주간협약에서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 텔레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간 자율규제기구 조직과 자율규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규제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가 있다.

18) 청소년보호법 제 18조 6항, 8항

19)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제공 기준 및 운영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참조

법조항	주요 내용
제 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규모의 방송국,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텔레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수탁 기관을 두어야 함 - 다만, 직원 50명 미만 또는 접속 수 1,000만 건 이하의 규모는 자율 규제 기관으로 대체 가능
제 14조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부는 관할 주 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를 설립함 -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텔레미디어 주간 협약'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자율 규제 기관의 허가 승인, 콘텐츠 등급 및 필터링 소프트웨어 기술 검증 및 허가, 연방 청소년 유해 미디어 심사청의 유해 목록 콘텐츠 지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및 텔레미디어 서비스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가능 - 자율규제기구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유효 기간은 4년, 기간 연장도 가능
제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에 서비스 내용 및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서비스 접근을 개방해야 하며, 감독 행위에 필요한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됨

출처: Jetro(2012)

4. 일본

일본은 2006년 이후 인터넷 이용에 따른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 위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인터넷 위법 및 유해 정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국회에서는 직접 유해 정보를 정의하고 유해 정보 제공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지나친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콘텐츠 및 사업자 규제를 배제하고 기술적·사회적 지원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규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령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환경 조성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 추진 방향 역시 이러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필터링과 같은 수단의 활용과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단체 및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1)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일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법령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す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이 2008년 6월에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강구하고, 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 및 보급 확대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제1조). 청소년의 범위는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청소년 유해 정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 및 범법 행위에 관한 내용, 성적으로 음란하거나 자극적인 내용, 살인이나 처형 및 학대 등의 현저하게 잔혹한 내용 등을 의미한다(제2조).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마련과 추진 방향에 관한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제3조).

〈표〉 일본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의 기본 이념

1.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건전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킨다.
2.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유해 정보 열람 및 접근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3. 민간 사업자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우선하며, 국가 및 공공 기관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출처: 일본 내각부

법률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 추진 노력을 강조하고(제13조~16조),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및 통신 사업자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모바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가 이용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 의무가 주어지며(제17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역시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8조). 서버 관리자는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외부로부터의 신고 접수 체계의 정비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제21조~22조). 아울러 필터링 기능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는 총무성이나 경제산업성에 등록 승인을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홍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제24조~29조).

한편,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역할은 민간단체 및 사업자들에 대한 지적·재정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어(제30조) 정부의 법적 권한이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제도적 지원 환경 마련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정책 운용 구조 및 현황

일본 내각부는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 대책 및 환경 추진을 위한 각료 회의’를 조직해 운영해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법률상에 명시된 3가지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사용 정책의 4가지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 및 결정한다.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4가지 기본 계획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능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계몽 활동 추진,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리에 관한 교육 활동 실시,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촉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의 자주적 대응 등이다.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를 위한 첫 번째 정책 시행 기본 계획 및 추진 정책은 2009년 6월 30일 수립되었다. 이후 정책 시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료 회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본 계획 및 추진 정책은 매년 개선되어 오고 있다. 2012년 7월에 발표된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²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책 시행 방향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향후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신규 단말 관련 대책, 보호자 대상 필터링 보급 교육 강화,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연계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침으로 필터링 기능 향상 및 유해 정보 열람 기회 최소화의 균형 유지, 보호자 및 사업자의 책무 강조, 정보 수신자 기준의 정책적 접근, 민간 주도적 정책 및 행정적 지원, 콘텐츠 유해성 판단 여부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등의 5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기본 방침에 따라 수립된 주요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 2011년 6월에 실시된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실시된 필터링 보급 활동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이용 시 필터링 이용률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약 76%, 70%, 50%로 2009년 10월 조사 당시의 이용률인 62%, 55%, 39%보다 약 10%p 전후 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



〈표〉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를 위한 주요 추진 정책

주요 추진 정책	세부 추진 정책	세부 내용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학교 및 가정의 교육 활동 추진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도덕 교육 추진 - 정보 도덕 지도력 향상 - 학생 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추진 - 인터넷 왕따 대책 마련
	사회에서의 교육 및 계몽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민간단체, 사업자의 교육 및 계몽 활동 지원 - 포털 사이트 등을 활용한 간편하고 빠른 정보 제공 - 사이버 방법 관련 자원 봉사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능력 측정을 위한 지표 마련
	가정에서의 교육 및 계몽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규칙 만들기 등 가정에서의 대책 지원 -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른 보호자 교육 컨설팅 지원 - 보호자 대상 효과적인 교육 도구 보급 검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육 수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자 차원의 청소년 유해 정보 필터링 기능 향상 및 이용 보급 촉진 활동	사업자의 필터링 제 공 의무화 시행 및 보호자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및 통신 사업자 대상 필터링 제공 의무화 - 보호자를 위한 충실히 설명 마련 - 올바른 필터링 제공 방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
	휴대전화에 대한 필터링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에 대한 필터링 다양화 및 개선 - 휴대전화에 대한 필터링의 대상 적정화 지원
	신규 단말 및 전송 기술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필터링 추진 - 청소년 보호 장치 사전 탑재를 위한 단말 및 서비스 설계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링 제공 사업자의 열람 제한 대상자 파악 지원 - 필터링 보급 촉진 활동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민간단체의 관련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퍼런스 개최, 배포 자료 작성 등의 활동 지원
	웹사이트 운영자 등을 위한 청소년 유해 정보 열람 방지 조치 관련 체제 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제 정비 지원 - 효율적이고 원활한 활동 실현을 위한 지원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상 문제 발생 시 상담 대책
기타	사이버 범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추진 체제 강화 -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최한 협조 체계 구축
	위법 및 유해 정보의 적극적인 삭제 요청 등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핫라인 센터를 통한 삭제 요청 접수 -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효과적인 열람 방지책 마련
	사생활 침해 대응 및 연구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 스팸 메일 대응 - 국내외 사례 및 유해정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조사 연구 실시

출처: 일본 내각부(2012)



내각부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본부를 중심으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관련 행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산하 공공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학부모, 사업자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 정비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 및 유해 정보 대책 민관 실무자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인터넷 안전·안심 전국 추진회의’ 등을 개최해 학교 관계 단체, 학부모 단체,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단체 간 연계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정보 유통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해 국제기구나 관계국 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IT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마다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 수립 등 후속적 대응도 마련하고 있다.

VII. 각국 정부 및 민간의 인터넷 규제 비교

1. 각국 정부 규제의 비교

주요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부 주도하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역시 직접적인 규제는 가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체적 규제를 존중하며 영국 교육부 산하의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 또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독일이 유럽 국가에서는 유해 콘텐츠 관련 규제 체계가 엄격하지만 유해 콘텐츠 여부 및 협약 준수 등을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며 자율 규제에 기반을 둔다. 실행 규범은 대부분 민간에서 마련되고 각 주의 미디어감독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사청 등의 공공기관은 확립된 규범이 이행되고 있는지만 관리한다. 일본 역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명시된 것처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규제는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우선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제작을 비롯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제의 정부주도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인터넷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한국과 달리



주요국 정부는 비영리 단체 또는 사업자 협회 등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단체가 정부 정책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접근 차단과 범죄 피해 등의 방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데, 특히 규제 제도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민간의 자율 규제 비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 규제 조직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각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인터넷 환경 개선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족 온라인 안전 위원회(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²¹⁾, 무선통신연합회(CTIA-The Wireless Association)²²⁾ 등의 주요 민간단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거나 필터링 도구 지원 및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온라인 안전 위원회는 가정 내 안전한 인터넷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업자, SNS, 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단위의 민간단체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인터넷상 청소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활동 방침에 따라 공공 정책, 기술, 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웹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하에 인터넷 콘텐츠 등급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콘텐츠 등급 연합체(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를 조직해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무선통신연합회는 2005년 연방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콘텐츠 관련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유해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기준을 마련토록 제안하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을 진행하고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무선통신연합회는 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는 모바일 환경 조성 및 기술 활용 교육을 위해 무선 재단(The Wireless Foundation)과 함께 'Be Smart, Be Fair, Be Safe :

21) <http://www.fosi.org/>

22) <http://www.ctia.org/>

23) <http://www.growingwireless.com/>



Responsible Wireless Use'라는 명칭의 정보 제공 사이트²³⁾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민간단체가 직접적 규제보다는 지침 마련의 역할을 하는 반면, 유럽의 민간단체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적 규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998년 독일의 미디어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연합해 출범시킨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 규제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²⁴⁾'가 대표적인 예이다²⁵⁾.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 규제협회는 민간단체임에도 2004년 11월에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 자율규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규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얻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자율 규제협회는 주로 협회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미디어 정보 및 콘텐츠가 텔레미디어 주간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련 불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원사에 처벌 조치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율규제기구에 비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종 유해 콘텐츠 및 불법 서비스에 대한 신고나 불만 사항 등을 접수 받는 핫라인 운영²⁶⁾, 모바일·웹 2.0·온라인 채팅 등 신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정책 마련, 청소년 이용이 안전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작성,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2월 기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을 포함해 총 47개의 사업자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²⁷⁾.

또한, 영국의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 연합체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을 조직하고 사법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 재단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및 유해 콘텐츠 근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자선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성범죄법에 의해 법적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 재단에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 성범죄법 및 아동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긴급 신고 센터(Hot line)'를 설치해 운영한다. '긴급 신고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인터넷 감시 재단은 해당 콘텐츠를 심사해 위법 유무를 결정하고, 위법으로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호스팅 업체에 관련 콘텐츠 삭제를 지시한다. 아울러 인터넷 감시 재단은 유럽 인터넷긴급신고센터 제공사 연합(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24) <http://www.fsm.de/en>

25) 텔레미디어 주간협약 제19조에서는 방송 및 텔레미디어 서비스 영역에서 사업자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인정. 자율규제기구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 기간은 4년이며 기간 연장도 가능함

26) www.fse.de

27) 협회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연회비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에 따라 최소 2,000 유로~ 최대 3만 2,000 유로까지 상이함

Association)의 영국 대표 단체이자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NGO 단체인 '아동 학대 방지 단체(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가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 및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와 함께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 학대 방지 단체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극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때 조사 및 아동 보호를 위한 법원 명력을 직접 신청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또한, 아동 신고 센터(Child line)를 설치해 구조 신고 전화(Help line) 및 웹사이트(www.childline.org.uk)를 통해 피해 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상시 신고 신청을 받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3. 기업 차원의 자율적 활동

최근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들도 사이버 윤리 엄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SNS 사업자들은 주로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 제한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들은 콘텐츠 등급제를 적용함으로써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나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필터링 도구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지도하는 활동 및 서비스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이용 제한 및 감시 도구 마련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페이스북은 6명의 민간 비영리 조직 대표들로 구성된 안전 자문위원회(Safety Advisory Board)²⁸⁾의 지원을 받아 '안전센터(Safety Center)²⁹⁾'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센터에서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건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학습 지도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28) Childnet International, ConnectSafely, The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The National Network to End Domestic Violence, WiredSafety 등 5개의 비영리 조직 대표들로 구성

29) <https://www.facebook.com/safety>

현재 페이스북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 절차를 수행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설정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여러 기능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즉, 청소년의 활동은 친구에게만 공개되며 친구 추천 옵션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가 청소년 이용자를 태그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이름은 친구에게만 공개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은 가입을 불가하고 있으며, 브라우저 쿠키를 통한 차후의 등록 시도도 예방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이 거짓 개인정보 등록을 통해 가입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13세 미만 아동 가입자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는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들이 자사 웹 사이트를 통해 필터링의 적용 현황과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공개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 최대 SNS 사업자인 믹시(mixi)³⁰⁾는 서비스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필터링 서비스³¹⁾를 활용해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를 선별한다. 청소년 이용자에 대해서는 프로필 검색 및 표시 범위를 친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물 검색 및 콘텐츠 검색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이나 광고는 검색 결과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서비스 사업자인 야후 재팬(Yahoo! Japan)의 경우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야후안심넷’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야후안심넷’은 유해 사이트의 차단, 포털 내 이용 가능 메뉴 선택, 개별 웹 페이지 차단, 이용 시간제한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직접 자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격 관리 기능도 지원해 외부PC에서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통신사업자들은 미국 무선통신연합회(CTIA-The Wireless Association)의 통신사 콘텐츠 등급 기준 마련 권고에 따라 자체적인 콘텐츠 등급체계를 만들거나 제 3자 기관에 해당 기능을 위탁하고 있다. 버라이즌(Verizon)³²⁾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웹 콘텐츠, 메신저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콘텐츠 등급 기준을 연령에 따라 C7+(7세 이상), T13+(13세 이상), YA17+(17세 이상)로 제시하고 이를 필터링 서비스에 적용시켜 보호자가 직접 자녀의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반면, 티모바일(T-Mobile)의 경우에는 ‘웹가드(Web Guard)’라는 타사의 시스템을 활용해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 <http://mixi.co.jp/kenzen/torikumi/zoning/>

31) 믹시 이용을 위해서는 자국 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휴대전화 이용자의 경우 휴대전화 필터링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

32) http://support.verizonwireless.com/how_to_use/content_filtering.html



V. 결론 및 시사점

특정한 위험 요소 및 유해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IT 기술의 보급 및 활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인터넷 위험 요소에 대한 법 규제 상황과 국가 정책의 방향 역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미국은 직접적인 사업자 처벌이나 콘텐츠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 인센티브 제공으로民間 주도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T에 대한 활용도나 보급률이 높고 사업자 및 사업 모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인터넷 활용 제한, 콘텐츠 규제, 프라이버시 규제 등 인터넷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율 규제 활동에 대한 참여나 환경 정비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면책 도구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적 규제보다는民間 차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와民间 자율 규제 단체의 협력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영국은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게임 등 일부 콘텐츠는 법 규제의 적용 범위가 뉴미디어의 영역까지 미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해 정보 및 콘텐츠 규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에서도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모두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자율 규제를 담당하는民间 단체 가운데 일부는 정부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기관마다 핫라인이나 아동 신고 센터와 같은 긴급 신고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민한 대처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영국보다는 제한적인 자율 규제 체계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콘텐츠 범위나 처벌 범위 등을 정의해 법체계가 잘 정비된 편이며,民间 단체를 통해 이러한 법 규정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 권한은 연방 정부보다는 주 정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콘텐츠 등급제 등의 제도적 기준 역시 법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관련 법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및 처벌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초점은 국가, 사업자, 보호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 정비를 위한 도구 적용 및 교육 홍보에 맞춰져 있다. 민간단체 역시 감시·감독의 역할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환경 정비 도구 제공을 통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 준수를 촉구함으로써 처벌에 따른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훈련에 대한 홍보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준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법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사업자 규제 및 콘텐츠 심의 등 인터넷 정책과 관련해 정부 주도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적 규제는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큰 효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³³⁾.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인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 데 반해,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비율은 40%에 달했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함을 증명한다³⁴⁾.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및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기는 했으나, 처벌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자율적 규제 제도나 이용자 교육 방식 등을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신고 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산업계·민간 이용자가 모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3)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책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011.12.19 첨조

34)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마케팅인사이트와 함께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시행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 시간은 2.5%로 같았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정 이후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비중은 불과 0.3%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셧다운제 시행 이전에도 자정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 비중은 적었고 시행 이후에도 그 수준이다. 오히려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은 일 년 새 더 늘었다. 중학생 게임 이용 빈도는 월평균 19.48회에서 올해는 23.63회로 증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게임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고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도 36.5%나 됐다. 주당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도 255분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블로터넷, 전병현 의원 셧다운제 암화 법안 발의, 2013.2.4.

35)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09.6.26.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테이블세터(Table setter)로서의 역할³⁵⁾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자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되면,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권익 신장과 사업자의 시장 안정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청소년보호법
_____ (20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_____ (20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_____ (20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미래창조과학부(2011),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제공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박태순(2012),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방향, 『방송통신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
- 최성락(2013), 셧다운제가 정부신뢰도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게임학회논문지 Vol.13 No.1
- 김현수(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2 No.1
- 조민자(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절 변인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Vol.8, No.3
- 김유정(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Vol.24 No.6
- 양소정(2010),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21 No.4
- 김계원 서진완(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한행정논집 Vol.9 No.2
- 이영주(2011), 셧다운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정책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Vol.9 No.3
- 박종현(2011),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 남재성 장정현(2011),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 비행요인과 지역사회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 지성우(2012), 독일에서의 음란성 개념과 심의제도, 『방송통신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
- 최은경(2012), 영국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규제 : 전 방위적 규제와 감시를 위한 적극적 참여
 요구, 『방송통신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호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2),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09.6.26.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2013),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Guide

JMStV(2003), Gesetz zum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OECD(2011), The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Pew Research Center(2012), Teens 2012: Truth, Trends, and Myths About Teen Online Behavior
_____ (2013), Teens and Technology 2013

e-Gov(2007),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総務省(2008), 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有害情報への対応に関する検討会最終取りまとめ(案)

_____ (2012), オンライン上の児童のプライバシー保護の在り方についてー米国、EUの動向を踏まえてー

内閣府(2012),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第2次)

日本貿易振興機構(2012), ドイツ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_____ (2012), 韓国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_____ (2012), 英国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_____ (2012), 米国における青少年保護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と運用

The New York Times, Putting a 13-Year-Old Child Safely on Facebook, 2012.11.27. 아시아경제,
미래부 게임 셧다운 문제 셧다운 검토, 2013.5.6. 프레시안, 입법조사처 대중음악 민간 자율심의제 도입해야,
2011.8.4.블로터넷, 전병헌 의원 셧다운 문제 완화 법안 발의, 2013.2.4.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opennet.or.kr/13431

By 오픈넷

February 2, 2017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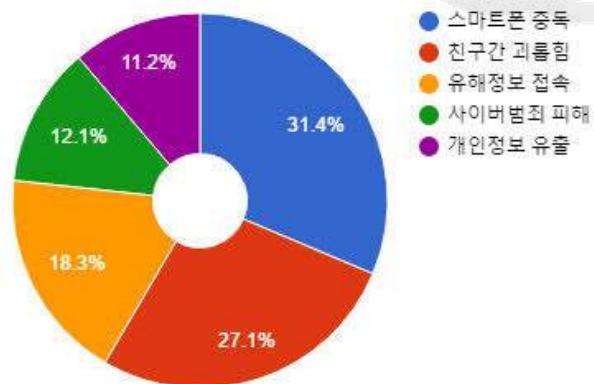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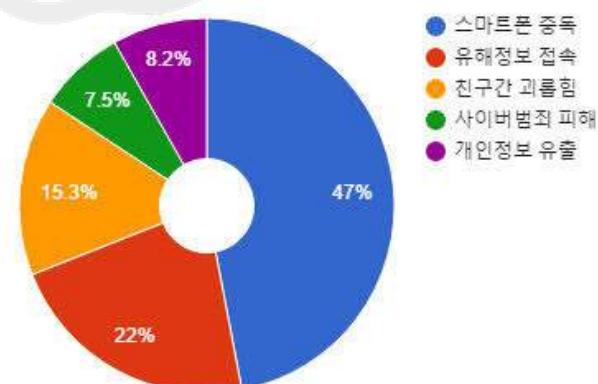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전체 응답자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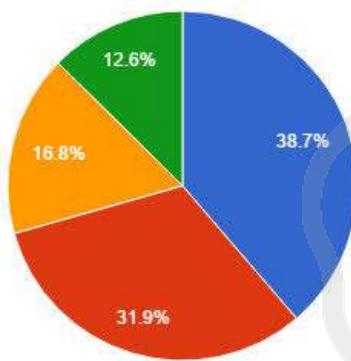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관리앱 강제설치에 대한 생각은?



관리앱은 유해정보 차단에 효과적인가? (%)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7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설문조사 문항

1. 청소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신가요?



(1) 네

(2) 아니오

2.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미취학아동(0~7세)

(2) 초등학생(8~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1) 유해정보 접속

(2)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등 친구들의 괴롭힘

(3) 웹사이트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4)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

(5) 과도한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 2015. 4. 16.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네

(2) 아니오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5.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위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3) 청소년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6.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이나 T청소년안심팩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1) 네

(2) 아닙니다

(3) 잘 모름

(4) 자녀가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 관리 앱은 누가 설치했나요?

(1) 휴대폰 구매시 사업자(대리점 등)가 설치

(2) 본인(부모)이 직접 설치

(3) 자녀(청소년)가 직접 설치

(4) 자녀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스마트폰 관리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녀가 성인물 등 유해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3)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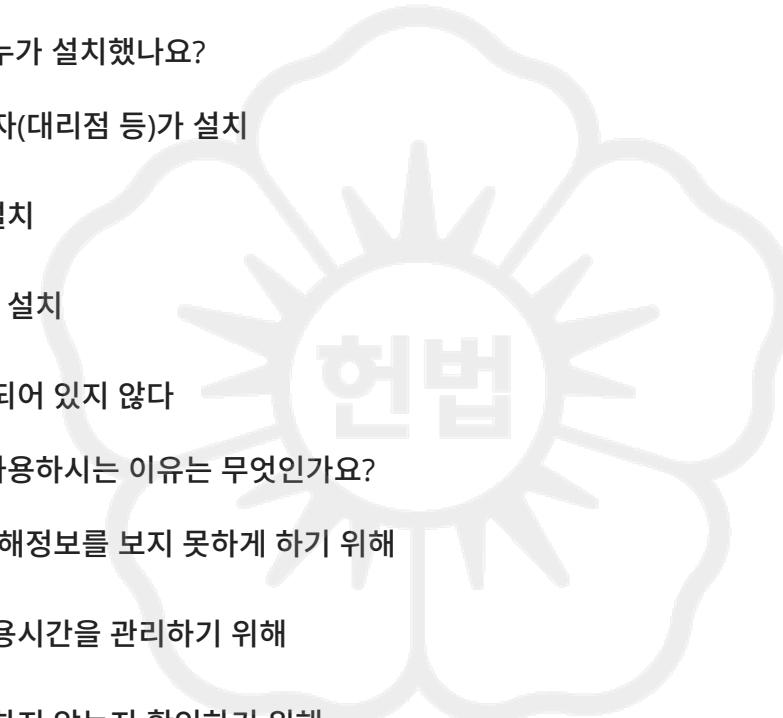
(5) 기타

(6) 해당없음

9. 스마트폰 관리앱이 유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

(4) 약간 효과적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10. 정부가 개발해 보급한 유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를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단수단 설치 강제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정보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

(2) 차단수단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글]

- [보도자료]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6. 12. 26.)
- [논평]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 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2016. 8. 30.)
-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슬로우뉴스 2015. 11. 16.)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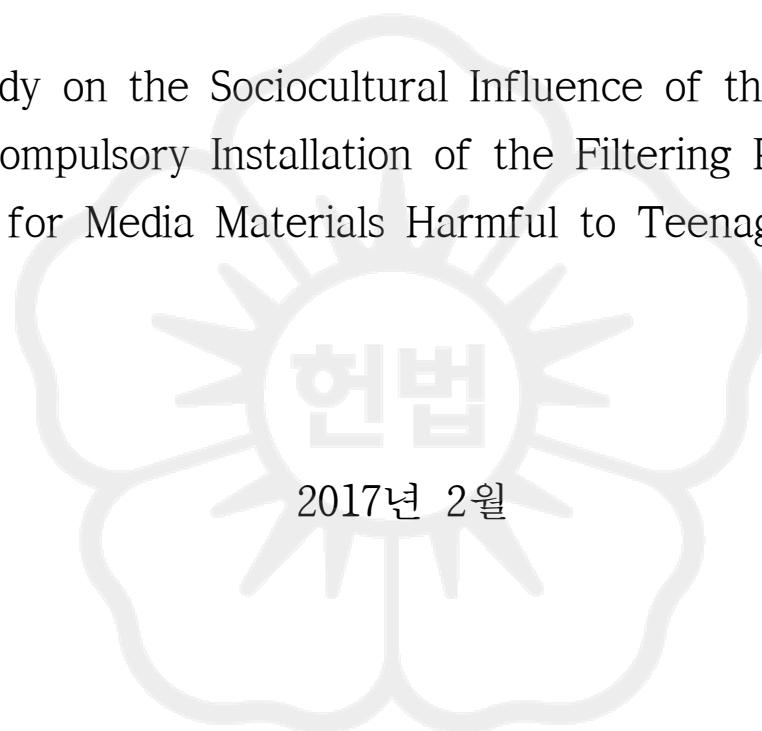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Influence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of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2017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조민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Influence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of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지도교수 이 광 석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조민지

조민지의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심사위원장 황 주 성 (인)

심사위원 김 기 환 (인)

심사위원 이 광 석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i
그림목차	iv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절 온라인 규제정책	4
1. 규제정책의 개념과 특징	4
2.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	5
제 2절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둘러싼 논의	8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8
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정책	9
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현황과 논쟁점	11
제 3절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14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14
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16
3. 청소년 매체 이용의 사회·문화적 영향	17
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0
제 1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제 2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1
제 3절 심층인터뷰	26
제 4장 연구결과 및 분석	30
제 1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차	30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30
가. 빈도 분석	30
나. 중심성 분석	31

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35
2. 심층인터뷰 결과	39
가.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긍정론	39
나. 차단수단에 대한 자녀의 부정론	42
제 2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행태	45
1.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 · 감시	45
가. 완전 차단형	45
나. 시간 관리형	47
다. 자율모니터링형	48
2. 자녀의 차단수단 회피 · 무력화	49
가. 순응형	49
나. 소극적 회피형	50
다. 적극적 회피형	51
제 3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정책의 사회 · 문화적 영향	53
1. 사회적 영향	53
가. 가정 내 갈등 및 종속현상	53
나. 의무정책의 실효성	55
2. 문화적 영향	58
가. 놀이문화의 변화	59
나. 스마트폰과 대인관계	60
 제 5장 결 론	63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3
제 2절 논의 및 정책 제언	65
 참고문헌	67
[부록 1] 부모 심층인터뷰지	72
[부록 2] 자녀 심층인터뷰지	74
영문초록(Abstract)	76

요 약

제 목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본 연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 이용 경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부모의 게시글에서 게임, 중독 예방, 위치 조회, 시간제한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며 차단수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는 삭제, 비활성화, 무력화, 우회, 사생활침해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며 차단수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부모는 차단수단을 통해 자녀의 시간관념 생성,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 해결, 위치확인을 통한 자녀의 신분안전 등을 기대하고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 자녀의 경우 문자나 SNS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시간제한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이용행태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완전 차단형’, 일일 허용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시간 관리형’, 차단이나 시간제한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는 ‘자율모니터링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은 시기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쩔 수 없이 차단수단을 받아들이는 ‘순응형’, 차단수단을 우회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소극적 회피형’, 실제로 차단수단을 무력화하여 사용하는 ‘적극적 회피형’으로 구분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영향으로는 차단수단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현상과 부모의 스마트폰 종속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영향에서는 스마

트폰을 중심으로 변화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놀이문화가 차단수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또래관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단수단에 대한 의무설치 정책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심층적 논의들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정책의 존폐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규제정책의 실효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강제 규제, 스마트폰 과몰입, 사생활 침해, 청소년 감시, 사회문화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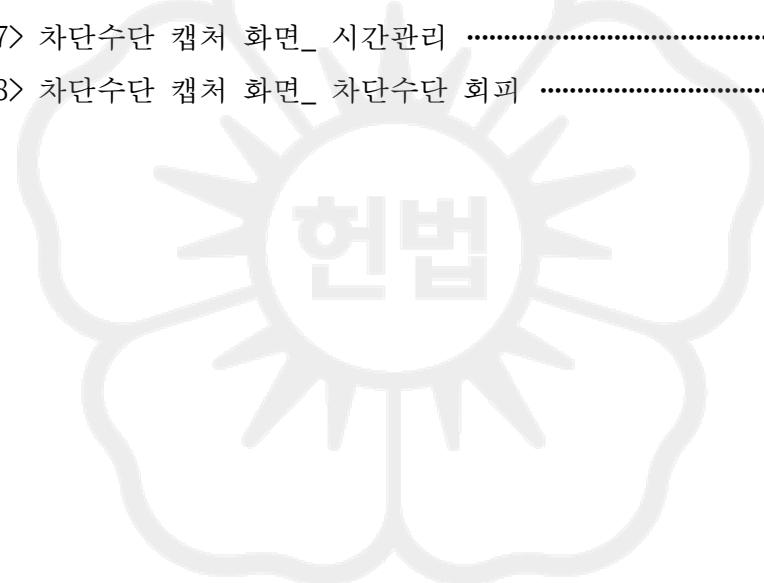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2-1〉 자율규제 유형	7
〈표 2-2〉 청소년 보호법	8
〈표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표 2-4〉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11
〈표 3-1〉 조사 및 불용어 예시	24
〈표 3-2〉 사용자사전 및 은어·축약어 예시	25
〈표 3-3〉 응답자의 구성	28
〈표 4-1〉 부모 게시글의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2
〈표 4-2〉 자녀 게시글의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2
〈표 4-3〉 부모 게시글의 근접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3
〈표 4-4〉 자녀 게시글의 근접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3
〈표 4-5〉 부모 게시글의 매개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4
〈표 4-6〉 자녀 게시글의 매개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34
〈표 4-7〉 부모 5군집 세부 주제 분야 키워드	36
〈표 4-8〉 자녀 4군집 세부 주제 분야 키워드	38

그림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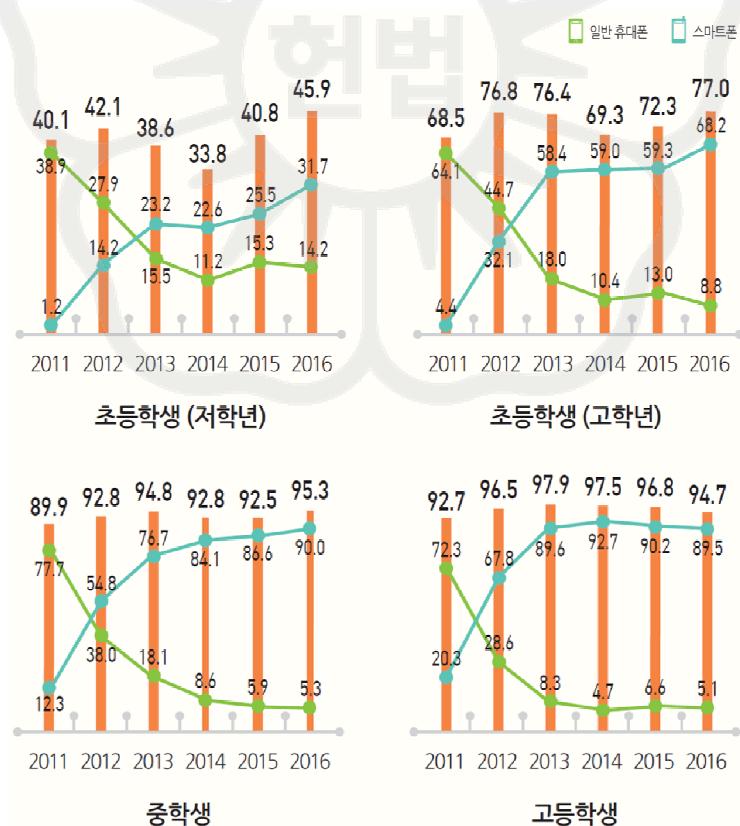
<그림 1-1> 어린이 및 청소년 휴대폰 보유 현황	1
<그림 2-1> 스마트보안관 캡처 화면	12
<그림 2-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흐름	13
<그림 3-1> 연구 개요	22
<그림 4-1> 부모 게시글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30
<그림 4-2> 자녀 게시글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31
<그림 4-3> 부모 게시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빈도 13이상)	36
<그림 4-4> 자녀 게시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빈도 7이상)	37
<그림 4-5>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긍정적 인식	40
<그림 4-6>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부정적 인식	44
<그림 4-7>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시간관리	46
<그림 4-8>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회피	52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속해 디지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정의한다(Prensky, 2004). 과거의 청소년이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를 소비한 반면,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청소년은 인터넷, 스마트폰, VR 등 유비쿼터스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중심매체는 기존 인터넷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19.2%에서 2014년 69.9%로 대폭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의 77.0%와 중·고등학생의 90%이상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그림 1-1> 어린이 및 청소년 휴대폰 보유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이러한 미디어기기 전반의 스마트화 진행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지만, 여성가족부, 종교집단, 학부모 모임, 디지털 콘텐츠 심의 관련 기관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이용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나 유해정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큰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유해정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유해매체물 접속 차단수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의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스마트폰 신규 가입 시에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유해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 법은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논란을 가져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에 제기되는 논란의 한 축은 청소년을 유해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차단 기능 이외에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감시 할 수 있도록 추가된 기능 때문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이용 시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관리부터 설치된 기타 앱의 개별적 조절관리, 나아가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관리 기능을 부여받는다. 이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부모에 의한 감시문제와 과도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 2의 온라인 게임 관련 셧다운제와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옵트아웃(Opt-out)¹⁾ 조항의 부재로 인한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니고 있어 국가 주도의 강제적 규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실효성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신생 규제영역에 대한 실증 연구나 본 규제정책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탐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본 규제

1) 옵트아웃(Opt-out)이란 ‘~에서 탈퇴하다’의 의미를 지닌 영단어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일컫는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차단수단 설치는 옵트아웃 조항이 없어 부모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과 부모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가 본 규제정책의 실효성까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의 청소년규제정책은 여성가족부 중심의 정책으로 인터넷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정책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사회 합의적이라기보다 매우 탑다운(top-down)의 일방적인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있다(서희석, 2015). 그러나 수립된 정책이 효용을 지니고,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매체의 매체적 특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황성기·최승훈, 2001).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청소년 스마트폰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스마트폰에서 유해콘텐츠 차단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민순호 외, 2013)과 스마트폰 오픈마켓 내 유해콘텐츠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이정기·오대영, 2014). 반면, 실제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의 규제가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수용자 관점에서의 연구로는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규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지만(오대영·이정기, 2015), 시행령 이전의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 연구결과가 현 상황을 나타내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아울러, 아직까지 청소년과 부모가 본 규제정책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 차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에 대해 실제 차단수단의 이용자인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진다. 2015년 4월 16일 시행령 이후 스마트폰에 가입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과정을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 간 차단 앱을 접근하는 인식의 차이는 어떤지, 이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정책의 존폐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규제정책의 실효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온라인 규제 정책

1. 규제정책의 개념과 특징

규제(regulation)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규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Lowi(1972)는 규제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정치적 특성에 따라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Ripley와 Franklin(1984)은 규제 정책을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체, 조직 등 집단의 특정 활동에 대하여 제제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의 정책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개인이 사회현상과 연결되어 말할 때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부분의 규제라는 의미에서 정부규제라 하고, 최병선(2003)은 바람직한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부규제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력(coercive power)을 가지고 특정한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의 유형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율규제가 존재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적 규제의 단점은 정부의 강제력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규제집단과 피규제집단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갈등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남궁근, 2012). 또한, 기술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규제대상의 변화 속도를 전통적 정부규제로 수용하기에는 제도적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존의 전통적 레거시 미디어와는 다르게 정부 주도의 강제규제정책보다 피규제 집단에 의한 자율규제정책을 택하는 추세이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규제의 당사자 또는 집단이 법령상 스스로 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학 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등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인터넷 역기능을 빠르게 차단하며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김민석, 2015).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유형은 스마트폰이라는 신생 규제영역을 시행령을 통해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정부규제이다. 이 점에서 본 의무설치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 가능성을 저해하고, 시민으로서 자율적인 자기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체계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규제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민간 영역의 자율성, 자발성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청소년 필터링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여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를 중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자율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문제도 지금까지의 국가규제 및 정부규제의 대안 혹은 보완적 수단으로 자율규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율규제의 개념과 유형

가. 자율규제의 개념

자율규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흔히 자율규제라고 하면 규제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규율 되는 상황으로 오해하지만,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이라는 개념은 개인적 자율과 집단적 자율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개인적 자율규제 보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그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율규제가 일반적 의미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이다(이민영, 2010). 비슷한 맥락에서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피규제 산업 또는 업계가 스스로를 제약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개별 사업자나 혹은 업계가 협회의 결성을 통하여 스스로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약을 제정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최병선, 2003).

자율규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로 탈규제(de-regulation)나 비규제(un-regulation) 의미와 자율규제의 의미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거나 시장요인을 약화시키는 공적 규제의 완화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탈규제(de-regulation) 또는 정부로부터의 회피, 정부와의 대결 혹은 계획된 분리를 의미하는 비규제(un-regul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은 정부규제와 완전히 독립해 있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한다(강희원, 2002). 요약하자면 자율규제는 정부의 규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개인과 업계가 상호동의 하에 협의하여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수·유승호, 2009). 이렇듯 자율규제란 ‘정부가民間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를 지칭하여 사용된다.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民間 또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한다는 의미이다(Price&Verhust, 2000). 이는 어떠한 규제의 틀을 해체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Ukrow, 1999).

이상을 정리하여 황승흠(2008)은 자율규제 체제란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 시스템’과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자율규제체계가 정부규제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Campbell(1999)은 효율성, 유연성, 쉬운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산의 절감 등을 거론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업계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는 관련 규약을 정비할 때 정부규제에 비해 훨씬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자율규제는 규정의 제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자발적 참여과정으로 인해 쉽게 동의를 얻을 수가 있고, 집행 감독을 위해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규제와는 달리 이를 집행하는데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반면에 자율규제의 단점으로는 정부규제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자율규제는 자율 규범 및 이의 자발적 준수를 담보로 하기에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입법으로 제도화되는 법적 규제와 달리 국가의 강제력이 없다. 또, 자율규제는 종종 여타 관련 당사자들, 특수한 이해집단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고(황승흠, 2008),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나. 자율규제의 유형

정부 개입의 정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율규제 분류 기준 중 하나이다. 자율규제는 정부에 의해 규제 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 영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고 관리되는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최병선, 2003). 보통 이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자율규제를 분류하는데, Price&Verhust(2000)는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명령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승인적 자율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자발적 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하고 있다. 한편, Gunningham& Rees(1997)은 자발적 자율규제, 완전 위임 자율규제, 부분위임 자율규제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외에도 호주 정부 보고서(Ovum Report)는 정부의 개입 정도와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의 선택에 대한 영향에 기초하여 자율규제 유형을 자율규제 시나리오, 정부의 자율규제 촉진 시나리오, 정부의 자율규제 강제 시나리오, 정부의 필터링 차단 실행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있다.

황승흠(2008)은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역설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율규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했으며, Price&Verhust의 논의와 호주 정부 보고서의 분류법을 결합하여 정부의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① 전적으로 법적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의 직접 실행 모델은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비용 문제가 있고, ⑥ 정부의 법적 규제 없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모델은 이상적이며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는 하지만 규제의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 두 모델 모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유형만을 아래 <표 2-1>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2-1> 자율규제 유형

	자율규제 촉진모델	자율규제 조건부 강제모델	자율규제 승인 모델	자율규제 의무 모델
속성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모델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제하는 모델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모델	정부가 법적 규제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명령 또는 강제하는 모델
조건	선한 사마리아 조항	사업자 행동강령의 자율적 실행	사업자 행동강령의 정부 승인	강력한 감독기관의 존재 필요

사례	미국의 연방 통신품위법	호주 온라인서비스법 의 공동규제 체제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 호주간협약	싱가포르 방송법의 인터넷 사업자 면허제
적음		정부 개입의 정도		큼

자료: 황승흡(2008) 재구성

제 2절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둘러싼 논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스마트폰은 현재 약 83%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보편화된 매체로서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접속 경로로 모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기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범위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명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2-2〉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1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의2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현·음향 또는 영상정보
제2조의3	“청소년유해매체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성인의 접근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

한 콘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고 명시적인 목록으로 고시하는 제도이다(황승흠·황성기, 2003).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해기준은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⑥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불량만화 등 단행본 위주의 간행물에 유해성 심의규제가 문제가 되었지만, 점차 매체 환경이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로 변화함에 따라 유해매체물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반찬결, 2012).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 음반, 음악파일, 공연, 신문, 잡지, 간행물, 옥외광고 등 미디어 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심의를 받는 유해매체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정책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 유해매체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화나 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16일 유해콘텐츠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2-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 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관한 설치안내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서(<http://www.wiseuser.go.kr/>) 정보를 제공 중이다. 차단수단의 종류로는 2016년 2월 26일 기준 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가 제공하는 총 19가지의 유·무료 앱이 있었으나, 현재(2016년 11월 1일)는 총 7가지의 차단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은 약 443만 1000여명으로 이 중 실제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차단수단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약 50%인 221만 9249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그 중 36.9%인 81만9438명이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 가입자’로 추정돼 청소년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차단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을 막기 위해 만든 차단수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집단압력이 높게 가해질수록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히 집단의 압력을 경험할수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경험빈도가 증가한다(임원선, 2008). 청소년에게 온라인 혹은 스마트 폰이라는 매체가 어떤 의미인지 폭넓은 이해 없이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강제 정책들은 청소년의 반발심과 일탈을 부추기므로 규제 대상

2) 이윤주, “김성수, 청소년 10명 중 7명에게 유해물 차단앱은 무용지물”, 2015.10.06., 경향신문

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2-4〉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서비스명	개발사	주요기능	비용
T청소년유해차단	SKT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SKT 가입자만 이용가능)
T청소년안심팩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 앱 이용시간 설정 ·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무료 (SKT 가입자만 이용가능)
올레자녀폰 안심 프리	KT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KT 가입자만 이용가능)
올레자녀폰 안심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 앱 이용시간 설정 ·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유료(2,200/월) (KT 가입자만 이용가능)
U+자녀폰지킴이	LGU+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LGU+ 가입자만 이용가능)
U+자녀폰지킴이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 앱 이용시간 설정 ·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유료(2,200/월) (LGU+ 가입자만 이용가능)
엑스키퍼 가드	지란지교 소프트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자료: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현황과 논쟁점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현황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나 유해정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이하 MOIBA)와 함께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 후 2013년 6월 교육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보안관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설치를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 스마트보안관의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을 넘지 않았으며, 2,615명이 평가한 평점은 1.7점(5점 척도 기준, 2014년 7월 24일)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남긴 리뷰들은 대체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오대영 · 이정기, 2015).

이 밖에 SKT, KT, LG U+ 등 통신사업자 또한 각각 T청소년 안심서비스, KT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 LG U+자녀폰 지킴이 등을 유·무료로 제공하였다.

스마트보안관 작동 화면(1)	스마트보안관 작동 화면(2)
<p>SmartGuard mobile app interface showing two main options: 'Child Protection App Execution' (for parents) and 'Parental Control for Child Smartphones' (for guardians).</p>	<p>SmartGuard mobile app interface showing the 'Usage Time Management' section, which includes a timer input field for setting usage limits.</p>

<그림 2-1> 스마트보안관 캡처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증가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에 의한 음란·폭력적인 앱이나 웹 등이 청소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에 2015년 4월 16일 스마트보안관과 같은 유해콘텐츠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5년 9월 20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소속 시민단체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의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앱 자체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음이 알려졌다. 제대로 보안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앱이 배포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 상황이 되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오픈 마켓에서 즉시 내리고 이용자들 역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보안관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오픈 마켓에서 스마트보안관을 삭제했다.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보안관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 본 앱을 설치해 사용 중인 청소년은 2015년 7월말 기준 전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398만 명의 약 10%인 38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³⁾ 11월 11일에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발전과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존가입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한 건 의무 사용을 강요한 이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였다.⁴⁾ 이 후 현재 신규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청소년은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SKT T청소년 유해차단, KT 올레자녀폰 안심프리, LG U+자녀폰 지킴이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그림 2-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흐름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논쟁점

시행령 이후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본 절에서는 시행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차단애플리케이션이 필터링 이외의 모니터링과 스마트폰 앱 사용 통제의 기능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박지환, 2015). 이 기능은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현황 조회 및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위치

3) 손경호, “해외 NGO까지 스마트보안관 앱 문제삼은 이유”, 2015.11.03., ZDNet Korea.

4) 오픈넷,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2015.11.16., 슬로우뉴스.

추적,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SNS등으로 수신되는 문자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강제적 차단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 반적 행동자유권, 알권리,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둘째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자녀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혹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는가에 관한 통 제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족의 자율성 명예에 정면으로 반한다(황성기, 2014). 셋째로, 음란물 관련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음란물인지 아닌지 식별할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합법 콘텐츠 필터링 가능성 으로 인한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의 문 제인데 시행령 이전의 청소년 가입자나 부모명의의 청소년 이용자는 차단 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아닌 iOS 사용자는 차단 앱을 쉽게 삭제 할 수 있으며 삭제하여도 부모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시행령은 청소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차단 앱이 불가능함 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8월 30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 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제 3절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초등학생~고등학생)의 스마트폰(키즈 폰, 피쳐폰 제외) 보유율은 77.6%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스마 트폰을 통해 초등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는 게임, 인스턴트메시지, SNS, 책/만화(웹툰)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임보다는 SNS, 음악 등 이용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녀의 차이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편향성이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게임 이용이 압도적이었고, 여 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인스턴트메시지나 SNS, 음악, 책/만화(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 폰을 더 이상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인스턴트메시지나 게임을 통해 오락

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래집단간의 유대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곽민주·이희숙, 2009).

그동안 청소년 스마트폰에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를 밝히려는 연구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로 이루어져왔다. 박준범(2000)은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동기를 과시 지향성, 프라이버시 지향성, 편의 지향성으로 보았다. 또래집단이라는 관계에 속해있는 청소년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과시 지향성), 또래 집단과의 은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프라이버시 지향성),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문화적 성향이 편리한 휴대폰의 과도한 소비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편의 지향성). 비슷한 맥락에서 나은영(2005)은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동기를 ‘관계-정보’ 차원과 ‘오락성-진지함’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징적·오락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사용이 오프라인상의 또래들과 교우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영선 외(2013)는 스마트폰이 주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안하고 초조하며, 친구들과 멀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휴대전화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오락성과 기술적 측면에만 주목하기 때문이었다(김경미·엄유식, 2014).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 생활세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이승형·강희수(2015)는 스마트폰 문화를 문화적 존재로써 청소년의 내밀한 세계를 보여주는 문화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안에서 청소년은 개방적이고 소통이 자유로운 스마트폰 문화 속에서 세계를 지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관계지향적, 자기창조적, 유희성, 탐구성을 지니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스마트폰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소식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를 통해 친목 교류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정보를 생성, 공유하는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으로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 받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스마트폰 이용 후 부모님으로부터의 구속·감시는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또래관계 단절과 교류관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자녀의 이용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제언하고 있었다(김경미·엄유식, 2014; 이영선 외,

2013).

2.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스마트폰 과몰입이란 보통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이용행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박지선, 2012).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대표적인 스마트폰의 역기능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그동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김기태 · 이현주 · 문신일(2016)은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친구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압박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을 부추겨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청소년에게 또래친구와의 관계유지는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매체환경이고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박은민 · 박기희,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직 ·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지지를 얻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현 · 정인경, 2015). 때문에 스마트폰이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소구하기 쉬운 미디어라는 점과 스마트폰 과몰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면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안정임, 2013).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부모와 자녀 간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과 미디어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이숙정 · 전소현, 2011). 미디어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접근하고, 받은 메시지를 평가하고, 능숙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EAVI, 2011).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 디지털 기술에 더 능숙하고 기술에 대한 활용, 관여, 제작 동기가 더 크게 나타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에는 자기표현, 친밀감 형성, 참여의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는 긍정성과, 음란물 노출이나 악성 댓글에 대한 노출 등의 부정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는 하나의 통합적인 미디어 환경 내에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 리터러시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안정임 · 서윤경 · 김성미, 2013).

그럼에도 이러한 미디어 리터리시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하며 특히 부모의 미디어 중재는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현명하게 불법·유해콘텐츠를 대응하는 방식을 교육하기보다 이제는 국가로 인해 강제적 규제가 될 공산이 크다.

3. 청소년 매체 이용의 사회·문화적 영향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복잡한 사회문화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이 급증하면서, 매체 이용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그리고 주류 문화로의 도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경상, 2014). 또한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및 사회참여 역시 두드러짐을 보이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매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따라서 청소년문화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회 환경의 건전성과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청소년문화와 우리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일상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해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하겠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상호간에 의존과 집합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둘 이상이 모인 인간의 집단을 사회라 정의하고 사회학은 그 사회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김사현, 2000). 이 때, 사회적 영향이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문화를 내부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Triandis, 1979). 또한, 사회적 영향은 커뮤니티의 행동 패턴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영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hattacherjee and Sanford, 2006). 이는 흔히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사회적 영향은 정보기술 이용과 직접 관련을 가지거나 정보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관련을 갖는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및 생활방식과 육체적·정신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한 문화는 각 사회의 환경 요소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환경에 따라 각 사회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이주형 외,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적 영향은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고정된 제도나 체제가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 경

험 속에서 부단히 해석되고 실현되는 일종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분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방식들을 갖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펼치며 서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청소년들의 생활에 매체 이용이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은 학업에 쓰기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은 물론 틈틈이 휴식과 놀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기의 의미는 단순히 전화통화를 뛰어넘어 SNS 활동, TV 및 동영상 시청, 인터넷, 음악, 게임과 같은 다양한 여가 및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인식되어 왔다 (배상률 외, 2013).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아 청소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감수성이 제한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드러나는 청소년문화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아직까지 시행초기인 관계로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규제대상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청소년을 오로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을 규제할 뿐, 청소년들이 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이용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아직까지 차단수단의 한계에 대해 규명한 연구가 미미한 시점에서 정책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분석하여 다룬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연구의 내용이 부모와 청소년의 입장을 모두 대변한다기보다는 부모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입장을 동시에 비교분석한 연구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 상황은 가정에서 부모의 제한적 중재만이 가능한 실정으로 이러한 중재방식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자녀의 자율성과 사생활 침해로 인

해 자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모 역시 본인이 경험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예측되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도입 전과 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자녀 간의 문제점과 이러한 갈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선택적 설치가 시행령을 통해 의무 설치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2015년 4월 시행령 실시 이후 스마트폰을 개통한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범위로 한다. 차단 앱은 초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무료로 배포하였던 스마트보안관과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SKT T청소년 유해차단, KT 올레자녀폰 안심프리, LG U+자녀폰 지킴이 등) 총 19가지의 유·무료 앱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대상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될 차단 수단 관련 인터넷 게시글과 실제 심층 인터뷰 대상자인 시행령 이후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과 부모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심층인터뷰 전 사전분석의 단계로 부모와 자녀의 게시글을 각각 수집하여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의 분석대상은 청소년 전체가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본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이란 다양한 법령별 청소년 연령기준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과 관련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그러나 시행령의 도입 전후로 청소년 휴대폰 보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90%의 보유율을 유지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경우 60%에서 72.3%로 12.3%가 상승하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의무설치가 2015년 4월 16일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마트폰 보유자인 중·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스마트폰 신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초등 학생 고학년생이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경우 저학년 학생보다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경험 및 차단 앱에 대한 의견을 자신의 말로 충분히 서술할 수 있고, 이용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시각에서 인터뷰할 수 있어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특이점은 앱을 이용하는 주체가 스마트폰의 실

소지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 앱을 이용하여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부터 특정 앱의 이용시간 조정 및 차단까지 광범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부모의 관점에서 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이용평가와 인식의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므로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과 부모로 확대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전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 이용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또한, 연구 참가자들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내면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밝히고, 이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무규제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관련 논의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 **연구문제 1.**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 ❖ **연구문제 3.**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

제 2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1의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이용에 대한 심층인터뷰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란 특정 주제나 이슈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추출된 키워드간의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키워드간의 연관도 계산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이수상, 2014).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키워드 간의 관계들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신,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보안관’이라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여 현상에 대한 큰 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단계의 연구 개요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네이버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특정 키워드 입력 후 검색되는 부모와 자녀의 게시글이다. 동일한 키워드(스마트보안관, 엑스키퍼 등)를 입력하되, 부모와 자녀간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은 청소년이 활동하는 네이버 지식인과 부모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집하였다. 부모의 경우 특정 정보의 공유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 학부모 커뮤

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커뮤니티 보다는 지식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부모와 자녀가 작성한 게시글인지 수작업으로 통제하는 작업을 거쳐 형태소 분리 및 불용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석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자 사전을 정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할 키워드를 정규화하고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키워드 분석 과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통해 출현 키워드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동시출현 빈도로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로 중심성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부모는 네이버카페 가족/육아 부분 랭킹 Top100 카페를, 자녀는 네이버 지식인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네이버 가족/육아 카페는 주로 육아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모들의 커뮤니티로 회원가입이 부모들로 한정되어있기에 부모 게시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였다.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이용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분석 키워드인 스마트보안관 등이 스마트폰 가입자인 청소년과 부모만 이용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청소년이라고 밝히거나 작성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엄마, 아빠 등)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게시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관련 게시글을 추출하기 위한 키워드로 네이버지식인과 가족/육아 Top100 카페에서 ‘스마트보안관, 청소년 안심팩, 자녀폰안심프리, 자녀폰지킴이, 엑스키퍼’ 5가지의 키워드 중 한가지 키워드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 게시물의 작성기간은 시행령 실시 후인 2016년 4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6일 까지 총 1년 6개월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모 카페에서는 총 247건, 지식인에서는 총 474건이 수집되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해당 웹사이트를 크롤링 하였으며, 크롤링은 R 3.3.2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부모 카페에서 68건의 광고성 게시글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에서는 청소년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 36건을 확인하여 모두 분석대상에

5)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광고성 게시글이란 글쓴이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나 통신3사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하는 등 광고성 글임을 알리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게시글을 의미한다.

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이 되는 게시글은 부모 179건, 자녀 438건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데이터가 자녀와 부모 각각 다른 자원에서 수집되었고, 최종 수집 데이터 수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동일한 샘플의 수를 추출하고자 비복원 추출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모 데이터 100건, 자녀 데이터 100건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데이터 수집 후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어절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에서 현상이나 관점을 나타내는 주요 단어인 명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특수문자나 문장기호, 키워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은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추출된 용어는 ‘우리말샘’과 ‘한나눔’ 사전을 기반으로 추출되었으며, KAIST ‘품사 태그셋’을 활용하여 품사를 구분하였다. 그 후 ‘사용자사전’을 정의하여 추출된 키워드 중 복합 명사가 분리되어 그 의미가 모호해진 키워드를 다시 하나의 키워드로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게시글의 경우 은어나 축약어 등 통일되지 않은 키워드가 존재하여 이를 다시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게시글에서 중복 출현하는 키워드는 하나만 남기고 제거하였고, 겸색 키워드였던 ‘스마트보안관, 엑스키퍼, 자녀폰지킴이, 청소년안심팩, 자녀폰안심프리’는 대부분의 게시글에 출현하여 분석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어 제외하였다. 2음절 이상 7음절 이하의 키워드로 부모는 135개(빈도수 10이상), 자녀는 122개(빈도수 5이상)를 최종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표 3-1> 조사 및 불용어 예시

조사	-에서, -로, -것, -간의, -과, -까지, -까지를, - 때문에, -되었던, -로부터, -로의, -로서, -로써, -의, -부터, -와, -로의, -로서의, -을, -를, -와의, -하여 등
불용어	가끔, 가량, 가손, 강국, 같구, 고교생, 겨울, 그럴까봐, 그런거에, 그걸로, 기가막힌, 껌딱지, 나라, 나만, 날짜, 내장, 내소, 다른, 닷컴, 당근, 달, 동위, 두배, 두딸 등

최종 분석대상 키워드 선정 후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생성하여 중심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제의 세부 하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해 부모는 동시출현빈도 13이상, 자녀는 동시출현빈도 7이상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서는 Gephi 0.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2> 사용자사전 및 은어·축약어 예시

	전처리 전	전처리 후
사용자사전	엑스 키퍼, 스마트 보안관, 과도 기, 유해정 보, 비활 성화, 사생 활, 공 기계, 무력 화, 유해 매체, 유해 콘텐츠, 차단 수단, 학교 폭력, 자녀폰 지킴이, 자녀폰 안심드림, 쿠키 즈 등	엑스키퍼, 스마트보안관, 과도기, 유해정보, 비활성화, 사생활, 공기계, 무력화, 유해매체, 유해콘텐츠 차단수단, 학교폭력, 자녀폰지킴이, 자녀폰안심드림, 쿠키즈 등
은어 및 축약어 통일	카톡, 페북, 와파, 카스, 앱, 애플리케이션, 메세지, 메시지, 스보, 모펜, 쪽스키퍼 등	카카오톡, 페이스북, 와이파이, 카카오스토리, 어플, 메시지, 스마트보안관,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등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단순 빈도분석과 동시출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순 빈도분석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키워드를 분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별로 어떤 키워드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은 특정 범위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의 패턴을 통해 해당 주제 영역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허고은 · 송민, 2013). 동시출현빈도가 높을수록 키워드 간의 관계가 밀접하여 특정분야의 연구 경향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이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어떤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지 현상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은 분석 대상을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형성된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김용학, 2013). 분석대상의 군집화를 통하여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지형태, 이용방법, 감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 3절 심층인터뷰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부모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용하는 행태와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는 하나 또는 복수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특정한 사례가 갖는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 방법이다(Merriam, 1998). 이러한 사례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는 다르게 심층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과 경험을 담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이해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ake, 1981).

따라서 청소년들의 차단 앱 이용 경험, 이에 대한 부모의 평가, 부모와 자녀 간 나타나는 어려움, 갈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주제의 특성상 각각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차단 앱의 종류와 기능이 다르고, 스마트폰을 대하는 사고나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상이해 객관적인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심층인터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이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한 부모와 접촉하여 부모와 자녀의 심층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를 올려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의 조건이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과 시행령 이후 차단 앱 가입자이므로 최종적으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 참여자로만 제한하였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2015)의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콘텐츠 접촉률은 연령별, 성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모보다 기술적 능력이 앞서는 자녀는 나이와 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에 따라 부모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Livingstone & Bover, 2006). 이는 연령별로 이용 경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4, 5, 6학년 별로 남학생, 여학생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부모 5명, 자녀 6명 총 11명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가. 인터뷰 과정

심층인터뷰는 오늘날 질적 연구방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질적 연구수행을 위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2). 응답자와의 대화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파악하거나 알 수 없었던 사실들까지 파악하는 데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심층인터뷰와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인터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부모와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공해 동의를 구했으며, 본 연구의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였다. 또한,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연구 결과의 공유를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시간은 각 참여자들의 일정에 따라 주로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치는 오후부터 학원 수업을 마치는 저녁 늦게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이루어졌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인터뷰할 경우 자녀의 인터뷰 내용이 자유롭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자녀와 부모 각각 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순서는 자녀를 먼저 실시하고, 진술된 자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다시 부모에게 질문하는 순서를 유지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개인당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자녀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자녀가 편하게 느끼는 공간인 자녀의 방안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준비된 질문을 하기 전 자녀들이 즐겨보는 인터넷 동영상이나, 즐겨하는 게임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부모의 경우 주로 안방이나 거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진술된 자녀의 인터뷰 내용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인터뷰의 유형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로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인터뷰하고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두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 파일 이외의 수집한 관련 자료는 연구 참여자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작동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다. 이는 현재 차단 앱의 종류와 기능의 다양성이 가정 내에서 앱을 이용하는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응답자의 구성

인터뷰에 응한 부모와 자녀는 총 11명으로 부모가 5명,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3명이었다. 부모의 나이는 모두 40대 어머니였고, 자녀는 11살(4학년) 2명, 12살(5학년) 2명, 13살(6학년) 2명이었다. 응답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종류는 엑스키퍼모바일, 모바일펜스, T청소년안심팩, 쿠키즈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4-1>에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차단수단의 종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응답자의 구성

자녀의 응답자 구성								
회차	이름(가명)	성별	나이	학년	차단 앱 종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	민아	여	11	초4	쿠키즈	1시간	이동시간, 저녁식사 후	SNS, 동영상
	민호	남	11	초4		2시간	이동시간, 저녁식사 후	동영상, 게임
2	지섭	남	13	초6	엑스키퍼모바일	1시간	이동시간	동영상, 게임
3	소미	여	13	초6	T청소년 안심팩	2시간	이동시간, 취침전	SNS, 동영상, 음악
4	성진	남	12	초5	모바일펜스	1시간	이동시간	동영상, 게임
5	유미	여	12	초5	T청소년 안심팩	2시간	이동시간, 저녁식사 후	SNS, 동영상

부모의 응답자 구성

회차	이름(가명)	나이	거주지	직업(부)	직업(모)	가정내 월소득
1	민호·민아 어머니	40대	경기도 의왕시	개인사업		500만원 이상
2	지섭 어머니	40대	경기도 안양시	회사원	주부	400만원 이상
3	소미 어머니	40대	경기도 성남시	개인사업	주부	500만원 이상
4	성진 어머니	40대	서울시 은평구	회사원	회사원	500만원 이상
5	유미 어머니	40대	서울시 송파구	개인사업	주부	500만원 이상

3.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구조화해서 자료 안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작업으로 이 안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이다(Bogdan&Biklen,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개방코딩’과, 분류된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범주화’,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 비교 확인하는 ‘범주 확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녹음 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전사하고, 귀납적 범주 과정을 통하여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특히 가정 내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 앱의 이용행태 및 인식의 차이가 본 연구의 주요 핵심이므로 분석은 부모와 자녀의 진술 내용 비교로 시작하였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제어나 핵심 단어들을 찾아 분류하고, 분류된 핵심 단어와 주제어들의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반복적인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의 목록이 드러나는 범주를 만들고, 완성된 범주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범주를 완성 하였다.

면담내용을 정리하고 논문에 인용할 때는 의미전달이 어렵거나, 해석이 애매모호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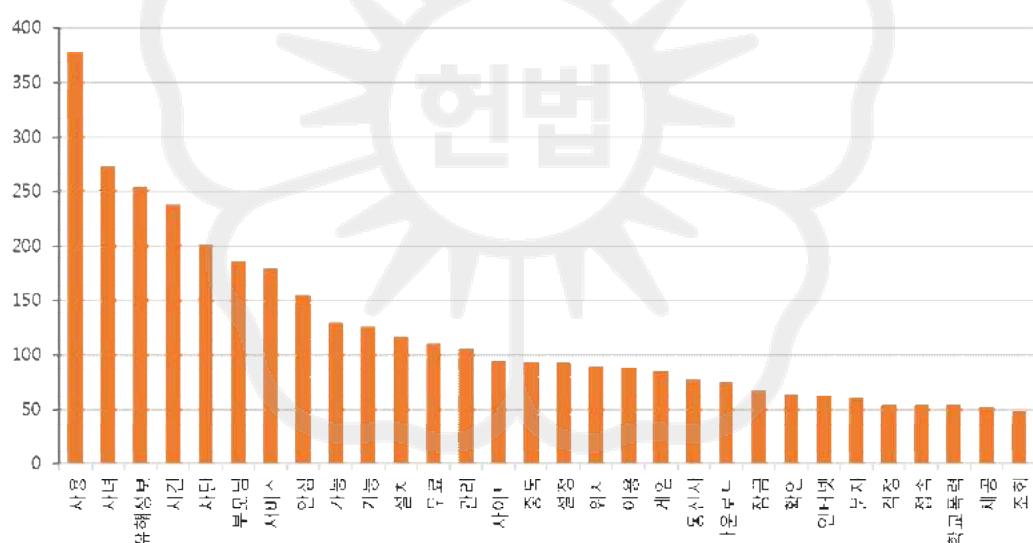
제 4장 연구결과 및 분석

제 1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차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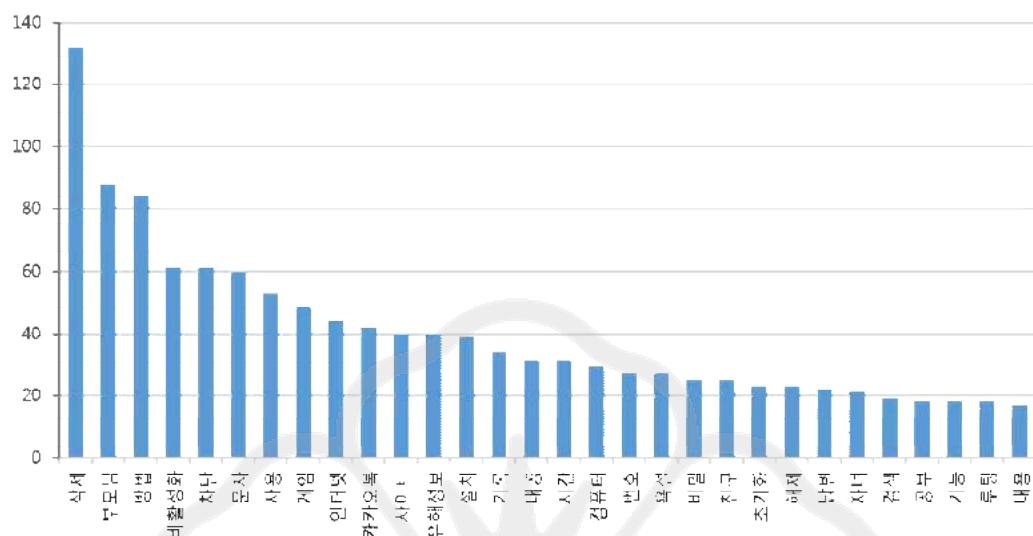
정규화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관련 게시글(부모 100건, 자녀 100건)의 키워드는 부모 135개(빈도수 10이상), 자녀는 122개(빈도수 5이상)이다. 이 중 상위 Top30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부모와 자녀 게시글 두 집단에서 상위 1, 2위 키워드로 나타난 ‘스마트폰’과 ‘어플’은 키워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부모 게시글의 키워드는 <그림 4-1>, 자녀 게시글의 키워드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 4-1〉 부모 게시글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부모 게시글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사용’이며 다음으로는 ‘자녀’, ‘유해정보’, ‘시간’, ‘차단’, ‘안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커뮤니티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시간’이 주요 관심사로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독’, ‘게임’, ‘유해정보’ 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의 ‘걱정’과 이를 차단수단을 통해 ‘차단’하고 ‘관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모 게시글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기능’, ‘제공’, ‘무료’, ‘서비스’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커뮤니티 내에서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공유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 자녀 게시글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다음으로 자녀의 게시글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삭제’로 나타났으며, ‘방법’, ‘비활성화’, ‘차단’, ‘문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지식인을 통해 차단수단을 ‘삭제’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게시글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활성화’, ‘차단’, ‘초기화’, ‘해제’, ‘루팅’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계정’, ‘인터넷’,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이용관련 키워드가 상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차단수단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부모 게시글은 차단수단을 통해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 유해매체 차단과 같은 정보 공유 측면의 이슈가 많고, 자녀의 경우에는 주로 차단수단의 삭제 방법에 대한 문의 측면의 이슈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특성은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 중심성(centrality) 분석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손동원, 2002). 연결망체계에서 중심에 위치할수록 다른 행위자에 대해 발

휘할 수 있는 통제권 혹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성 분석은 다시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중심성 값이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만 추출하였다.

1)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연결 중심성은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가지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함께 자주 공동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서화 · 조현석, 2014).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의 게시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뜻하는 프레임의 중심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표 4-1〉 부모 계시글의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degree-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degree-centrality
1	스마트폰	74	0.0607	11	유해정보	53	0.0434
2	어플	71	0.0582	12	설치	45	0.0369
3	사용	70	0.0574	13	기능	42	0.0344
4	자녀	62	0.0508	14	인터넷	38	0.0311
5	시간	61	0.0500	15	관리	37	0.0303
6	안심	59	0.0484	16	서비스	37	0.0303
7	차단	59	0.0484	17	설정	36	0.0295
9	부모님	57	0.0467	18	확인	35	0.0287
8	가능	56	0.0459	19	사이트	34	0.0279
10	무료	53	0.0434	20	위치	34	0.0279

〈표 4-2〉 자녀 계시글의 연결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degree-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degree-centrality
1	스마트폰	304	0.2430	11	인터넷	118	0.0943
2	어플	253	0.2022	12	내공	115	0.0919
3	삭제	208	0.1663	13	비활성화	115	0.0919
4	방법	207	0.1655	14	카카오톡	115	0.0919
5	부모님	189	0.1511	15	설치	114	0.0911
6	차단	139	0.1111	16	게임	109	0.0871
7	문자	138	0.1103	17	기록	92	0.0735
9	유해정보	128	0.1023	18	초기화	88	0.0703
8	사용	127	0.1015	19	욕설	87	0.0695
10	사이트	120	0.0959	20	친구	85	0.0679

2)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 평균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키워드 간의 근접 중심성이 높을수록 서로 근접한 키워드들이 다른 키워드들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Scott, 1991). 즉 상위에 있는 키워드일수록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4-3> 부모 계시글의 근접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closeness-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closeness-centrality
1	스마트폰	74	0.9737	11	유해정보	53	0.7629
2	어플	71	0.9367	12	설치	45	0.7048
3	사용	70	0.9250	13	기능	42	0.6852
4	자녀	62	0.8409	14	인터넷	38	0.6607
5	시간	61	0.8315	15	관리	37	0.6549
6	차단	59	0.8132	16	서비스	37	0.6549
7	안심	59	0.8132	17	설정	36	0.6491
9	부모님	57	0.7957	18	확인	35	0.6435
8	가능	56	0.7872	19	위치	34	0.6379
10	무료	53	0.7629	20	사이트	34	0.6379

<표 4-4> 자녀 계시글의 근접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closeness-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closeness-centrality
1	스마트폰	304	0.9059	11	인터넷	118	0.6039
2	어플	253	0.7967	12	카카오톡	115	0.6007
3	삭제	208	0.7201	13	내공	115	0.5996
4	방법	207	0.7186	14	설치	114	0.5996
5	부모님	189	0.6906	15	비활성화	115	0.5996
6	차단	139	0.6264	16	게임	109	0.5944
7	문자	138	0.6252	17	기록	92	0.5761
9	사용	127	0.6138	18	초기화	88	0.5722
8	유해정보	128	0.6127	19	욕설	87	0.5712
10	사이트	120	0.6050	20	친구	85	0.5702

3)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 위치하면 할수록 그 노드의 매개 중심성은 높아진다(김용학, 2013). 매개 중심성은 다른 노드들 사

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연결망 내에서 잠재적인 통제력 및 영향력을 가진 노드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5> 부모 계시글의 매개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betweeness -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betweeness -centrality
1	스마트폰	74	0.000458	11	유해정보	53	0.000072
2	어플	71	0.000324	12	기능	42	0.000037
3	사용	70	0.000298	13	설치	45	0.000027
4	시간	61	0.000286	14	관리	37	0.000024
5	차단	59	0.000165	15	위치	34	0.000017
6	자녀	62	0.000139	16	인터넷	38	0.000015
7	안심	59	0.000119	17	설정	36	0.000011
9	무료	53	0.000111	18	문자	31	0.000011
8	가능	56	0.000099	19	서비스	37	0.000010
10	부모님	57	0.000089	20	확인	35	0.000009

<표 4-6> 자녀 계시글의 매개 중심성 상위 20개 키워드

번호	키워드	degree	betweeness -centrality	번호	키워드	degree	betweeness -centrality
1	스마트폰	304	0.017352	11	문자	138	0.000906
2	어플	253	0.008334	12	내공	115	0.000878
3	삭제	208	0.004677	13	친구	85	0.000749
4	방법	207	0.004408	14	설치	114	0.000739
5	부모님	189	0.003046	15	인터넷	118	0.000722
6	사용	127	0.001784	16	카카오톡	115	0.000617
7	차단	139	0.001322	17	시간	77	0.000605
9	게임	109	0.001168	18	비활성화	115	0.000576
8	사이트	120	0.000940	19	생각	61	0.000381
10	유해정보	128	0.000914	20	욕설	87	0.000359

중심성 분석 결과, 각각의 중심성 값이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부모의 키워드는 ‘사용’, ‘자녀’, ‘시간’, ‘안심’, ‘차단’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부모의 게시글에서 중심의미를 지닌 단어임과 동시에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삭제’

제’, ‘방법’, ‘부모님’, ‘차단’, ‘문자’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 결망 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매개 중심성의 경우 다른 중심성과 다르게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게 임이 자녀에게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키워드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중심성의 결과는 빈도 분석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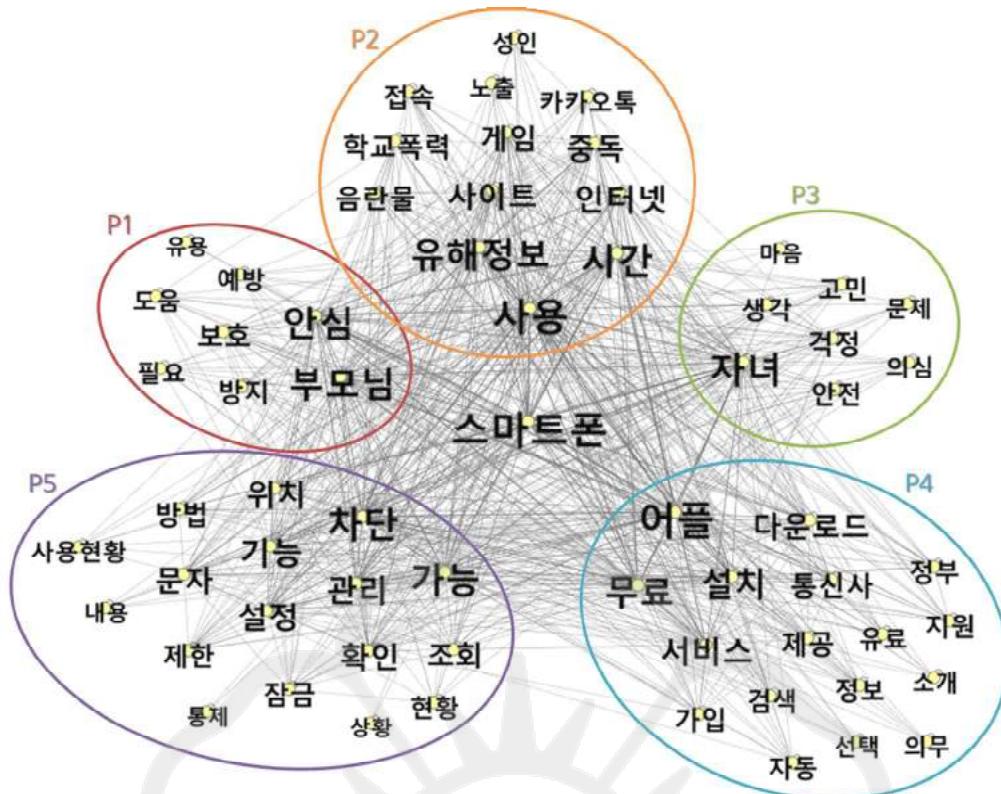
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관련 인식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부모는 동시출현빈도 13이상, 자녀는 동시출현빈도 7이상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시각화하였고, 이를 다시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세부 주제 분야를 파악하였다. 그래프에서 글자 크기는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글씨크기가 클수록 높은 중심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부모 게시글의 군집분석

부모의 경우 동시출현빈도 13이상으로 나타난 64개의 키워드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군집의 분류는 비슷한 의미의 키워드나 주제별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그림 4-3>에 시각화하고, <표4-7>에 정리하였다.

군집 P1은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평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부모에게 유용, 필요, 도움, 안심이 되는 수단이며 이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방지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집 P2는 [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 유해정보, 음란물, 접속, 게임, 중독, 성인, 노출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 P3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걱정, 고민, 의심, 문제 등 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집 P4는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로 부모가 정부나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차단수단에 대해 소개하는 정보적 키워드가 나타났다. 주로 서비스에 대한 유료나 무료 안내,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P5는 [차단수단의 기능]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단수단의 대표적 기능은 유해매체 차단, 자녀의 위치추적, 이용시간 관리, 스마트폰 사용현황 조회, 자녀의 스마트폰 잠금, 제한, 통제 등으로 나타난다.



<그림 4-3> 부모 게시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빈도 13이상)

<표 4-7> 부모 5군집 세부 주제 분야 키워드

군집번호	군집명	키워드
P1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평가	부모님, 안심, 보호, 방지, 필요, 예방, 도움, 유용
P2	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	사용, 시간, 유해정보,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게임, 중독, 학교폭력, 접속, 성인, 노출, 카카오톡
P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자녀, 걱정, 생각, 안전, 의심, 고민, 문제, 마음
P4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	어플, 설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통신사, 정부, 제공, 유료, 지원, 가입, 검색, 정보, 소개, 자동, 선택, 의무
P5	차단수단의 기능	차단, 가능, 위치, 기능, 관리, 조회, 확인, 설정, 문자, 방법, 사용현황, 제한, 잠금, 현황, 상황, 통제, 내용

2) 자녀 게시글의 군집분석

자녀의 경우 동시출현빈도 7이상으로 나타난 46개의 키워드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그림 4-4>에 시각화하고, <표4-8>에 정리하였다.



<그림 4-4> 자녀 게시글의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빈도 7이상)

군집 C1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목적]으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주로 카카오톡, 인터넷, 사이트, 게임, 네이버, 검색, 동영상, 사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 키워드가 차단수단(스마트보안관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차단수단과 자녀가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군집 C2는 [부모님의 차단수단 이용목적에 대한 자녀의 견해]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부모님의 차단수단 이용으로 자녀는 유해정보나 음란물이 차단되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문자 내용, 이용 기록 등이 감시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사생활침해라 생각하고 있었다. 군집 C3은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으로 자녀가 차단수단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나타났다. 특히 차단수단 삭제나, 비활성화, 해제, 무력화, 루팅, 초기화 방법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하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C4는 [자녀 게시글의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C3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보 요구성 글이 특징이다. 지식인이라는 특정 사이트 내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주고받는 내공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했으며, 답변이나 부탁을 요구하는 성격의 글로 해석 할 수 있었다.

<표 4-8> 자녀 4군집 세부 주제 분야 키워드

군집번호	군집명	키워드
C1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목적	자녀, 사용, 카카오톡, 사이트, 인터넷, 게임, 검색, 친구, 네이버, 컴퓨터, 동영상, 사진
C2	부모님의 차단수단 이용목적에 대한 자녀의 견해	어플, 부모님, 유해정보, 문자, 차단, 감시, 기록, 욕설, 내용, 시간, 확인, 관리, 기능, 음란물, 생각, 사생활침해
C3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	삭제, 방법, 비활성화, 설치, 해제, 비밀번호, 루팅, 안전모드, 무력화, 보안, 가능, 설정, 화면
C4	자녀 게시글의 성격	내공, 답변, 부탁

<연구문제 1>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 이용에 있어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게임, 중독 등에 관하여 걱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차단수단의 기능인 위치 조회, 시간제한, 스마트폰 관리 설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군집 분석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차단수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녀의 경우 차단수단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 무력화 등 사용하고 있는 차단수단 자체를 회피하려는 이용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심성이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가 카카오톡, 인터넷, 게임, 동영상, 사진 등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군집 분석 결과 자녀는 차단수단이 본인의 사생활침해나 감시,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층인터뷰 결과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지를 구성해 네트워크 분석으로 알아내지 못했던 내밀한 사실들을 파악하거나 더 깊이 파고들어 가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긍정론

· 긍정적 인식 : 시간관념의 형성,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 위치알람 등
부모들이 청소년 스마트폰유해물 차단 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단 앱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점, 차단 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을 질문하고 면담하였다. 대부분의 부모가 차단 앱을 통해 자녀의 부족한 시간관념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자녀가 여자아이거나 학년이 낮을수록 위치확인과 같은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중학생으로 진학 시 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방지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긍정적 수단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지섭이가 처음 핸드폰을 사고 한참 겨울방학 때 현실이랑 이거(게임)랑 혼동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폐인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섭 아 엄마는 그 꼴 못본다, 너가 이걸(엑스키퍼 모바일) 쓰면 시간관념은 좀 생길거다, 그랬죠. 지금은 시간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지가 조절해서 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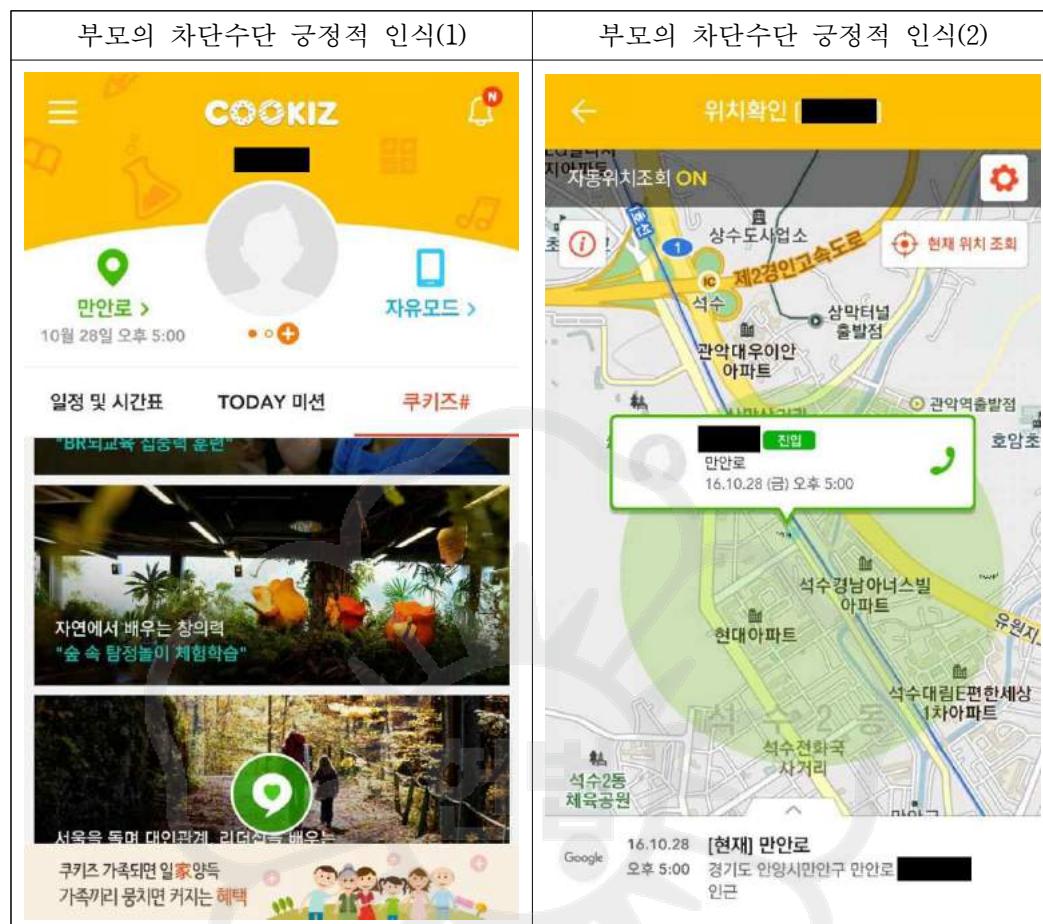
〈지섭(초6 남) 어머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안나오고, 30분만 한다고 그리고 조금만요, 조금만요 하면서 1시간 하고, 이거 때문에 엄청 잔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단이니까 잔소리 덜해서 좋죠.(웃음) 애도 시간 허투루 안보내고요.

〈성진(초5 남) 어머니〉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인 성진이와 지섭이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게임과 유튜브 게임동영상 시청이었다. 두 남학생의 부모님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과몰입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가장 큰 고민이라 대답하였다. 실제로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는듯한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 부모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단 앱이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나 시간관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수단이라 대답하였다.



<그림 4-5>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긍정적 인식

이게(쿠키즈) 좋은 게, 긴급 상황일 때 알림이 떠요.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울리는 데, 위험한 지역, 만약에 이 근처에 성범죄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게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주위에 있을 때 알림 같은 게 와요. 조심하라고. 그건 좋은 거 같아요. 위치는 오류가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면 수정해주고. 매시간 자동으로 어디라고 알림이 뜨니까 되게 편리하죠.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도 있고... 저는 계속 사용할 거예요. 걱정이 많이 안되니까.

<민호 · 민아(초4, 남여) 어머니>

위치 알림이 항상 와요. 학원, 학교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하면, 위치를 어디에 가면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도착하면 ‘도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자애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가끔가다 유미가 집에 올 때 SOS 호출 누르거든 요. 자기 위치 알리려고. 그게 괜찮아요.

<유미(초5 여) 어머니>

차단수단의 위치추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는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민호·민아 부모님과 초등학교 5학년인 유미의 부모님이었다. 민호·민아의 경우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로 부모님의 퇴근 시간 이전까지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녀의 스케줄이나 이동 동선을 직접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단 앱을 이용하여 위치알림을 받아보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즉, 차단 앱을 이용하여 자녀가 학원에 제대로 갔는지, 수업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 집에 조심히 귀가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수단이라 평가하였다. 유미의 경우 마지막 학원 스케줄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10시였고, 늦은 밤 안심귀가를 위해 위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학원에서 집까지 위치 조회가 주기적으로 가능해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의 귀가를 기다릴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차단 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안하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질텐데, 여자애들이 또 남자애들보다 훨씬 조숙하잖아요. (음란물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음란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죠.. 밖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차단 앱) 최소한의 장치인거 같아요.

〈소미(초6, 여) 어머니〉

제가 좀 유난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방학 때 크리스마스 때 얘를 스마트폰을 해준 게 좀 늦은 편이거든요. 그냥 폴더폰을 하다가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또 팔랑귀라 (웃음) 엄마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에 빠지면 정신 못차리고 공부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고 사줬죠.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관리하다보면 중학교가서 괜찮지 않을까 해요.

〈지섭(초6, 남) 어머니〉

부모님에게 차단 앱 사용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당장 지금보다는 향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소미 어머니, 지섭 어머니). 아직까지 자녀가 음란물에 접속하려는 시도를 하진 않았지만, 중학교 진학 시 사춘기 호기심으로 인해 음란물을 접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 때 차단 앱이 음란물 차단 수단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또 다른 답변으로는 중학생이 되기 전, 미리 차단 앱 이용을 통해 시간관리 경험을 쌓다보면 스마트폰 과몰입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차단수단에 대한 자녀의 부정론

- 부정적 인식 : 사생활 감시, 자기결정권 침해, 처지한탄, 억압감 등

차단 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질문에서 자녀들이 차단 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자녀들의 차단 앱에 대한 인식은 부모들과는 반대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자신의 문자내역 전송으로 인한 사생활 감시나 특정 앱 차단으로 인한 억압감,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자신의 처지한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 스스로 다음 학년으로 진학 할수록 스마트폰 차단 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더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친구들끼리 그냥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육 문자라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제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없는거가 제일 불편하고요. 감시당하는 기분? 기분 나빠요.

<소미, 초6 여>

제가 앱 하나 다운받을 때마다 뭐가 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확인을 받아야 되서... 옛날에 게임을 하나 깔았는데 그게 좀 폭력적인 거였어요. 저는 그런건지 모르고 깔았는데, 바로 엄마가 알고는 무작정 이거 왜 깔았냐고 하니까.. 아 나는 맘대로 깔 수가 없구나...

<유미, 초5 여>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 또래집단 내 친구관계는 남학생보다 훨씬 더 긴밀하고 복잡하며, 비밀적인 성향을 공유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서미선, 2009). 인터뷰 결과에서도 차단 앱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자신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미의 경우 차단 앱의 기능 중 친구들끼리의 문자 내역이 부모님에게 전송되는 기능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이 경우 자신의 문자 내역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사생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미의 경우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마다 부모님께 확인을 받거나, 설치 후 어떤 앱을 다운받았는지 부모님께 내역이 공개되고 있었다. 이는 차단 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되어 부정적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이거 시간이 끝났을 때는 화가 나죠. 제 친구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그래요. 친구들이랑 뭐 어디 놀러가도 저만 시간이 걸려있으니까.. 이 앱은 정말 나쁜 앱이에

요. 제 자유를 방해하니까요. 제가 핸드폰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줘요.

<지섭, 초6 남>

이게 (음란물처럼) 안좋은건 안좋은거니까 막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걸 막으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혼나면 일부러 더 하게 된다던가, 반발심도 생기고.. 그냥 좀 이상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성진, 초5 남>

이 앱이 싫어요. 너무 핸드폰에 앱이 많이 깔려 있어서... 한 개라도 더 지우고 싶은데... 여기서 제일 지우고 싶은 앱이 쿠키즈예요. 쓸모 없어요.

<민호, 초4 남>

차단 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남학생의 첫마디는 ‘너무 싫다’였다. 차단 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래 친구들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친구들도 차단 앱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자신을 포함하여 반에서 2-3명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친구들 중 본인만 차단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매우 불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차단 앱을 통해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발심이 생겨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왜 이러한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저는 근데요. 핸드폰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요. 엄마가 전화하고 문자만 빼놓고 다 막아놔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5학년 되면 엄마랑요... 이거 가지고... 그럴 거(싸울 거) 같아요.

<민아, 초4 여>

중학교 올라가면 좀 놀리가고 싶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그럴텐데... 엄마가 다 아니니까 좀 다툴 일이 많아질 거 같아요.

<소미, 초6 여>

이거 계속 쓸 거 같기는 한데... 이거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조금씩 엄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시간이라도 늘려달라고 할거에요.

<지섭, 초6 남>

계속 쓸까봐 좀 무서워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 있고, 무슨 앱을 쓰는지, 몇 시간 했는지까지 나오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거 같아요.

<성진, 초5 남>

차단 앱을 향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모두 계속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하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학년으로 진학 시 차단 앱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님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하고 있었다.

자녀의 차단수단 부정적 인식(1)	자녀의 차단수단 부정적 인식(2)												
 <p>010- [REDACTED]</p> <p>학교폭력의심문자(00/04)</p> <table border="1"> <tr> <td>문자 수신함</td> <td>보관함</td> </tr> <tr> <td>  SMS 004 2016.10.14 오후 03:44 갈취(원들고) 엘에에 윤서는5천원 들공ㅎㄷㅎ 나는 6천원들고왔ㅈ어 </td> <td></td> </tr> <tr> <td>  SMS 003 2016.04.08 오후 07:38 폭행(때렸) 나때렸으면서 </td> <td></td> </tr> </table> <p>KAKAO 002 2016.03.04 오후 07:25 괴롭힘(왕따) ㅋㅋ [REDACTED] 왕따임?</p> <p>KAKAO 001 2016.03.01 오후 10:17 갈취(빌려) 네임펜 빌려주께</p>	문자 수신함	보관함	 SMS 004 2016.10.14 오후 03:44 갈취(원들고) 엘에에 윤서는5천원 들공ㅎㄷㅎ 나는 6천원들고왔ㅈ어		 SMS 003 2016.04.08 오후 07:38 폭행(때렸) 나때렸으면서		 <p>010- [REDACTED]</p> <p>학교폭력의심문자(00/14)</p> <table border="1"> <tr> <td>문자 수신함</td> <td>보관함</td> </tr> <tr> <td>  KAKAO 002 2016.03.04 오후 07:25 괴롭힘(왕따) ㅋㅋ [REDACTED] 왕따임? </td> <td></td> </tr> <tr> <td>  KAKAO 001 2016.03.01 오후 10:17 갈취(빌려) 네임펜 빌려주께 </td> <td></td> </tr> </table>	문자 수신함	보관함	 KAKAO 002 2016.03.04 오후 07:25 괴롭힘(왕따) ㅋㅋ [REDACTED] 왕따임?		 KAKAO 001 2016.03.01 오후 10:17 갈취(빌려) 네임펜 빌려주께	
문자 수신함	보관함												
 SMS 004 2016.10.14 오후 03:44 갈취(원들고) 엘에에 윤서는5천원 들공ㅎㄷㅎ 나는 6천원들고왔ㅈ어													
 SMS 003 2016.04.08 오후 07:38 폭행(때렸) 나때렸으면서													
문자 수신함	보관함												
 KAKAO 002 2016.03.04 오후 07:25 괴롭힘(왕따) ㅋㅋ [REDACTED] 왕따임?													
 KAKAO 001 2016.03.01 오후 10:17 갈취(빌려) 네임펜 빌려주께													

<그림 4-6>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부정적 인식

인터뷰 결과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를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가 자녀의 전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긍정적, 자녀에게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본 차단수단 의무설치 제도가 어느 집단을 위한 제도 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절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행태

1.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 · 감시

부모들의 차단 앱 이용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차단 앱의 이용 동기와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면담하였다. 학부모 5명 중 4명의 학부모(민호·민아 어머니, 지섭 어머니, 성진 어머니, 유미 어머니)가 차단 앱을 이용하게 된 동기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걱정으로 인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라고 대답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소미 어머니만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차단 앱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능은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와 위치알람, 모니터링 기능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완전 차단형’, ‘시간 관리형’, ‘자율모니터링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가. 완전 차단형

‘완전 차단형’은 부모가 차단 앱을 이용해 자녀 스마트폰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정도였다. 하루일과를 끝마친 자녀가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요청하거나 숙제를 위한 인터넷 사용 등의 요청을 하면 한시적으로 차단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별적으로 추가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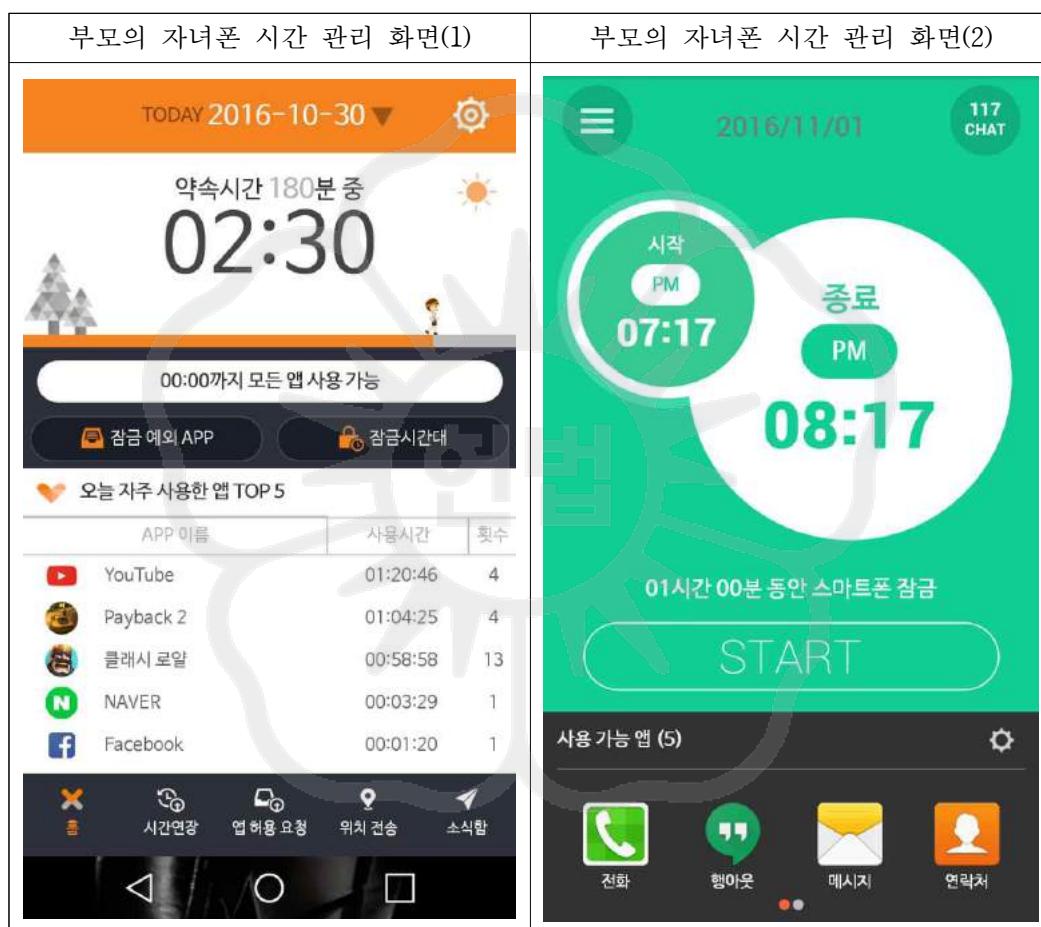
당연히 스마트폰 중독이죠. 애들이 게임에 빠져있으니까... 그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게임보다는 동영상에 빠져있으니까... 유튜브로 양띵, 캐리... 그걸 자꾸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그거 보지 말고 게임을 하라고 했어요. 명하니 그 동영상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말을 시켜도 못 알아듣고.. 그러다 TV에서 키즈 앱에 관한 광고보고 그날 바로 깔았어요. 이거 깔면은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그게 좋더라고.

〈민아·민호(초4, 남여) 어머니〉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 성진이한테 스마트폰을 처음 사줬거든요? 근데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성진아, 게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는데 말을 안들으니까... 제가 가입한 엄마들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녀)스마트폰 관리하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기능도 많고 잘 되는 걸로 해야겠다해서 이거(모바일펜스) 했죠. 그냥 게임이란 게임 다 못하게 하려고요.

〈성진(초5, 남) 어머니〉

차단 앱의 이용 유형 중 ‘완전 차단형’은 맞벌이 부부인 민호·민아와 성진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민호·민아와 성진이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게임이었다.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점차 늘어나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은 이를 관리할 수 없어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자 모든 기능을 차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즉, 직접 대면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한 최후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7>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시간관리

제가 볼 수 있는 앱하고 애네들이 볼 수 있는 앱이 틀려요. 저는 이렇게 자유모드를 누르면 (자녀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열공모드 누르면 완전히 다 닫혀버리고.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세시, 가방 놔두고 바로 학원에 가서 두시간 공부를 하고 오면은 한 네시반에서 다섯시. 그러면 그 중간에 밥을 먹고 다시 피아노나 태권도 가면 집에 오면 아홉시 다 되어서 오거든요. 그럼 셧고 뭐하고 하면 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잠깐 누구 한명 셧을 동안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만

핸드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핸드폰 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평일에는 열 공모드로 해놓죠. 만약에 애가 ‘엄마 카카오톡 이거 추가시켜줘’ 하면, 공부 열 공 시간에도 카카오톡을 추가 시켜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다보니까 또 카카오톡도 빠지게 되니까 잘 안해주죠. 딱 문자랑 전화만 해줘요.

〈민아·민호(초4, 남여) 어머니〉

처음에는 시간단위로 제가 핸드폰 쓸 수 있게 해줬는데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런 식이었는데, 주면 뭐해 게임만 하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 잠가놨어요. 저도 애 아빠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녁 말고는 같이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애도 학원가고... 그 시간(저녁시간)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말이 안돼서, 애 아빠가 썩 다 잡그게 했어요.

〈성진(초5, 남) 어머니〉

나. 시간 관리형

‘시간 관리형’은 하루에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할당된 시간이 모두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제한되는 유형이다.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허용 시간 이후에는 ‘완전 차단형’과 마찬가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기능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시간 관리형 부모는 자녀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주중 이용량은 45분~1시간으로, 주말 이용량은 2시간~3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가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빠가 조조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요. 그럼 지섭이가 ‘그거 아침이에요?’ 하고 자기 오전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내내 이걸(스마트폰)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누워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터진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줄이던가 뭐하든지 할거다. 이러고 시간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지섭(초6, 남) 어머니〉

유미가 5학년이 되면서 SNS를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하게는 해주는 틈, 선생님(연구자)도 SNS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시간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재는 숙제도 해야 되고, 피아노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건 많는데 핸드폰 하느라 자꾸 놓치더라고요. 아, 시간 관리를 안하면 애가 계속 이러겠구나 싶어서 하루에 1시간만 하게 해놨어요.

〈유미(초5, 여) 어머니〉

지섭이가 왜 엄마 1시간도 아니고 45분이냐고 그러는데, 제가 지섭아 30분만해.
(지섭이가) 엄마, 1시간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 잘라서 45분을 하게 해준 거 같아요. 지섭이가 6학년이라 좀 바빠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운동을 저녁에 가거든요. 그 전에 월수금 영어가고 화목 수학가고. 태권도에 주말에는 논술하고... 그래서 45분이면 충분해요. 대신 방학이나 주말에는 늘려줘요, 2시간 30분 정도로...

<지섭(초6, 남) 어머니>

차단 앱의 이용 유형 중 ‘시간 관리형’은 어머니가 모두 전업 주부로 자녀의 학업 스케줄을 일일이 체크하는 지섭이와 유미 어머니의 이용 유형이다. 인터뷰에 응한 초등학교 4-6학년 자녀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수강하는 학원의 과목수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 지섭이와 유미가 6개로 가장 많았다. 지섭이와 유미의 부모님은 빠듯한 학원 스케줄과 숙제를 수행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방해가 된다고 여겨 시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의 SNS 이용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다. 자율모니터링형

‘자율모니터링형’은 자녀의 스마트폰 앱 차단이나 시간제한은 설정해놓지 않고 자녀가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앱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자녀의 하루 스마트폰 이용량은 얼마인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위치알람 등의 관찰 기능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야한 동영상이나 그런 거는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찾자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소미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거의 뮤직비디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시기잖아요. 뭐 성적인거나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시긴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아이를 뭐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도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T청소년안심팩) 쓰게 됐죠.

<소미(초6, 여) 어머니>

시간만 체크해요. 열만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끔 푸시(제제)를 하죠.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앱 자체가 유해한 곳은 알아서 걸러내니까 특별히 다 막아논다거나 그런 거는 없기는 한데... 사용 시간만 얼마나 오래

했는지 체크하는 편이에요. 또, 어떤어떤거 쓰는지도 보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뭐 그런 거에 협박, 공갈, 이런 문자가 좀 찍히더라고요. 담배,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그냥 소미한테 내가 이걸 보고 있다, 이걸로 언제든지 체크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 같아요.

〈소미(초6, 여) 어머니〉

‘자율모니터링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인 소미였다. 소미 어머니가 자율적으로 소미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유는 평소 소미와의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다만, 사춘기인 소미가 엇나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관찰 용도로 앱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2. 자녀의 차단수단 회피·무력화

자녀들의 차단 앱 이용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차단 앱의 기능과 설치 전후로 달라진 점에 대해 질문하고 면담하였다. 대부분의 자녀가 차단 앱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시기별, 연령대별로 차단 앱을 이용하는 유형은 다르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차단 앱 설치에 대해 순응적이면서 차츰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아지거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단 앱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를 ‘순응형’, ‘소극적 회피형’, ‘적극적 회피형’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대체로 스마트폰 이용 경험이 많아질수록 ‘순응형’에서 ‘적극적 회피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순응형

‘순응형’은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처음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나타나는 유형으로 차단 앱 설치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가입 시 차단 앱의 사용료가 포함되어있는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차단 앱 미설치 시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없게끔 하는 경우이다.

엄마가 드라마 볼려다가요.. 쿠키즈 광고가 나왔는데요... (쿠키즈에 대해서는) 광고보고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관리해주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너네는 게임하면 안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민호·민아, 초4 남여〉

그냥 핸드폰 살 때, 청소년안심팩 그런 게 있다고만 엄마가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냥 위치 그런 거(알림) 된다고만 들었어요.

<소미, 초6 여>

스마트폰 가입 시 부모로부터 차단 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은 자녀는 거의 없었지만, 차단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맨 처음에 갈 때 엄마한테 하지 말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스마트폰 가진 애들 많았는데, 이 보안앱은 안간 애들 많다고.... 근데 이거(쿠키즈) 안깔면 그럼 엄마가 핸드폰 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민호, 초4 남>

이걸로 엄마가 하면은 이거 다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저 규빈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규빈이 다른 보안앱이 있는데, 그런데 규빈이 엄마는 잘 풀려주는데 왜 나는 안해 주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거 하면은 카톡도 잘 못한다고 그런거요...

<민아, 초4 여>

처음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핸드폰은 사야 되니까. 그냥 뭐 알았다고 했어요.

<소미, 초6 여>

‘순응형’의 모습은 나이가 가장 어렸던 초등학교 4학년 민호·민아에게 나타났다. 타 학년에 비해 아직까지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부모님의 말에 눈치를 보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순응형’은 부모의 스마트폰 관리가 ‘자율모니터링형’이었던 소미였다. 이 경우 ‘시간 관리형’이나 ‘완전 차단형’에 비해 차단 앱 이용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해줄 경우, 자녀가 차단 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소극적 회피형

‘소극적 회피형’은 처음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된 일정기간 이 후 차단 앱의 기능을 회피해 보고자,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차단 앱을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차단 앱의 기능을 최소화하거나 무력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삭제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삭제를 계속 해봐도 해봐도... 안돼요. 이게... 엄마가 우리걸 지워야지만 지울 수 있어요...

<민호, 초4 남>

이거 가끔 저절로 안되던데...(웃음) 엄마한테 문자도 안가고 그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하다보면 이상해질 때가 있어서...

<유미, 초5 여>

엄마한테 (이용)시간 좀 늘려달라고 말해봤죠. 그럼 엄마가 할거 다 하고 오래요. 학원숙제 다 하고, 학교 숙제 다 하고 그러면 가끔 30분씩 시켜주세요.

<성진, 초5 남>

‘순응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소극적 회피형’이다. ‘소극적 회피형’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차단 앱의 정확한 회피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우연한 기회에 차단 앱을 회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미와 성진이의 경우 차단 앱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삭제 방법을 검색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 그 방법을 이용해 회피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다. 적극형 회피형

‘적극적 회피형’은 차단 앱의 기능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알고 있거나, 실제로 차단 앱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부모님 모르게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주로 학년이 높은 학생들이 학년이 낮은 학생들보다 회피 수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었다.

삭제방법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애(T청소년안심팩)가 너무 견고해요. 친구들이랑 카톡 제일 많이 하는데... 엄마가 차단해놔서... 그래서 엄마폰 뒤져서... (카톡만) 몰래 (차단앱에서) 풀었어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유미, 초5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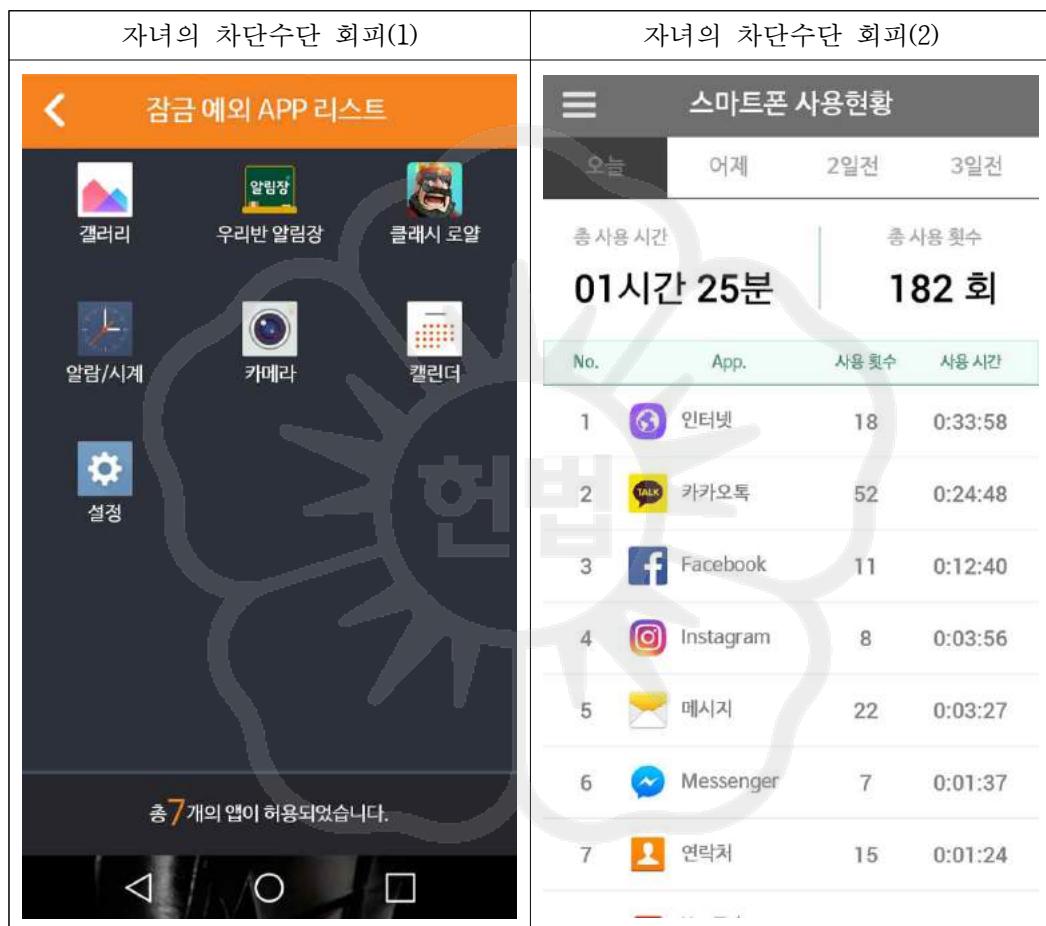
엄마한테 삭제해달라고 하면 백퍼(100%) 안해주니까 제가 이걸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봤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애들이 핸드폰 뒤에 네모 칩 같은 거 뻐 다음에 살면(이용하면) 이런 거 작동 안한다고도 했는데,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손을 써가지고 (웃음) 이것보세요. 이것(엄마가 차단해 놓은 게임 앱)도 돼요. 그리고 이거 시간들을 다 보세요. 두 시간 반(지

섭이가 주말에 허용된 시간)이 다 넘잖아요. 이 게임 앱은 시간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잠금예외 앱이면 시간제한에 안걸려요.

<지섭, 초6 남>

제 친한 친구들은 개네 형들이 있어가지고, 형들은 이런 걸 많이 접해봐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형들한테 부탁했죠(웃음). 엄마한테 비밀 꼭 지켜주세요.

<지섭, 초6 남>



<그림 4-8> 차단수단 캡처 화면_ 차단수단 회피

유미의 경우 직접적으로 차단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술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핸드폰에 접촉해 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차단 앱을 무력화 시킨 학생은 지섭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으로 다양한 회피방법을 시도해오다 결국 기술적으로 차단 앱의 기능을 회피하였다. 지섭이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을 통해 차단 앱의 회피 방법을 알아내었고, 현재 가장 즐겨하는 게임(클래시로얄)을 잠금예외 앱

으로 전환시켜 세달 째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차단 앱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단 앱에 기술적 결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제 3절 유해매체를 차단수단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에서 차단 앱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가 부모와 자녀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단 앱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인식과 자녀의 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가정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차단 앱 의무설치 정책이 가져오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차단 앱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논의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가정 내 갈등, 차단 앱 의무설치 정책의 실효성,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문화 등이었다. 이를 다시 ‘사회적 효과’와 ‘문화적 효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1.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은 차단 앱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차단 앱에 대한 긍·부정적 영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시행령 전부터 모두 핸드폰(피처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차단 앱 설치 이후 스마트폰 이용과정의 경험과 생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영향은 차단 앱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차단 앱 설치 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차단 앱의 문제점이나 차단 앱 설치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 의무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가. 가정 내 갈등 및 종속 현상

정책 이전에 나타나는 가정 내 갈등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었다면, 정책 이후에는 차단 앱 설치로 발현되는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시간 조정에 대해 부모와 자녀 간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수신된 자녀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차단 앱) 깔기 전에는 진짜 많이 써웠죠. 근데 지금도 진짜 많이 써워요. 왜냐면,

저는 다른 엄마들이랑 다른 애들이 (스마트폰 시간을) 얼만큼 쓰는지를 이쪽 가면
애가 많이 쓰는 게 되구요, 이쪽 가면은 애가 다른 아이들 보다 조금 쓰는 게 되
는 거예요. 평균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좀 한다는 엄마들한테 가면, ‘야, 너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줘?’ 이쪽으로 하면, ‘야, 자유롭게 해줘, 이거를 니가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 이게 되버리니까... 어제도 싸웠는데...

〈지섭(초6, 남) 어머니〉

음... 근데 어떤 게 제일 갈등이 되나면요. 저희 친구들은 다 제가 불쌍하다고 하
잖아요. 근데 엄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시간을) 왜 이리 길게 주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엄마는 엄마 아는 분들을
얘기하게 되고 저는 제 친구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무한
반복이에요.

〈지섭, 초6 남〉

소미가 엄청 기분나빠하죠. 저번에 소미가 주고받은 문자가 날아왔는데, ‘공갈’
이렇게 오더라구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그 부분이 캡처가 돼서 그
문장만 날아오는데, 처음에 선불리 뭐냐고 물어봤다가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구요. 이걸로 다툼이 많이 생겨요.

〈소미(초6, 여) 어머니〉

그냥... 뭔가 (제가) 사춘기 같아서 그냥 짜증나요. 제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
는데 제가 모태솔로라고 놀려가지고 그런 거 관련된 글 나오면 저 태그 많이 걸
어요. 카톡으로 그 내용 보내고 하면 엄마가 다 보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무섭고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내게 되는 거 같아요...

〈소미, 초6 여〉

차단 앱 설치로 발현되는 갈등 문제 중 부모와 자녀가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갈등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사생활 감시로 나타났다. 지섭이 가족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도 없을뿐더러, 현재 모든 학생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대상조차 마땅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이용시간 조정
에 매번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학생인 소미의 경우 자신의 사생활
이 담긴 친구들끼리의 문자나 SNS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차단 앱
사용 후 이러한 문자나 SNS가 부모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며, 특히
부모에게 문자내역이 전송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 하고 있었다. 소미의 부모님
또한 전송된 문자 내역으로 인해 소미와 마찰을 빚은 적이 많다고 답변하였

고,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더 이상 문자내용에 대해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실제 자녀의 문자가 갈취, 공갈, 협박의 내용이라고 전송되어 온 것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검열 시스템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한번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제가 중독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뭘가 견디지가 생기면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유미(초5, 여) 어머니>

제가 시간단위로 위치를 받아보는 알림을 받는데, 알림이 안오면 진짜 너무 불안해요. 애네들이 전화도 안받고 그러면 위치확인을 바로바로 하거든요? 근데, 위치오류가 자꾸 생겨서 제가 여기에 (쿠키즈) 전화도 몇 번 했어요.

<민호·민아(초4, 남여) 어머니>

차단 앱으로 인해 발현되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은 부모가 차단 앱을 이용하며 오히려 차단 앱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유미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안에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차단 앱에 접속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자녀에게 추궁하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자녀에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면 별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도 있다고 하였다. 즉, 차단 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앱 설치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도 답변하였다. 민호·민아의 어머니의 경우 주로 자녀의 위치알림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만약 알림이 평상시보다 늦어지거나 오류로 인해 울리지 않게 되면, 불안감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차단 앱을 사용하기 전보다 사용한 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했고, 자녀의 동선 파악도 더 강박적으로 하게 되었다 느끼고 있었다.

나. 의무정책의 실효성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에게 의무정책의 인지 여부, 가입 당시 상황, 차단 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그 후 선정된 부모 5명에게 자녀의 스마트폰 가입 시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5명 모두 의무정책의 존재에 대해서

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통신사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사항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단수단 의무설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저는 이거(모바일 펜스) 제가 찾아보고 알았고, 예전에 유해차단 서비스 그게 있다고 가입하라고 학교에서 안내장은 한번 왔었어요.

〈성진(초5, 남) 어머니〉

아니요.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5월 5일 어린이 날 이후에 가입을 했는데, 의무설치 얘기 안하셨어요. 통신사에서 얘기 스마트폰 산다니까 청소년 안심팩이 포함된 요금제가 저렴하다고 했지, 그거를 꼭 설치를 해야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했어요.

〈소미(초6, 여) 어머니〉

부모님이 차단 앱을 처음 알게 된 경로는 앱에 대한 TV광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학교 가정통신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당시에는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을 관리해주는 차단 앱이 있다는 정보만 얻었을 뿐, 차단 앱 의무설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 모두 시행령 이후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통신사에서조차 의무설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현재 시행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앱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시간을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허용 앱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1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스키피에 전화를 했죠. 문의를 했죠. 카카오톡을 허용 앱으로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타고 카카오 채널로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면 그거는 시간이 안 잡힌데요. 앱에서 웹으로 가는거는. 그때는 어우 이거 정말 돈아깝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렇게해서 타고 들어가는 건 자기네들이 어떻게 캐치를 할 수가 없대요. 어이없죠?

〈지설(초6, 남) 어머니〉

알림으로 오는 문자들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은 ‘연필좀 빌려줘’ 가 ‘갈취’ 라고 이렇게 오더라구요. 황당했죠.

〈소미(초6, 여) 어머니〉

이게 단점이 SK T안심팩이 갤럭시랑 충돌하는 면이 있대요. 그래서 안하면 또 알

람이 안오고, 어느 날은 유미 폰에 들어가서 몇 번 해줘야 또 오고 이러더라구요.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제가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삼성 갤럭시폰이 조금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유미(초5, 여) 어머니>

얼마전에 한 2-3주 전에 영조·정조 능행차가 있었어요. 저희가 구경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같이 간 엄마가 유튜브에는 뭐뭐 올라왔나 보자고 보는데 조금만 내리면 정조 능행찬데 여자의 정조에 대해서 하는 그런 19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조 지키기 해가지고 옛날 여자가 귀저기 같은 거 차고 다리 벌리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유튜브는 안되겠구나. 근데 유튜브가 이런 앱 쓴다고 다 막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진(초5, 남) 어머니>

차단 앱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허술한 차단 효과와 뜯금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알림 등에 대한 응답이 나왔다. 부모 모두 차단 앱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지섭이의 경우 종종 카카오톡을 이용해 앱에서 웹으로 이동하여 부모님 몰래 제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추후에 지섭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엑스키퍼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소미 어머니의 경우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정확하게 내용 판별을 하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한 것이 아닌 특정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모두 학교폭력 의심문자로 판별하고 있어 매우 수준 낮은 서비스라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 스마트폰과 호환성 문제로 잦은 충돌이 발생해 차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하였다.

(차단 앱 사용은)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무 설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걸 법으로 정해버리면 애들이 반감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들어가버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애네들이 좀만 크면 다 아는데 의무적으로? 그건 좀 그런거 같아요.

<민아·민호(초4, 남여) 어머니>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아이들 점점 커가고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걸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요즘 애들이 위낙에 자기밖에 모르고 무섭잖아요. 내 교육 주관이 뚜렷하고 엄마가 결정할 수 있어야 자녀가 받아드릴 거 같아요.

<성진(초5, 남) 어머니>

저는 의무설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문제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는 거, 그것만 문제지만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음란물이 엄청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지섭(초6, 남) 어머니>

차단수단 의무설치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 4명은 의무설치를 반대하였고, 부모 1명(지섭 어머니)은 찬성하였다. 의무설치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경우 강제성으로 인한 자녀들의 반발심을 우려하였으며, 본인의 교육 주관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무설치를 반대한 부모 모두 차단 앱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섭 어머니의 경우 차단수단 의무설치를 유일하게 찬성하였는데, 의무설치 제도의 최초의 목적이었던 자녀의 유해매체물 접속 차단을 긍정적이라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곧 중학생으로 진학하게 될 지섭이가 성적 호기심이 강해져 음란물을 접속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며, 그 때 차단 앱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2. 문화적 영향

‘문화적 영향’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 차단 앱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영향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기표현, 친밀감 형성, 참여의 기회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놀이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과 학교생활 혹은 친구와의 대인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현상이 차단 앱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놀이문화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게임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동영상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답변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게임 동영상, 여학생의 경우는 뮤직비디오나 연예인 동영상을 소비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논다고 답변하였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차단 앱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친구와의 관계 유지에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가. 놀이문화의 변화

인터뷰 참여자에게 평소 어떤 놀이를 즐겨하는지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빠한 학원스케줄로 인해 평일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주로 학교나 학원에 등하교하는 시간이나 학원 스케줄을 끝마친 후,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나 SNS를 하는 것이 놀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원 다니느라 평일에는 못 놀아요. 4, 5학년 때는 조금 더 바깥활동... 놀이터에서 논게 훨씬 많았는데, 놀이터는 거의 5학년 1학기쯤에 졸업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지금은 거의 안나가요. 애들이랑 게임하죠. 혼자서도 게임하고 놀아요.

<지섭, 초6 남>

그냥 친구들이랑 핸드폰하고 수다 떨고 그래요. 밖에서 페이스북 많이 하고, 인스타도 하고, 카카오스토리도 하고... 보통 어디 갔다온거 친구들이랑 셀카 사진 많이 올려요.

<소미, 초6 여>

마크(마인크래프트)랑 클로(클래시로얄)하고 놀아요... 엄마가 인터넷 풀어주면은 양띵이랑 악어(유튜브) 봐요...

<민호, 초4 남>

(친구들과 노는 횟수는) 딱히 핸드폰과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애들이랑 잘 못 노는거는 학원 때문이지, 핸드폰 때문은 아닌 거 같아요.

<유미, 초5 여>

인터뷰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하루 생활 패턴은 학년별로 학교 수업시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까지 참여한 뒤 오후 6시에 집으로 하교하였다.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바로 사설학원에 가고 모든 일과를 끝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9시~10시 사이였다. 바쁜 스케줄로 학생들은 친구들과 따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쉬는 시간으로 주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이야기의 소재가 인터넷을 통해 접한 관심 연예인이나 친구들 간의 SNS, 셀카, 게임, 유튜브 등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이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게임만 해요. (스마트폰) 없을 때는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요즘에는 놀이터 보면, 엄마 재네들 뭐하는거야? 재미없어. 이러는거죠. 아들이 일주일에 한번 4명 모여서 논술을 해요. 논술 끝나면 한 시간을 4명이 모여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아들 4명이 그냥 말도 없이 지네 게임, 야, 이거 아이템 뭐뭐. 이런 얘기 밖에 안해요. 그래서 저번에 애들 다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있어서 이모랑 보드게임 같이 할래? 이랬더니 다들 ‘아니요’ 이라고 가버렸어요. 큰일이에요.

〈지섭(초6, 남) 어머니〉

평일에는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요. 놀면 학원에서 태권도장 관장 선생님이랑 놀고, 놀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도 비오거나 이러면은 못 노는 때가 더 많아요.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거죠.

〈민아·민호(초4, 남여) 어머니〉

나. 스마트폰과 대인관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게 된 이유로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대인관계를 결정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급 내 카카오톡 전체 채팅방을 통해 담임선생님이 숙제나 알림사항을 안내해주고 있어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자녀가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 차단 앱으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이 제한될 경우 여학생들은 SNS 이용감소로 인한 친구와의 관계변화를 가장 걱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연락불편, 소통부재, 따돌림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자애들은 교우 관계가 있잖아요. 위낙에 다들 쓰고 있고, 모든 하루일과나 대화가 전부 이 안에서 나오니까... 소미만 안쓸 수 없잖아요.

〈소미(초6, 여) 어머니〉

선생님들이 숙제나 알림장을 단체 카톡으로 보내요. 제 핸드폰에서 알림장을 볼 수 있긴 한데, 애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숙제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줬죠. 지금 성진이 반에 스마트폰 없는 애가 딱 한명 있어요. 그래서 개랑 같이 모듬이 됐는데, 개가 핸드폰이 없어서 조별숙제를 같이 못했대요.

〈성진(초5, 남) 어머니〉

겨울방학 때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혼자 못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해줬죠. 그리고 애들이 카카오톡 아니면 게임 얘기를 하는데, 게임 얘기 를 못하면 소통이 안되니까 따(돌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지섭(초6, 남) 어머니>

스마트폰 이용으로 생긴 새로운 현상 중 교내에 생긴 큰 변화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학급 단체채팅방과 알림장이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사 일정과 숙제, 부모님께 전달 사항 등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고 있었고, 채팅방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자녀가 관련 사항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단체채팅방에 속하지 못하거나 스마트폰 미이용으로 인해 친구들끼리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하여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친구들은 거의 다 저하고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사용 못해요. 친구들끼리 우리 여자애들끼리 하는 채팅방 따로 있는데 거기서 숙제 이야기나 자기 생활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요.

<민아, 초4 여>

일단 심심하고... 친구들이랑 뭐 연락해야 될 때 못해가지고 그런게 제일 안좋아요. 친구들이랑 단체톡도 많고 개인톡도 많고 하루에 엄청 많이 와요. 만약 지금 보다 더 못쓰게 되면 친구들이랑 좀 멀어질 거 같아요...

<유미, 초5 여>

게임을 못하는게 제일 불편하죠. 저랑 애들이 클로(클래스로알)하는데 저만 시간이 걸려있으면 같이 못 놀잖아요.

<지섭, 초6 남>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3명 있는데, 한명 빼고 어디 갔다온 사진 페 이스북에 올렸다가... 같이 안간 한명이랑 멀어져가지고... 싸우다가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한번 혼난 적 있어요. 카카오톡 못쓰면 개(같이 못간 친구)처럼 될까봐...

<소미, 초6 여>

인터뷰에 응한 초등학생 자녀에게 차단 앱 이용으로 인한 가장 큰 걱정은 친구와의 관계변화였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은 친구와의 소통 수단이자 친밀감의 수단이었다. 차단 앱을 이용하게 되면서 전보다 스마트폰 이용이 줄어들게 되자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전과 달라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답변하였다. 남 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 무리에서 뒤떨어

지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또래와의 관계지향성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그룹내 친구들끼리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매우 괴로운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친구들과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자신이 그룹 내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논쟁에서 출발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 이용 경험,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분석으로 수행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차단수단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검색 키워드로 입력하였을 때 나타나는 논의의 양상은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을 긍정적으로, 자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 이용에 있어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나 게임, 중독 등에 관하여 걱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차단수단의 기능인 위치 조회, 시간제한, 스마트폰 관리 설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자녀의 경우 차단수단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 무력화 등 사용하고 있는 차단수단 자체를 회피하려는 이용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차단수단이 자녀 본인의 사생활침해나 감시,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심성이 높은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가 카카오톡, 인터넷, 게임, 동영상, 사진 등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얻고자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부모와 자녀의 차단수단에 대한 인식 차이, 부모와 자녀의 차단수단을 이용하는 이용행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서비스 및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와 부모의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인식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우 차단 앱을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부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모는 차단 앱으로 인해 자녀가 시간관념을 갖게 되고,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위치확인과 같은 자녀의 신분안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긍정적이라 평가하였다. 반면, 자녀의 경우 자신의 SNS나 문자메시지 자동검열로 인한 사생활 감시, 시간제한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

해 등을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차단 수단이 없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발심으로 인해 우회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차단 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이용행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이용경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차단 앱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자녀의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방식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완전 차단형’, 일일 허용된 시간만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시간 관리형’, 차단이나 시간제한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에게 경각심을 주는 ‘자율모니터링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본래 목적이었던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음란물이나 유해매체물의 차단’ 보다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전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차단 앱 이용경험은 시기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년이 어리거나 처음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차단 앱을 받아들이는 ‘순응형’, 차단 앱을 우회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소극적 회피형’, 실제로 차단 앱을 무력화시키거나 회피하여 사용하는 ‘적극적 회피형’으로 구분 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차단 앱을 무력화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여러 가지 우회 방법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현존하는 차단 앱이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차단 앱 인식과 이용경험의 차이로 발현하는 차단 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영향은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차단 앱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은 차단 앱 설치로 인해 가정 내 갈등현상과 부모의 스마트폰 종속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시간 조정이나 문자 검열 등으로 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차단 앱 자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경우 차단 앱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전보다 자녀의 걱정이나 감시가 심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차단수단 의무설치에 관한 실효성을 알아보는 질문에서 부모는 스마트폰 가입 시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아울러, 부모도 자녀가 차단 앱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잣은

서비스 오류로 인해 차단 수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차단 수단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문화적 영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놀이문화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차단 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들이 친구와의 놀이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항상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이나 연예인 동영상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소외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다. 친밀감을 중시 여기는 여학생의 경우 차단 앱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친구들과의 연락두절을 꿈았고, 차단 앱으로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거라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이나 따돌림문제를 방지하려던 차단 수단이 최악의 경우 반대의 상황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2절 논의 및 정책 제언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능동적 이용자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의 활용능력에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강제적 규제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규제대상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은 그 목적 달성이 어렵기 마련이다(주승희, 2011).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규제대상 집단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차단 앱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의무설치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탐구 없이 청소년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사회·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의무설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해결하고 본 규제정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요구된다.

첫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심층인터뷰를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보다는 선택적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형태가 ‘자율모니터링형’인 가정의 자녀에게서 차단수단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차단수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에 따라 선택적설치가 가능한 옵트아웃 조항을 보완하여 국가의 강제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녀의 게시글에서 나타난 차단수단 회피 방법은 삭제, 공장초기화, 루팅, 우회, 무력화 등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으며, 실제 인터뷰를 통해 차단수단을 무력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녀를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로부터 차단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시스템상의 오류와 허점을 다수 확인하였다. 이는 차단수단 자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전반적인 품질을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되었던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우선, 차단수단이 검열하고 차단하는 정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도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음란물을 시스템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을 통해 사업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청소년과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차단수단이 차단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규제 대상인 청소년과 부모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탐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중심 매체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초래할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이루진 규제는 지금처럼 청소년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반발심을 사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사현 (2000). 『관광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출판사
- 김용학 (2013).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남궁근 (2008). 『정책학』, 서울: 법문사.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주형, 송광인, 최영기, 류인평 (2006). 『문화와 관광』, 기문사
- 최병선 (2003).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문화론(제2판)』, 경기: 교육과학사.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 경향신문, “김성수, 청소년 10명 중 7명에게 유해물 차단앱은 무용지물”, 2016.10.0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0935001&code=920100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네이버 사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식 - 옵트인(Opt-in) / 옵트아웃(Opt-out)”, 2014.5.8., <http://privacyblog.naver.com/80212526859>
- 오픈넷,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2015.11.16., <http://slownews.kr/47930>
-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 지디넷코리아, “해외 NGO까지 스마트보안관 앱 문제삼은 이유”, 2015.11.03.,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103145312&type=det&r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보고서.
- 이광석 (2015). ‘청년알바’의 일상과 스마트폰 문화,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2015) Vol. 3, 35-4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Vol. 15-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KISDI STAT Report Vol. 16-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황성기 (2014). 인터넷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게임 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40-49.

강휘원 (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3), 185-205.

곽민주, 이희숙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생활과학연구논총, 13, 183-205.

김경미, 염유식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과 주관적 행복, 정보사회와 미디어, 15(3), 31-56.

김기태, 이현주, 문신일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김민석 (2015). 게임 셧다운 정책이 청소년 게임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현, 정인경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111-126.

나은영 (2005). 청소년의 이동전화 애착 이용, 효과 지각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49(6), 198-232.

민순호, 김석우, 하경주, 서창호 (2013). 스마트 기기에서 유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판별 메커니즘 및 성능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6), 1001-1006.

박은민, 박기희 (2014). 부, 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중독 관계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놀이치료연구), 17(2), 209-224.

박준범 (2000).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지선 (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지환 (2015).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 필요성, 오픈넷 포럼자료집.

박찬결 (201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

- 연구, (20), 117-157.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 서미선 (2009). 초등학교 5 학년 여학생 또래집단의 질적 특성, 공주교육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희석 (2015).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일본의 법과 정책 - 전기 통신 사업법상 필터링규제의 검토, 오픈넷 포럼자료집.
- 안정임 (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1), 1-21.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요인과 부모의 중재 행위, 아동의 이용조절 인식간의 상관관계, 언론과학연구, 13(2), 161-192.
- 오대영, 이정기 (2015). 청소년들의 학교급 (초·중·고) 별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과 효과, 사회과학연구, 31(1), 369-392.
- 이경상(2014).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민영 (2010).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33-160.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경향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0(3), 383-402.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숙정, 전소현 (2011).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부모 중재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7), 5-42.
- 이승형, 강희수 (2015). 스마트폰 문화 속 생활세계를 통해 본 청소년의 교육 현상학적 이해, 교육철학, 57, 25-52.
- 이시영 (2014).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43-66.
- 이정기, 오대영 (2014).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 실태와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44.
- 이혜수, 유승호 (2009). 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동향과전망, 76, 306-335.
- 임원선 (2008). 청소년 유해환경과 또래의 집단 내 압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학연구, 15(7), 227-241.
- 정서화, 조현석 (2014).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 변화

에 관한 연구: 1984년-2014년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5), 57-68.

주승희. (2011).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 형사정책연구, 31-65.

허고은, 송민 (2013).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의료정보학 저널의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07-225.

황성기, 최승훈 (2001).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사회, 3, 222-252.

황승흠 (2008).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261-288.

황승흠, 황성기 (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Bhattacherjee, A., & Sanford, C. (2006). Influence process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n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MIS quarterly, 805-825.

Bogdan, R.,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5th Ed.). Allyn & Bacon. 교육의 질적 연구 방법론(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원저 2006 출판).

Campbell, A. J. (1999). Self-regulation and the media,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1(3).

EAVI(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11). Testing and Refining Criteria to Assess Media Literacy Levels in Europe, Final Report.

Gunningham, N., & Rees, J. (1997).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Law & Policy, 19(4), 363-414.

Livingstone, S., & Bober, M. (2006). Regulating the internet at home: contrasting the perspectives of children and parents, In D. Buckingham and R. Willett (Eds.), Digital generations: Children, young people and new media, 93-11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rensky, M. (2004). The emerging online life of the digital native. New York,

NY:games2train.

- Price, Monroe E. and Steffan G. Vergulst.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Gutersloh: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 Price, Monroe E. and Steffan G. Vergulst. (2005).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Kluwer Law International.
- Ripley, R. B., & Franklin, G. A. (1984).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Dorsey Press.
- Scott, J. (1991).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2000. 提, 20, 6.
- Stake, R. E. (1981). Case study methodology: An epistemological advocacy, Case study methodology in educational evaluation, Minneapolis: Minnesota Research and Evaluation Center, 272.
- Triandis, H. C. (1979). Values, attitudes,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Ukrow, J. (1999). Self-regulation in the media sector and European community law: An independent study of European law. Prepared at the request of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Cultural Affairs and the Media, Saarbrücken. Institute of European Media Law.

[부록 1]
<부모 심층인터뷰지>

※ 다음 질문은 통계적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거나 답을 적어주세요.

성별	여자 ()	남자 ()
나이	()세	
직업	부 :	모 :
가정내 총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자녀의 스마트폰 구입시기		
사용하는 차단앱 이름	①	②

1.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평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과정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3. 지금 쓰시는 앱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앱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5. 다른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6. 어머님께서 자녀의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통신사에서 유해물차단앱에 관련해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유해물차단앱 의무설치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7. 본 앱을 설치하실 때 자녀분과 상의하신 적이 있나요? 자녀가 동의를 했는지, 없다면 사용 후 효과나 결과에 대해 대화해보신 적이 있나요?
8. 사용하시는 앱의 기능을 설명해주세요. 이 중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9. 본 앱을 이용하시기 전 자녀의 스마트폰 관리(사용에 대한 제재 등)는 어떤 식으로 관여하셨나요?
10. 아이들이 혹시 야한 동영상이나 음란물 같은 콘텐츠에 접속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11. 앱 사용전과 비교해봤을 때, 앱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 앱을 사용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13. 앱을 이용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4. 앱 사용 후 좋은 점이 있을까요?
15. 반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없었던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16. 어머님의 자녀는 본 앱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7. 어머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앱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8. 이 앱이 의무설치되어야 한다는 법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록 2]
<자녀 심층인터뷰지>

※ 다음 질문은 통계적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거나 답을 적어주세요.

성별	여자 ()	남자 ()
나이	()세	
학년	초등학교 ()학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① 30분 미만 ③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⑤ 2시간 30분 이상 ~ 3시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④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자주 사용하는 앱 · 서비스		
사용하는 차단앱 이름	①	②

1. 학생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주세요.
2. 하루 일과 중 주로 언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3.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4. 처음 ○○앱을 휴대폰에 설치할 때 부모님과 ○○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 있나요?
5.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이런 앱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6. 사용하는 친구들과 이 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나요?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7. 평소 스마트폰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혹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8. 왜 △△를 많이 이용하나요? △△의 어떤 점이 재미있나요? 다른 친구들도 △△를 많이 하나요? △△를 통해 무엇을 배우나요?
9. 이 앱을 사용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0.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11. 어머니가 앱을 참줬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12. 앱을 사용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적이 있나요?
13. 앱 사용 후 생겨난 좋은 점이 있을까요?
14. 반대로, 앱 사용 후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15. 학생은 본 앱을 삭제 혹은 중지시키기 위해 실행해본 노력이 있나요?
16. 학년이 바뀌어도 이 앱을 계속 사용할 것 같나요?
17. 이 앱이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Abstract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Influence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of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Cho, Min Ji

(Supervisor Lee, Kwang Suk)

Dept. of Digital & Cultural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earch has studied into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use of experienc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filtering programs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by carrying out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 on senior students and the parent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ontroversy on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First, as a result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a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into the children and parents differences in perception concerning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was found that games, preventing addiction, location queries, time limit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parents bulletin board, showing positive views of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the parents. On the contrary, it was understood that deleting, deactivating, disabling, bypass, violence of privacy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showing negative views on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children.

In-depth interviews that took place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the parents made positive evaluation of creating concept of time, solving problems of smartphones, overindulgence and safety through location queries made through filtering programs. In case of the

children's evaluation, violation of privacy through SNS surveillanc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owing to time limits and other reasons were considered as the main negative factors. Through this, the study can reveal the side effects it brings about such as teenagers stress and resistance.

Having investigated into the parents and children use pattern of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was possible to classify parents using the filtering program as 'completely blocked type' in which every function was blocked in exception of essential functions, 'time management type' in which usage was made possible only during the allowed time and 'autonomous monitoring type' in which there was no time limit or blocking but alert was aroused through monitoring by parents. Use pattern of the children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 and time. They were classified as 'adaptation type' in which the children helplessly accepted the filtering program, 'passive avoidance type' in which the children tried bypassing or deleting the filtering program and 'active avoidance type' in which the children used by disabling the filtering program.

Finally, having investigated into social and cultural effects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appeared as a social effect that conflicts in the family and parents dependent phenomenon of smartphones occurred as side effects. As a cultural effect, due to the fact that entertainment culture for senior students which has evolved centering on smartphones was affected by filtering program, a side effect on peer relationship unexpectedly occurred. Generally, doubtful responses were made on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and its effectiveness.

In-depth discussions on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that was attained through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providing certainty on abolition of regulatory policies, effectiveness on regulatory policies and direction for change.

keyword :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Filtering program, Compulsory installation, Overindulgence of Smartphone usage, violation of

privacy, monitoring, Sociocultural influence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opennet.or.kr/10413

By 오픈넷

November 3, 2015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자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 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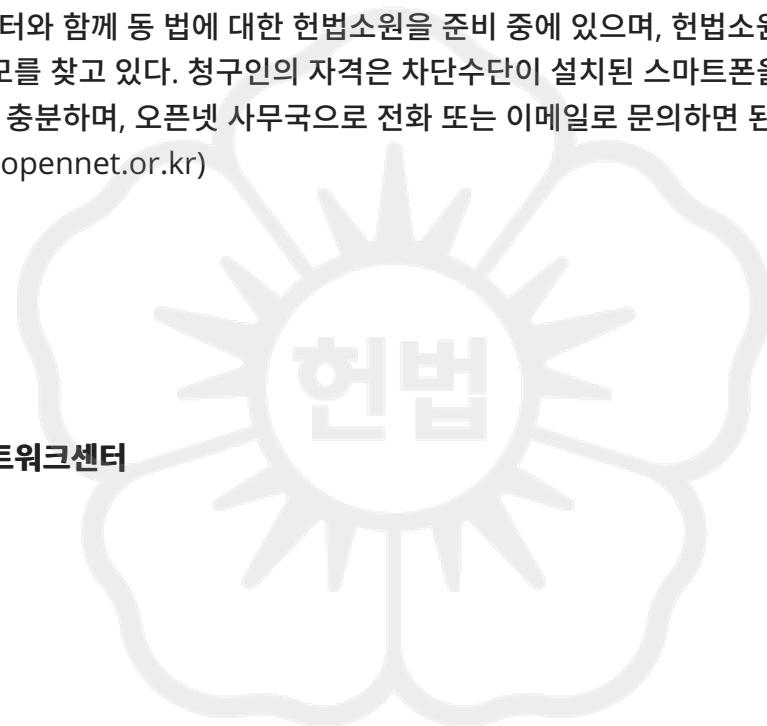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民間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opennet.or.kr/14231

By 오픈넷

November 29, 2017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4차 보고서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서 세 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시 앱들이 보안에 매우 취약함을 밝혀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이통사인 KT와 LGU+의 감시 앱인 U+ 자녀폰 지킴이와 KT 자녀폰 안심을 대상으로 했다. 두 앱 모두 플랜티넷이라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 회사가 개발했는데, 코드가 거의 동일하며 둘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무단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보안 결점이 있었다.

보안감사를 주도한 큐어53의 Fabian Faessler 연구원은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 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취약점을 발견한 후 각 회사에 보안감사 결과를 고지하려 했으나, 회사들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취약점을 수정하게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은 LGU+를 상대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S/W 신규 취약점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등 1년 넘게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두 앱의 취약점이 수정되어 마침내 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티즌랩의 Masashi Crete-Nishihata 연구팀장은 “플랜티넷, LGU+, 그리고 KT에게 취약점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회사들이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나서야 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KT 자녀폰 안심, U+ 자녀폰 지킴이 총 5개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을 분석했고 모든 앱에서 치명적인 보안 문제들을 박격했다. 이는 애초에 감시 앤들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저해 역도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한 개발자나 판매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감시 앱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보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청소년처럼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오픈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해 부모와 자녀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앱을 강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는 감시 앱 자체의 위험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 앱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일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 취약점 공개 타임라인

일자	비고
2016. 9. 2.	KT에 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2.	LGU+에 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9.	KT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9. 9.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 플랜티넷에 다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앱 업데이트 2.1.1

2016. 10. 26. LGU+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016. 10. KT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6.

2016. 10. 26.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6. 플랜티넷으로부터 이메일 답장 받음

2016. 10. 26. 플랜티넷 이메일에 대해 회답함

2016. 11. 7.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13. KT 자녀폰 안심 업데이트 2.01.11

2016. 11. 18.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30.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1. 20.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1. 플랜티넷과 통화

2017. 2. 17. LGU+ & 플랜티넷에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새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23. LGU+ & 플랜티넷에 새 취약점 고지에 대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7. 7. KISA에 U+ 자녀폰 지킴이 취약점 신고

2017. 9. 4. KISA에서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에 대해 통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 없는 편이 더 안전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허프포스트코리아 17.9.20.)
- [웹툰 및 권고] 없는 편이 더 안전해!: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 [보도자료]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6.12.26.)
- [논평]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2017.9.12.)
- [논평]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2017.2.2.)
- [논평]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2016.8.30.)
- [논평]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2015.11.3.)
- [논평]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2015.9.21.)
- [논평]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2015.4.15.)
-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슬로우뉴스 2015.11.16.)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자녀폰 지킴이’ 앱, 보안 취약하지만..뒤늦은 업데이트 도마위

입력시간 | 2017-11-29 03: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lleh 자녀폰 안심 서비스는?

유해플린, 도박, 자살사이트/웹 한전 차단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 앱 사용시간 조절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



우리아이 스마트폰을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녀폰지킴이 서비스

- 자녀폰 유해차단 가능
- 실시간 안성 제대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가능
- 주간 사용횟수 및 통계 분석서비스 가능

미용고급 무료 (기본) / 유료 2,000원/월 (무기제 포함)

시민단체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자녀폰 지킴이 앱들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뒤늦게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자녀폰 지킴이 앱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도박, 자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제공 중인데, 우리나라만 의무화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과 시행령(제37조의8)에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사)오픈넷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통신사 자녀폰 지킴이 앱에 대해 보안 취약성을 조사해 보니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앱은 사용자들만 다운로드가 가능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외부 다운로드가 가능한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만 대상이 됐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앱 모두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커가 자녀폰 지킴이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됐다.

두 앱은 모두 플랜티넷이라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 회사가 개발했는데 코드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플랜티넷에도 알렸지만,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KT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LG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 앱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오픈넷은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KISA를 통해 보안 업데이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오픈넷 소속 김가연 변호사는 “통신사와 개발사 모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해커의 침입이 우려돼 LG 유플러스가 보안 업데이트를 한 최근에야 취약점 보고서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 앱은 가입자만 받아볼 수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사 앱뿐 아니라 스마트보안관, 사



이미지입니다. — 비즈니스 모드로 사용되는 노란 문제들을 발견했다. 애초에 감시 앱들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부모가 자녀폰 지킴이 앱을 거부할 경우 깔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부모 동의도 필요 없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며, 때문에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며 "정부 제출 법안역시 감시앱 탑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면에서 현재보다는 낫다"고 평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ISSN : 1738-7779(Print)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 자녀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조민지, 김기환, 이광석

To cite this article : 조민지, 김기환, 이광석 (2017)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1, 125-14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ISSN 1738-7779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2017 봄) : 125-140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조민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韓國自治行政學報

제31권 제1호
2017 봄



사단
법인

韓國自治行政學會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2017 봄) : 125-140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1)}

조민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에 대해 자녀를 가진 부모와 청소년(자녀)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규제정책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검색 키워드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빈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자녀)은 차단수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차단수단을 삭제하거나 차단수단 자체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마트시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규제정책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보호, 인지된 심각성, 개인정보 권리]

I. 서 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한국미디어패널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어린이 및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초등 저학년(1-3학년) 25.5%, 초등 고학년(4-6학년) 59.3%, 중학생 86.6%, 고등학생 90.2%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일반휴대폰을 사용하는 동년배 그룹에 비해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등의 미디어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화, 2015).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 미친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은 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645).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수행되었음.

** 주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마트폰 과몰입과 각종 불법·유해정보 등에 무분별한 노출이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의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¹⁾ 또한 여성가족부(2014)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경험률은 성인용 영상물 경험률이 65.5%, 휴대폰 성인물 52.6%, 성인용 간행물 34.1%, 성인용 게임 33.1%, 컴퓨터 성인물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청소년들의 성인물 경험률 중 휴대폰을 통한 경험률이 컴퓨터 등 다른 경로를 통한 경험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²⁾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유해정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유해매체물 접속차단 수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³⁾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이 법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차단 기능 이외에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감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이용 시 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부터 설치된 기타 앱의 개별적 조절관리와 더불어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관리 기능까지도 부여받는다. 이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부모에 의한 감시문제와 과도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자녀인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제 2의 온라인 게임 관련 셧다운제와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자유 제한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새로운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규제정책들에 대해서도 실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역시 매우 부족하다(이창호 외, 2016).

- 1) 즉,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청소년(31.6%), 성인(13.5%), 유아동(12.4%)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1.6(1,704천명)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과의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2012년 이후로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성인들(13.5%)보다 약 2.3배가 높은 수준이며 유아동(12.4%) 보다는 약 2.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 2)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5)의 「201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청소년들 (10~18세)의 27.7%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성매매·음란 정보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45.2%는 성매매·음란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69.7%가 이런 성매매·음란 정보의 실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5.8%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 3) 법의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스마트폰 신규 가입 시에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가 의무화된 2015년 4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6일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스마트폰에 가입한 청소년(자녀)과 부모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에 대해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기기 등이 보편화된 스마트시대에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강제규제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새로운 갈등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개념 논의 및 선행연구

1. 개념 논의

1)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념

청소년보호법 제 2조의 3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한다 (www.law.go.kr). 즉,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는 성인의 접근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콘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고 명시적인 목록으로 고시하는 제도이다(황승 흠·황성기, 2003).

청소년보호법(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⑥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불량만화 등 단행본 위주의 간행물에 유해성 심의규제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점차 매체 환경이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로 변화함에 따라 유해매체물의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반찬걸, 2012).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적용대상은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 음반, 음악파일, 공연, 신문, 잡지, 간행물, 옥외광고 등 미디어 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터



넷·스마트폰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심의를 받는 유해매체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무차별적 유해매체물 노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스마트폰 유해매체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16일 유해콘텐츠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을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www.law.go.kr).⁴⁾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관한 설치안내 및 설치방법을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게시해 정보를 제공 중이다. 현재,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총 7가지의 차단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안내

서비스명	개발사	주요기능	비용
T청소년유해차단	SKT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SKT 가입자만 이용가능)
T청소년안심팩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앱 이용시간 설정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올레자녀폰 안심 프리	KT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KT 가입자만 이용가능)
올레자녀폰 안심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앱 이용시간 설정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유료(2,200/월) (KT 가입자만 이용가능)
U+ 자녀폰지킴이	LGU+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LGU+ 가입자만 이용가능)
U+ 자녀폰지킴이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앱 이용시간 설정 ·부모용 통계 및 모니터링 제공	유료(2,200/월) (LGU+ 가입자만 이용가능)
엑스키퍼 가드	지란지교 소프트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자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여러 차단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기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은 약 443만 1000여 명 중 실제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는 약 50%인 221만 9249명으로 집계되었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하지만 그 중 36.9%인 81만9438명이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삭제 의심 청소년 가입자’로 추정돼 청소년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차단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을 막기 위해 만든 차단수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집단압력이 높게 가해질수록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특히 집단의 압력을 경험할수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경험빈도가 증가한다(임원선, 2008). 청소년에게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어떤 의미인지 폭넓은 이해 없이 청소년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강제 정책들은 청소년의 반발심과 일탈을 부추기므로 규제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⁶⁾

2. 선행연구검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첫째, 청소년 유해매체에 미치는 요인과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정임·정동훈(2014)에 따르면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또래동조와 차별접촉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더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대영·이정기(2015)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이용량 중 음란물, 게임(사행성) 콘텐츠는 학급이 높을수록 이용량이 많았고, 폭력물, 자살물, 게임(폭력, 선정성)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 이용의 경우 학급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우(200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온라인 채팅, P2P 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많을수록 음란폭력과 반사회적 행동 등의 사이버 일탈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용이성이 비행의 학습, 부정적 정보의 확산 및 공유와 관련되어 사이버 일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유해 요인 접촉은 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규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나 게임시간 선택제 같은 정부의 인터넷게임 규제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이창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과몰입이 주변 청소년들에게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게임시간선택제와 인터넷게임중독처

5) 이윤주, “김성수, 청소년 10명 중 7명에게 유해물 차단앱은 무용지물”, 2015.10.06., 경향신문

6)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나 유해정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함께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 후 2013년 6월 교육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보안관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설치를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 스마트보안관의 다운로드 수는 10만 건을 넘지 않았으며, 2,615명이 평가한 평점은 1.7점(5점 척도 기준, 2014년 7월 24일)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남긴 리뷰들은 대체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오대영·이정기, 2015).



유부담금 징수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쿨링오프제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정책의 주대상자인 중학생들보다 주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이 게임규제정책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대영·이정기(2015)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인식은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또래집단이 오픈마켓 유해콘텐츠를 자주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도 높았다. 그리고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고등학생이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가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온라인 유해매체 규제정책 효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어, 2010-12년 3년간의 미디어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한 성육준(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강제적인 게임규제 정책인 게임 셧다운제(2011.5)와 게임시간 선택제(2012.7)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결과를 갖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과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성기(2013)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 권리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현(2011)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물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가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주체성, 자율을 부정하며 그들을 일방적으로 규제·통제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게임과몰입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전대성·김동욱, 2016). 예를 들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몰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오윤선, 2008), 게임시간과 게임빈도가 청소년들의 공격성(임금순·서영희, 2014)과 충동성 및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와 문제해결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이소영·권정혜, 2001),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이성대·염동문, 2013).

하지만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은 단지 인터넷 게임과몰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매체 확장적 측면에서 보자면 즉,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용이성과 접속 가능성성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을 이들 불법유해정보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2011년에 강제적 셧다운 제도와 2012년 선택적 셧다운제, 2015년에는 유해매체물 접속 차단수단(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인 온라인 규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강제적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밀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규제정책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청소년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유해매체물 접속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과 부모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 규제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대상 집단인 청소년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일반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란 특정 주제나 이슈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추출된 키워드 사이의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키워드들간 연관도 계산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이수상, 2014). 이러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키워드 간의 관계들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신,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출현을 둘러싼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여 이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차이의 큰 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단계별 연구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개요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네이버를 활용하였



고, 연구대상은 특정 키워드 입력 후 검색되는 부모와 자녀의 게시글이다. 동일한 키워드(예를 들어, ‘스마트보안관’, ‘엑스키퍼’ 등)를 입력하되, 부모와 자녀간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은 청소년이 활동하는 네이버 지식인과 부모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집하였다.⁷⁾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는 네이버카페 가족/육아 부분 랭킹 Top100 카페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인 청소년들은 네이버 지식인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⁸⁾ 분석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관련 게시글을 추출하기 위한 키워드로 네이버지식인과 가족/육아 Top100 카페에서 ‘스마트보안관, 청소년안심팩, 자녀폰안심프리, 자녀폰지킴이, 엑스키퍼’ 5가지의 키워드 중 한 가지 키워드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시글의 제목과 내용을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 게시물의 작성기간은 시행령 실시 후인 2015년 4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6일 까지 총 1년 6개월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모 카페에서는 총 247건, 지식인에서는 총 474건이 수집되었다. 이 중에서 최종 분석대상이 되는 게시글은 부모 179건, 자녀 438건이다.⁹⁾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가 자녀와 부모 각각 다른 자원에서 수집되었고, 최종 수집 데이터 수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샘플의 수를 추출하고자 비복원 추출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부모 데이터 100건, 자녀 데이터 100건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부모와 자녀가 작성한 게시글인지 수작업으로 통제하는 작업을 거쳐 형태소 분리 및 불용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데이터 수집 후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어절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에서 현상이나 관점을 나타내는 주요 단어인 명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특수문자나 문장기호, 키워드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은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추출된 용어는 ‘우리말 샘’과 ‘한나눔’사전을 기반으로 추출되었으며, KAIST ‘품사 태그셋’을 활용하여 품사를 구분하였다. 그 후 ‘사용자사전’을 정의하여 추출된 키워드 중 복합명사가 분리되어 그 의미가 모호해진 키워드를 다시 하나의 키워드로 정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게시글의 경우 은어나 축약어 등 통일되지 않은 키워드가 존재하여 이를 다시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게시글에서 중복 출현하는 키워드는 하나만 남기고

-
- 7) 부모의 경우 특정 정보의 공유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 학부모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커뮤니티 보다는 지식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위한 모집단을 서로 달리 추출했다.
- 8) 네이버 가족/육아 카페는 주로 육아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모들의 커뮤니티로 회원가입이 부모들로 한정되어있기에 부모 게시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봤다.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 이용 연령층은 다양하지만 분석 키워드인 스마트보안관 등이 스마트폰 가입자인 청소년과 부모만 이용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청소년이라고 밝히거나 작성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엄마, 아빠 등)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게시글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9)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해당 웹사이트를 크롤링 하였으며, 크롤링은 R 3.3.2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수집 된 문현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부모 카페에서 68건의 광고성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에서는 청소년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 36건을 확인하여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거하였고, 검색 키워드였던 ‘스마트보안관, 액스키퍼, 자녀폰지킴이, 청소년안심팩, 자녀폰안심프리’는 대부분의 게시글에 출현하여 분석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어 제외하였다. 2음절 이상 7음절 이하의 키워드로 부모는 135개(빈도수 10이상), 자녀는 122개(빈도수 5이상)를 최종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3) 분석모델링 및 키워드 분석

분석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자사전을 정의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할 키워드를 정규화하고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키워드 분석 과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통해 출현 키워드를 비교하였다.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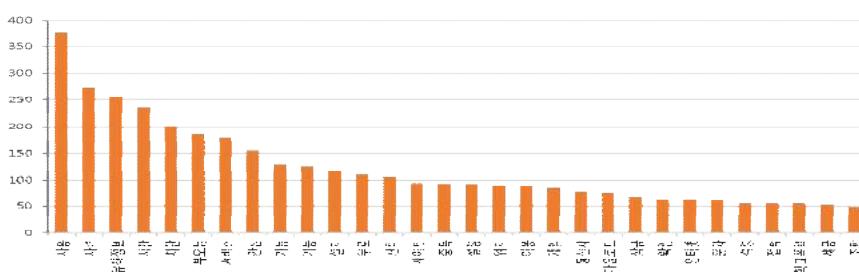
최종적으로 동시출현빈도로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로 중심성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최종 분석대상 키워드 선정 후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키워드 형태의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생성하여 중심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제의 세부 하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해 부모는 동시출현빈도 13이상, 자녀는 동시출현빈도 7이상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서는 Gephi 0.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1. 빈도분석

정규화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관련 게시글(부모 100건, 청소년 100건)의 키워드는 부모 135개(빈도수 10이상)이고 청소년은 122개(빈도수 5이상)이다. 이 중 상위 Top30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부모와 청소년 게시글 두 집단에서 상위 1, 2위 키워드로 나타난 ‘스마트폰’과 ‘어플’은 키워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그림 2>, <그림 3>).

<그림 2>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부모 게시글





134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2017 봄)

부모 게시글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사용’이며 다음으로는 ‘자녀’, ‘유해정보’, ‘시간’, ‘차단’, ‘안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의 커뮤니티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시간’이 주요 관심사로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독’, ‘게임’, ‘유해정보’ 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의 ‘걱정’과 이를 차단수단을 통해 ‘차단’하고 ‘관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모 게시글의 전반적인 키워드가 ‘기능’, ‘제공’, ‘무료’, ‘서비스’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커뮤니티 내에서 부모들끼리 스마트폰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를 서로 안내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상위 Top 30개): 청소년(자녀) 게시글



다음으로 청소년(자녀)의 게시글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삭제’이고 그 다음으로 ‘방법’, ‘비활성화’, ‘차단’, ‘문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청소년(자녀)의 경우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스마트폰 차단수단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게시글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활성화’, ‘차단’, ‘초기화’, ‘해제’, ‘루팅’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 ‘게임’, ‘인터넷’,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이용관련 키워드가 상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차단수단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분석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부모들은 게시글을 통해 스마트폰 차단수단을 이용해서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와 유해매체 차단과 같은 정보공유 측면의 이슈가 많다는 점을 추측 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 차단 수단의 삭제 방법에 대한 문의와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2. 중심성 분석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다(손동원, 2002). 연결망 조직에서 행위자가 중심에 위치할수록 타 행위자에게 발휘할 수 있는 통제권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용학, 2011). 중심성 분석은 다시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중심성 값이 높은 상

위 20개의 키워드만 추출하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 각각의 중심성 값이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높은 부모의 키워드는 ‘사용’, ‘자녀’, ‘시간’, ‘안심’, ‘차단’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키워드가 부모의 게시글에서 중심의미를 지닌 단어임과 동시에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의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삭제’, ‘방법’, ‘부모님’, ‘차단’, ‘문자’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결망 내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영향력을 가진 매개 중심성의 경우 다른 중심성과 다르게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이 자녀에게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키워드이자 관심사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를 각각의 중심성의 결과는 빈도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과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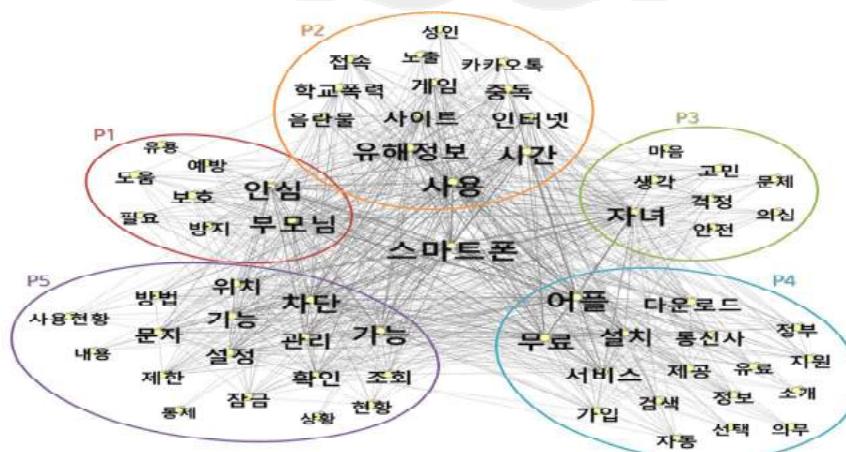
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관련 인식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부모는 동시출현빈도 13이상, 자녀는 동시출현빈도 7이상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시각화하였고, 이를 다시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세부 주제 분야를 파악하였다. 그래프에서 글자의 크기는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글씨 크기가 클수록 높은 중심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 부모 게시글의 군집분석

부모의 경우 동시출현빈도 13이상으로 나타난 64개의 키워드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군집의 분류는 비슷한 의미의 키워드나 주제별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아래 <그림 4>에 시각화하고 <표 2>에 정리하였다.

<그림 4>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비도 7회 이상): 부모 계시글



먼저 군집 P1은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평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부모에게 유용, 필요, 도움, 안심이 되는 수단이며, 이로부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군집 P2는 ‘스마트폰 사용의 역 기능’에 관한 지표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 유해정보, 음란물, 접속, 게임, 과몰입, 성인, 노출 등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역기능이자 부모가 우려하고 차단하고픈 관심사를 상징한다. 세 번째로, 군집 P3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로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걱정, 고민, 의심, 문제 등 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이 자율적 기기라기 보단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네 번째로, 군집 P4는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로 부모가 정부나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차단수단에 대해 소개하는 정보적 키워드가 나타났다. 주로 서비스에 대한 유료나 무료 안내,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다섯 번째로, 군집 P5는 ‘차단수단의 기능’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단수단의 대표적 기능은 예컨대, 유해매체 차단, 자녀의 위치추적, 이용시간 관리, 스마트폰 사용현황 조회, 자녀의 스마트폰 잠금, 제한, 통제 등으로 나타난다.

<표 2> 부모 5군집 세부주제 분야 키워드

군집번호	군집명	키워드
P1	차단수단에 대한 부모의 평가	부모님, 안심, 보호, 방지, 필요, 예방, 도움, 유용
P2	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	사용, 시간, 유해정보,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게임, 중독, 학교폭력, 접속, 성인, 노출, 카카오톡
P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자녀, 걱정, 생각, 안전, 의심, 고민, 문제, 마음
P4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	어플, 설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통신사, 정부, 제공, 유료, 지원, 가입, 검색, 정보, 소개, 자동, 선택, 의무
P5	차단수단의 기능	차단, 가능, 위치, 기능, 관리, 조회, 확인, 설정, 문자, 방법, 사용현황, 제한, 잠금, 현황, 상황, 통제, 내용

2) 청소년(자녀) 게시글의 군집분석

청소년(자녀)의 경우 동시출현빈도 7이상으로 나타난 46개의 키워드를 4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이는 다음(<그림 5>)과 <표 3>에 정리하였다.

먼저 군집 C1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목적’으로 청소년(자녀)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주로 카카오톡, 인터넷, 사이트, 게임, 네이버, 검색, 동영상, 사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 키워드가 차단수단(스마트보안관 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차단수단과 청소년(자녀)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로, 군집 C2는 ‘부모님의 차단수단 이용목적에 대한 자녀의 견해’로, 청소년(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소년(자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났다.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으로 청소년(자녀)은 문자, 유해정보, 음란물 등이 차단되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문자 내용, 이용 기록 등이 부모에게 전달되면서 이를 감시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앱의 기술적 기능 자체들을 그들 스스로 사생활침해라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군집 C3은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자녀)이 차단수단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과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단수단 삭제, 비활성화, 해제, 무력화, 루팅, 초기화 방법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출현하고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해물 차단 목적의 규제 정책과 부모의 통제권이 실제 청소년들의 기술문화 속에서 거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네 번째로, C4는 ‘자녀 게시글의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C3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정보 요구성 글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특정 사이트 내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주고받는 ‘내공’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했으며, 답변이나 부탁을 요구하는 성격의 글로 해석 할 수 있었다.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위해 또래 집단의 얼리어댑터들에게 의존해 기존 차단 앱의 기능을 탈주하려는 모습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림 5> 동시출현 네트워크(동시출현빈도 7회 이상): 청소년 게시글



<표 3> 청소년(자녀) 4군집 세부주제 분야 키워드

군집번호	군집명	키워드
C1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목적	자녀, 사용, 카카오톡, 사이트, 인터넷, 게임, 검색, 친구, 네이버, 컴퓨터, 동영상, 사진
C2	부모님의 차단수단 이용목적에 대한 자녀의 견해	어플, 부모님, 유해정보, 문자, 차단, 감시, 기록, 유타일, 내용, 시간, 확인, 관리, 기능, 음란물, 생각, 사생활침해
C3	자녀의 차단수단 이용방식	삭제, 방법, 비활성화, 설치, 해제, 비밀번호, 루팅, 안전모드, 무력화, 보안, 가능, 설정, 화면
C4	자녀 게시글의 성격	내공, 답변, 부탁



V. 결 론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자녀를 가진 부모와 청소년(자녀)들 간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및 의무설치 정책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본 정책을 대단히 거부하며 불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동일한 규제정책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매우 상반된 시각과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규제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빈도분석과 중심성 분석, 그리고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검색 키워드로 분석했을 때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차단수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에 차단수단 이용에 있어서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게임 이용, 과몰입 등에 관해 걱정과 근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차단수단의 주요 기능인 위치 조회, 시간제한, 스마트폰 관리 설정에 관해 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군집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차단수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자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단수단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 무력화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고, 기술적 차단수단 자체를 회피하려는 이용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심성과 관련해서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키워드가 카카오톡, 인터넷, 게임, 동영상, 사진 등인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장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는 차단수단이 본인의 사생활침해나 감시,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부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자녀의 게시글에서 나타난 차단수단 회피 방법은 삭제, 공장초기화, 루팅, 우회, 무력화 등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다. 또한, 부모로부터 차단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시스템상의 오류와 허점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차단수단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협조하는 선부른 기술적 차단 수단을 통한 규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적 차단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되었던 초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우선, 차단수단이 검열하려 하고 차단하려는 정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도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음란물을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릴 수 있는 차단 기술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적 차단 장

치를 통해서 행하는 청소년 규제 방식은 이들이 지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청소년과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차단수단이 차단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의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규제 등의 도입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탐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중심 매체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모바일 공간에서 넘쳐나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초래할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규제, 특히 기술적 규제 장치는 지금처럼 청소년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수단을 매개한 규제 정책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의 상대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용학. (2011).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김윤화.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STAT REPORT. 2015.12.15. Vol. 15-18.
- 박종현. (2011).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111-145.
- 박찬걸. (201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 연구」, 20: 117-15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201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 보고서」.
- 성육준. (2014). 게임 셧다운제 정책이 청소년의 게임사용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사회과학연구」, 30(2): 233-256.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4-52.
- 오대영·이정기. (2015). 청소년들의 학교급 (초·중·고) 별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콘텐츠 이용과 효과. 「사회과학연구」, 31(1): 369-392.
- 오윤선. (200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6(4): 3-15.
- 이성대·염동문. (2013). 청소년의 게임중독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8): 229-239.
- 이성신. (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서관마케팅 연구 경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383-402.
- 이소영·권정혜. (2001).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67-80.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정기·오대영. (2014).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 실태와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44.
- 이현우. (2009).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요인 경험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2): 163–198.
- 이창호·김옥태·배상률. (2016).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23(1): 107–130.
- 임금순·서영희. (2014).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1(1): 47–68.
- 임원선. (2008). 청소년 유해환경과 또래의 집단 내 압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학연구」, 15(7): 227–241.
- 전대성·김동욱. (2016).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57–7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Vol. 15–18.
- 최정임·정동훈. (2014).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445–455.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황성기. (2012). 스마트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22(1): 39–94.
- 황승흠·황성기. (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복스」.

조민지(趙敏之)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논문: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주요 관심분야는 IT기술, O2O 서비스, 펍테크 등이며, 최근의 연구로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동기와 불만족 요인이 서비스 지속이 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6)”가 있다. <E-mail: ohoo@seoultech.ac.kr>

김기환(金基煥):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블루밍턴)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의 관심분야는 환경정책, 정보화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만 할 것인가?: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2015)” 등이 있다. <E-mail: kiwkim@seoultech.ac.k>

이광석(李光錫) 미국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에서 Radio, Television & Film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네트워크 모빌리티의 정치경제학: 국가 초고속정보망의 역사적 발전, 1995~2005)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소재 울런공 대학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했으며, 1990년대 이래 뉴미디어와 인터넷문화, 소셜웹 문화, 인공지능에까지 이르는 기술 현상 전반을 주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IT development in Korea: A Broadband Nirvana?*(2012)와 <디지털야만: 기술파이팅, 빅데이터와 정보재난>(2015) 등이 있다. <Email: kslee@seoultech.ac.kr> / 논문접수일: 2017. 2. 15 / 논문수정일: 2017. 3. 9 / 게재확정일: 2017. 3. 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of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s between Children and Parent

Cho, Min-ji·Kim · Ki-whan·Lee · Kwang-suk

The research has studied into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use of experience of filtering programs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by carrying out keyword network analysis on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compulsory installation for the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First, as a result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a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into the children and parents differences in perception concerning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it was found that games, preventing addiction, location queries, time limit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parents bulletin board, showing positive views of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the parents. On the contrary, it was understood that deleting, deactivating, disabling, bypass, violence of privacy and other key words were extracted, showing negative views on the filtering program held by children.

In-depth discussions on filtering program for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rs that was attained through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providing certainty on abolition of regulatory policies, effectiveness on regulatory policies and direction for change.

[**keyword** : Media materials harmful to teenage, Privacy Protection, Perceived Seriousness, Privacy Rights]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 못 사나요?

등록 : 2017-05-21 09:30 수정 : 2017-05-21 09:38

[토요판] 뉴스분석 왜?

헌법심판대 오른 청소년 '쾌락통제법'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일부는 관습적으로, 콘돔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장려돼야 할 콘돔이 불순한 것으로 인식돼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기능성 콘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콘돔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콘돔들을 청소년에겐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법이 최근 헌법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해수욕장 주변 약국에는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려는 청소년이 거리낌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동아일보>
1997년 7월30일 '청소년보호법 "있으나 마나" 피서지 상흔 탈선 부채질')

20년 전 세상은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걸 '탈선'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콘돔이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은 아니었다. 그럼 2017년엔 얼마나 달라졌을까.

콘돔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콘돔을 판다. 반면, 담배나 술은 자판기에서 팔 수 없다. 만 19살 이상만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다. 그런데 콘돔 중에서 유독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종류가 있다. 이른바 '기능성 콘돔'들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



녀의 심신을 침식하기 경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한다. 이 법에 따라 여성 가족부는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성인엔 무해한데 청소년엔 유해?

기능성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등을 허가받은 의료기기다. 그럼에도 이들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여가부 고시(2013-51호)의 배경엔 ‘청소년은 쾌락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를 일부에서 ‘쾌락통제법’이라 비꼬는 이유다.

이 쾌락통제법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기준인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가부 고시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권한 이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을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위헌 소송의 이유다. 청구 이유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3학년생 한채림(18)씨는 지난 4월18일 섹슈얼 헬스케어 업체 ‘이브’(EVE)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쾌락통제법 위헌 소송을 함께 할 서포터스를 모집했고 한씨가 이에 응했다.

한씨는 <한겨례>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통제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청소년들은 성인에겐 허락된 쾌락을 알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는 성관계를 오로지 임신을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라는 얘기”라며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기만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가부 고시를 보고 깊은 분노를 느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할 것인지 여부, 피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콘돔을 사용하여 피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함께 헌법소원에 참여한 성민현 이브 대표는 청소년에게 요철식 콘돔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벌금 20만원의 약식기소된 적이 있다. ‘요철’이란 오목하고 불룩하다는 뜻. 그가 판 콘돔은 정말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음란성, 비정상적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가 클까?



성민현 이브(EVE) 대표가 청소년에게 팔다 고발당해 약식기소된 돌출형 콘돔.

성 대표를 범법자로 만든 콘돔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면 돌기의 크기나 형태와 상관없이 ‘밋밋’한 형태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요철식 콘돔으로 분류된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 “돌출 콘돔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도3346)

반면 여가부 고시는 이런 요철식 콘돔을 일률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철식 콘돔, 약물주입형 콘돔은 1997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1997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 콘돔들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면서 참고한 전문가 의견이 포함돼 있다.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성 대표는 “백번 양보해 이 지적들이 맞는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판매를 제한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콘돔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충족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보호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9금’이 된 콘돔

한채림씨와 성민현 대표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조항과 여가부 고시로 인해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들어진 탓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가부 고시는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구나 구입 가능한 일반 콘돔들에도 ‘19금 딱지’를 붙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청소년의 콘돔 구입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 접근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각하다.



연세 쓴의심이나 낙도 등에서 쓴기는 나의 세안 없이 쓴내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콘돔을 집어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가게 직원이 바코드를 찍기까지는 성인들에게도 꽤나 긴 시간이다. 행여 다음 손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온라인에서 ‘콘돔 접근성’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콘돔 쇼핑몰들은 택배 상자에 ‘사무용품’이라고 적어 배달한다.

기능성 콘돔에 ‘19금’ 딱지 붙인

여성가족부 고시에 헌법소원

“자기결정권·명확성 원칙 침해

청소년의 성 억압하려는 발상”

일반형 콘돔 구입은 합법인데

포털·쇼핑몰서 콘돔은 ‘19금’

‘성=어른들만의 것’ 편견 탓에

청소년의 피임 방법만 봉쇄돼

포털 검색창에 “콘돔”을 입력해봤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제한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성인 확인을 요구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대부분 성인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는 콘돔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부 콘돔 전용 쇼핑몰들만 ‘19금’ 콘돔과 그렇지 않은 콘돔을 구별한 뒤, 일반 콘돔은 성인 인증 없이 또는 비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형 종합쇼핑몰의 경우 콘돔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일반형과 19금을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여가부는 ‘기능성 콘돔만 청소년의 구매를 제한하라’고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포털들의 정보 제한을 모두 여가부 고시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물건과는 무관하게 기능이나 사용법 등 콘돔 자체에 대한 정보에도 대부분 19금 딱지를 붙였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콘돔을 검색하는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성인 인증을 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결과물을 차단하는 건 아니다. 신뢰성이 인정된 정보 등은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식백과 결과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반면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등은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따라 네이버에 로그인 없이 ‘콘돔 사용법’을 검색해 봤다. 몇 안 되는 지식백과 검색 결과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콘돔의 기본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전부다. 반면 로그인을 한 뒤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그림과 친절한 설명이 포함된 블로그글과 지식인(iN) 답변들이 검색된다. 블로그나 지식인의 내용들은 사용후기 등이 많아 신뢰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이버는 “정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다음도 마찬가지다.

성은 어른들의 것?

성민현 대표는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성은 오로지 어른들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편견은 깊고도 ‘넓다’.

실제로, <한겨레> 토요판에 연재 중인 ‘이런, 훌로!?’ 코너의 지난 3월4일치 ‘혼자서 만나는 내 몸…왜 우린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목의 기사는 최근 구글로부터 성인용 콘텐츠 판정을 받았다. 로그인 없이 검색창에 ‘길거리’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몰카성’ 사진이 끝도 없이 검색되는 구글이 성인용 콘텐츠를 구별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여성의 자위’를 다룬 외부 기고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두드러진 노출적인 준수 및 낙관적인 비속어' 등이 담긴 콘텐츠를 성인용으로 구별해 광고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의 자위를 다룬 '이런 홀로'의 기사가 '성적 조언 및 성적 건강' 항목에 해당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됐다"고 알려왔다. '혼자서 만나는…'을 쓴 혜화불박이장(필명)은 이 소식을 듣고 "성인만 자위하나 보다"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콘돔과 마찬가지로 자위 역시 청소년에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 6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4.6%였다.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나이는 13.1살이었고, 성관계 경험자 중 51.9%만이 피임을 했다고 답했다. 여학생들의 임신 경험률은 0.3%였지만 이를 중 81%가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한국에서 당사자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따가운 시선들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착상을 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청소년은 네명 중 한명꼴이지만 콘돔 사용법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성교육은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채림씨는 "콘돔 구입의 어려움 여부를 떠나, 친구들 중엔 성관계를 하는 데 콘돔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콘돔은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입증된 가장 간편하고도 확실한 수단이다. 성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은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연재 [토요판] 뉴스분석, 왜?

'밥보다 비싼 커피' 논란에서 '스세권'까지…스타벅스 20년

미, 화웨이 때리기 왜?…“지금 중국 기술굴기 못 막으면 실리콘밸리 무너질 것”

'가문' 과시하던 청첨장, 신랑·신부가 주인공으로

2005년 첫 논문 속의 그 많던 '인보사 세포'는 어디로

미·중 해군대결, 쇠락한 '붉은 함대' 전철 밟을 쪽은

